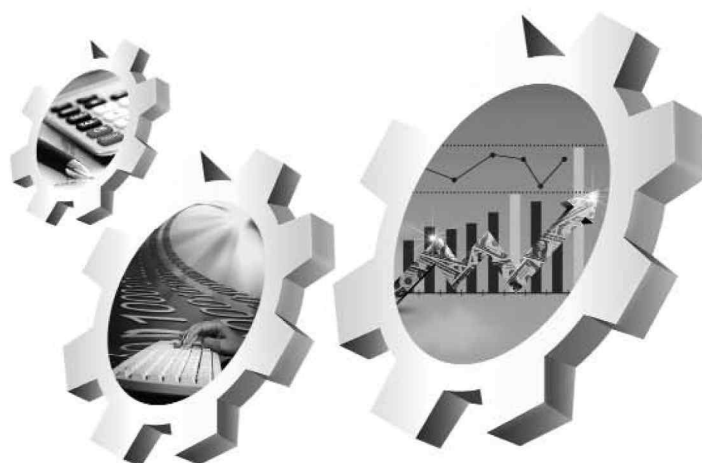


2014

Poland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머리말

국세청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이탈리아에 대한 세무안내서와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 베트남, 러시아, 호주, 폴란드에 대한 세무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안내서에 수록된 정보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좀 더 유익한 세무안내서 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서진욱



I. 국가 선정 배경	1
1. 폴란드 국가 개황	2
2. 폴란드의 최근 동향	3
3. 우리나라와의 관계	6
II. 폴란드의 조세제도	11
1. 조세제도 개괄	12
2. 법인세(CIT)	15
3. 개인 소득세(PIT)	28
4. 부가가치세(VAT)	39
5. 이전가격세제	50
6. 국제조세 관련 추가 이슈	82
7. 그 밖의 세금과 관련 규정	89
8. 세무 행정	111
III. 폴란드의 투자	117
1. 외국인의 폴란드 투자	118
2. 폴란드에서의 사업 투자 절차	123
3. 기타 사업관련 정보	129



IV. 기타 폴란드 정보	135
1. 폴란드 국가 정보	136
2. 폴란드 생활 정보	146
V. 부록	157
1. 이전가격세제관련 법령	158
2. 폴란드 법인세법 중 이전가격세제 관련 조항	175
3. Tax Code- Section II(APA 절차 관련 법령)	181
4. 폴란드 - 그리스 APA 신청서	187
5. 법인세 신고서식(CIT-8)	188
6.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189



I

국가 선정 배경



1. 폴란드 국가 개황
2. 폴란드의 최근 동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폴란드 국가 개황

일반 개요

- 국 명 : 폴란드(poland)
- 위 치 : 중부유럽
- 수 도 : 바르샤바
- 인 구 : 약3,835만명(2013년)
- 면 적 : 312,685km2(한반도 1.4배)
- 민 족 : 폴란드인(98%), 독일인, 벨라루스인 등(2%)
- 언 어 : 폴란드어(슬라브어 계통)
- 종 교 : 카톨릭(95%), 기타(5%)
- 정부형태 : 의회공화제
- 독립 일 : 1918.11.11.



경제 개요

- 국민소득 : 명목 GDP 5,139억\$ (13년, 세계23위)
1인당 GDP 21,266\$ (13년, PPP기준)
- 실질경제성장율 : 1.6% (13년)
- 물가상승률 (HICP기준, 연평균) : 0.8% (13년)
- 실업률 (연평균) : 13.5% (13년)
- 금리 (연평균) : 2.9% (13년), 4.6% (12년)
- 교역규모 : 수출 2,119억\$, 수입 2,091억\$ (13년)
- 환율 : 1 PLN = 0.33 USD, 1 PLN = 335.5 won (14년 06월)



2 폴란드의 최근 동향

□ 폴란드 정치동향

○ 공산당의 자진해체와 자유민주주의 도입

- 1989년 2월 폴란드 정부는 자유노조 합법화, 정치개혁 등을 협의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6월 자유선거로 총선이 실시되어 자유노조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동구사회주의권 최초로 비 공산당이 주도하는 연립정권이 출범
- 1989년 12월 의회에서 사회주의 관계조항을 삭제하고 민주 및 자유경제 조항을 삽입하는 헌법개정안이 통과, 1990년 1월 폴란드 공산당 자진해체
- 2005년 대통령선거와 총선 이후 과거 공산시대 뿌리를 둔 정치세력 몰락

○ 현 정권 출범 및 평가

- 2010년 조기 대선에서 당시 의회의 집권당인 시민연단 소속의 코모로브스키 후보가 당선
- 2011년 총선에서 시민연단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도널드 투스크 당수는 총리직 연임. 시민연단의 총선 승리는 1989년 체제변혁 이후 최초로 집권당의 연임에 성공한 사례로, 한층 성숙해진 폴란드 정치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됨

	시민연단	법과 정의당	팔리코트 운동
정치성향	중도 보수	카톨릭 보수	급진 개혁
총선득표율	39.2%	32.1%	10.0%

(자료원 : 바르샤바 무역관)

- 이번 총선 결과에서 신규 세대간의 인식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는데, 낙태 허용, 동성애 지지, 소프트 마약류 합법화, 교회에 대한 국고 지원 중지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등을 주장하는 급진 개혁 성향의 신생당이 주로 젊은 층에서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며 제3당으로 급부상

- 7년간 폴란드 내각을 이끌며 폴란드 정치적 안정을 확립했다는 평을 받은 도날드 투스크 총리가 동유럽권 인사 중 최초로 차기 EU 상임의장으로 선출되어 2014년 12월부터 2월 6개월간 상임의장 직 수행예정
- 신임 총리로 집권연정에서 선출된 에바코파츠는 폴란드 공산 정권이후 두 번째 여성총리이며, 최근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 기후종합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회원국들의 의견 일치 강조

□ 폴란드 경제동향

○ 시장경제체제 도입 후 폴란드의 경제

- 1989년 민주화 이후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성공적인 체제 전환과, 2004년 유럽연합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의 활발한 유입 및 안정적인 경제 운영으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지난 20년간 폴란드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3.9%
 - 2008~2009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EU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 2012년 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하반기에 들어 주요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평균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하회하며 물가지수 급락
- 유로존 국가의 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 확대, 실업률 감소에 따른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 기대 등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회복세 기대

○ 향후 경제 전망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국가재정 운영으로 향후 경제의 위험요인 보다 기회요인이 더 클 것으로 판단
- 2014년~2020년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으로, 교통, 통신, 인프라, 환경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것으로 기대
- 교역의존도가 높은 EU국가들의 경기 회복으로 수출 증가 기대



□ 폴란드 대외관계

- 1989년 민주화 이후 외교적 노력
 - 1989년 6월과 7월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 미국 대통령 부시가 각각 폴란드를 방문하여 경제원조와 상호교류 방안을 논의, 7월 동구권 최초로 44년 만에 로마 교황청과 수교
 - 1992년 3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독일을 공식 방문
 - 러시아와는 1992년 5월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2001년 10월에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양국관계가 급격히 호전
- 주요 국제협력기구
 -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199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가입으로 사상 처음으로 국가안전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짐
 -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에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의 활발한 유입
 - 2009년 5월 7일 발족한 동부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은 폴란드 외무부 장관이 대표 역할 수행
- 미국과의 전략적 제휴관계 강화
 - 미국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여 미국, 영국과 더불어 파병 3대 세력
 -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중재 역할을 자임하여 국제 정치적 위상 제고 노력
- 대EU와의 협력 강화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 2012년 ‘유로2010’공동개최, 2014년 동유럽권 인사 중 최초로 폴란드 총리의 EU상임의장 선출 등 EU내 위상을 강화하는 중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에 강경대응 노선을 취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가 폴란드 과일을 수입금지 조치함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 - 폴란드간 교류현황

- 1989년 11월 한 - 폴란드 수교 후 국가간 협정사항
 - 1989년 투자보장협정과 무역협정
 - 1991년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협정
 - 1993년 문화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사증면제협정
 - 1997년 외무부간 협력의정서
 - 1998년 표준화 협력 양해각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협정
 - 1999년 세관협력협정

 - 최근 동향
 - 2009년 7월에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하여 투스크 총리 및 카친스크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
 -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수립 후 폴란드 대통령이 유럽정상으로는 처음으로 국빈 방한하여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
 - 2013년 10월 정상회담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 서명, 이는 1992년 협정 체결이후 최초 개정안으로 현재 국회 비준 대기 중
 -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내에서 한국투자 진흥공사(KOTRA)의 '한국투자 기업 지원센터'운영
- *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란 해외진출 거점국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전세계 1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유럽은 러시아와 폴란드 뿐



□ 한국과의 교역현황

○ 한국 - 폴란드 교역 동향

- 한국은 폴란드와의 교역에서 전통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무역국의 위치를 지켜옴
- 폴란드 정부는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폴란드 상품의 한국 홍보에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
- 그러나 이런 무역 불균형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폴란드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현지 투자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원부자재 또는 기계장비 반출이 한국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연도별 수출입 규모

(단위 : 백만US\$)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 출	4,146.7	4,381.0	4,100.8	3,678.3	3,601
수 입	233.6	273.6	376.2	535.0	77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ITA))

- 2013년 대 폴란드 무역수지는 약 28억 26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체 교역국가 중 흑자 규모 16위, 유럽 중 2위를 기록

○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주요 수출입 품목 (2013년)

(단위 : 백만US\$)

순위	품목명	수 출	순위	품 목 명	수 입
1	광학기기	1,221	1	피스톤내연기관	228
2	자동차부품	465	2	보 일 러	24
3	압연제품	107	3	기타철강제품	2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ITA))



□ 한국기업 투자현황

○ 한국 기업의 투자 동향

- 1990년대 초반까지 미미한 수준이던 대폴란드 해외직접투자는 동유럽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대우그룹의 자동차 및 전자제품 생산 현지법인 설립으로 인하여 1990년 중반 그 규모가 급증
-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2000년대 초반 다시 투자규모가 축소되었으나, 폴란드의 EU가입 이후 한국 기업들이 유럽시장에서 경쟁력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현지투자를 선택하며 활기
- 2005년 LG전자(TV부분) 및 LG 필립스 LCD, LG전자 백색가전 부분의 투자가 시작되고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면서 투자가 급증, 2006년 한해에만 투자액 2억 2천만 달러를 기록
- 2008년부터 체코 현대 차, 슬로바키아 기아 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남부 지방으로 자동차 분야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어짐
- 2010년 1월 삼성전자가 현지 1위 가전회사인 아미카 인수
- 최근 폴란드 정부의 SOC산업 수주와 관련하여 우리기업이 폴란드 기업과 경쟁하며 활발히 참여
 - 2012년 10월 포스코 건설이 크라쿠프시 소각로 발전 프로젝트 수주
 - 2013년 10월 KT-대우 인터내셔널이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2건 수주

○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직접투자규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규법인 설립 수	17	13	1	12	8	4	7
투자금액 (천US\$)	118,544	93,982	29,828	55,314	89,840	26,607	21,79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의 對폴란드 업종별 투자현황 (1962년 ~ 2014년 5월)

(단위 : 건, 개, 천불)

업 종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제 조 업	272	95	1,483,410	1,233,547
도소매업	41	20	53,961	51,150
운 수 업	26	8	1,715	1,177
부동산업,임대업	22	6	100,415	63,639
건 설 업	14	7	7,669	1,866
기 타	17	8	-	-
합 계	392	144	1,657,161	1,357,153

(자료원 : 한국 수출입은행)



II

폴란드의 조세제도



1. 조세제도 개괄
2. 법인세(CIT)
3. 개인소득세(PIT)
4. 부가가치세(VAT)
5. 이전가격세제
6. 국제조세 관련 추가 이슈
7. 그 밖의 세금과 관련 규정
8. 세무 행정



□ 폴란드 조세개요

○ 폴란드 조세제도 특징

- 폴란드 조세 제도는 폴란드 전역에 걸쳐 균등하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외국인 투자 증대와 고용 창출의 목적으로 세법 개정
 - 법인세율을 40%부터 19%까지 낮춤
- 폴란드 세법제도는 1990년도부터 점점 발전하고 있으며, EU와 OECD 기준에 맞추어 세법 체계가 점점 명확해지고 단순해 짐
- 외국 투자기업의 경우 폴란드 국내법인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차이가 없음
 - 모든 회사들은 소재지 지방 세무서 등록 후 납세자 번호(NIP)를 부여 받게 되며, 자신들의 계정을 두고 세금을 독립적으로 계산

○ 폴란드 조세관련 법률

- ▷ 폴란드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Poland」
- ▷ 조세에 관한 일반 법률 「Tax Ordinance Act of 1997 with amendments」
 - 세금부과 일반적 규칙, 세율, 조세정보, 납세자의 의무, 소송절차, 조세행정기관 구조 등을 규정한 조세행정에 관한 일반법
- ▷ 개별 세법
「Personal income tax」, 「corporate income tax」, 「goods and services tax」
「Civil Law Activities Tax Act」, 「Local Tax 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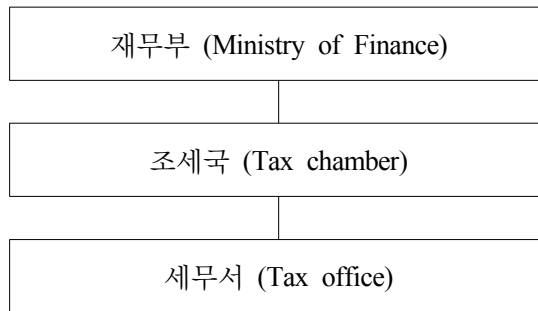


○ 폴란드 조세종류

국 세	지 방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세 (dir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 : personal income tax (PIT) 법인세 : corporate income tax (CIT) 상속증여세 : inheritance and donation tax 운송세 : tonnage tax 거래세 : tax on civil law transactions 자본세 : capital tax 금속채굴세 : Tax on Extraction of Certain Minerals ○ 간접세 (indir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 : VAT 소비세 : excise duty 게임세 : games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세 (dir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세 : agricultural tax 산림세 : forest tax 부동산세 : real property tax 차량세 : transport vehicles tax

□ 폴란드 조세행정기관

<폴란드와 조세행정 조직도>



기관명	담당업무
재무부	예산 정책 총괄, 조세체계 전체를 관리·감독
조세국	세무서 관리·감독, 세무서의 행정 결정 평가
세무서	관할 지역의 세금 징수



한눈에 보는 주요 의무사항

○ 법인세

- 세율 : 단일세율 19%
- 매 익월 20일까지 (휴일의 경우 직후 평일) 신고
- 과세연도는 일반적으로 연년(1월1일~12월31일)에 의하나 연속하는 12개월로 선택 가능
-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 및 확정법인세신고 종료
- Tax rulings 제도 : 납세자가 실제 사실 또는 예정된 사건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을 담아 세법의 적용에 대한 판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과세당국이 조세법령의 해석의 기준 및 적용사항 알려주는 제도

○ 개인소득세

- 세율 : 신고누적소득(연소득) 85,528PLN 이하는 18%, 초과하는 32%
- 다음해 4월30일까지 신고 및 선납분 정산
- 폴란드 비거주자 증명이 가능한 경우 20%의 단일세율 적용. 단, 정규근로 계약이 아닌 서비스계약으로 작성해야 함.

○ 부가세

- 23% : 기준세율, 대부분의 품목과 서비스에 적용
- 8% : 일부 식품, 의약품 및 보건관련, 승객 운송서비스, 일부 아동용품, 공공행정 서비스
- 5% : 서책류, 비가공 농산물, 기본식품
- 0% : EU 영외 지역으로의 수출 및 EU 영내 국가로 수출, 국제 운송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예외는 항상 있음)
- 면세 : 금융 및 보험, 문화, 연구개발 서비스 등
- 매월 부가가치세 실적에 대하여 그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3개월 단위로 신고 및 납부 가능

○ 특수 관계인간 거래 시 준비사항

- 국내·외 특수관계자간 재화, 용역 등의 거래에 대한 기능, 자산, 위험분석 등 법정 필수 사항을 포함한 문서작성 (TP Documentation) 의무
- 과세당국이 요구한 날로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사전 준비 필요)
- 미제출시 50% 가산세, 문서준비 책임자에게도 패널티 부과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APA)

- 특정한 신청양식은 없으며, tax code article 20f에 따른 필수 요소 포함
- APA 결정은 최대 5년간 지속되며, 5년 추가 연장 가능
- APA 이행여부에 관한 특별리포트 매년 법인세신고서와 함께 제출



- **Intrastat**
 - EU내 이뤄지는 150만 PLN이상 발생한 기자재 거래에 대한 세무당국 신고
 - 계약상 기재된 기자재가 인도완료된 것에 대해 신고함
 - Invoice, Contract, MPR document 필요
- **NBP Report**
 - 폴란드 해외거래와 회사명의 자산의 합이 300만 PLN을 상회할 경우 매 분기마다 리포트 작성 및 제출
 - 3억 PLN을 상회할 경우 매 월마다 리포트 작성 및 제출
- **주요 신고 일정**
 - 법인세 (CIT) : 익월 20일까지
 - 부가세 (VAT) : 익월 25일까지
 - NBP Report : 익월 20일까지
 - Intrastat : 익월 10일까지

2 법인세 (CIT)

1. 개요

□ 세율

○ 법인세율은 19% 단일세율

구 분	세 율
기본세율	19%
원천징수	
· 배당	19%
· 이자	20%
· 사용료(licence fees)	20%
· 무형자산 사용료(intangible services)	20%
· 지점세(Branch profit tax)	-

☞ 배당, 이자, 사용료 (p.25) 이익분배 참고



□ 과세표준

- 폴란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공제대상비용, 소득공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산출됨

$$\text{과세표준} = \text{총수입} - (\text{공제대상비용} - \text{소득공제} - \text{이월결손금})$$

□ 납세의무자

- 폴란드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과 법인격 없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조직 등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ies), 기타 법적 실체(other legal entities)
 - 형식에 있어서 법인 (corporations in formation)
 -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격 없는 회사를 제외함)
 - 다른 나라에 관리 장소나 사무실을 둔 법인격 없는 회사(그 나라의 세법에 의해 법인으로 여겨지고 그 나라에 전 세계 총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함)
 - 과세 자본 그룹(Tax capital groups)(PGK)

□ 사업연도

- 폴란드에서 법인의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역년에 의함
 - 납세자가 연속하는 12개월로 역년과 달리 사업연도 선택도 가능
 - 역년에 의할 경우 만약 법인설립이 연중 하반기에 이루어졌다면 첫해에 한하여 18개월까지 사업연도를 연장하는 것도 가능



2. 납세의무자 관련 주요이슈

□ 과세 자본 그룹 (Tax capital groups(PGK))

○ 과세 자본 그룹의 특징

- 과세자본 그룹은 법인세납부자로서 2개 또는 그이상의 관계 회사들 (유한회사거나 주식회사)로 구성되며, 대표회사를 지정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등록
- 대표회사가 그룹전체의 법인세 신고 의무자가 되며, 그룹 내 소득과 결손을 합산하여 전체 그룹의 과세소득 계산
- 과세자본 그룹이 생성되기 이전의 각 회사의 결손은 공제되지 않으며 그룹이 소멸된 뒤의 결손에 대해서도 그룹 내 회사가 공제할 수 없음
- 과세자본 그룹 내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규칙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법 11조 8항)
- 그룹 내 배당에 대한 과세는 특별한 혜택 없이 일반적인 법인세법 적용
 - * 폴란드 거주자인 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19%로 과세되고, 모회사가 2년 이상 15%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 소득세는 면제

○ 과세자본 그룹 설립의 요건

- 과세자본 그룹에 속하는 회사들의 등록된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그룹의 순이익은 수입의 3%이상, 그룹 유지기간은 3년 이상임
- 각 그룹회사의 평균자본금이 1,000,000PLN 이상이고, 모회사는 자회사 지분의 최소 95%이상을 직접 보유해야 하며 각각의 자회사들은 그룹 내 다른 회사들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음
- 그룹 내 회사들은 다른 법에서 정한 소득세 면제혜택은 누릴 수 없음
 - ※ 설립 요건이 엄격하여 과세자본그룹이 많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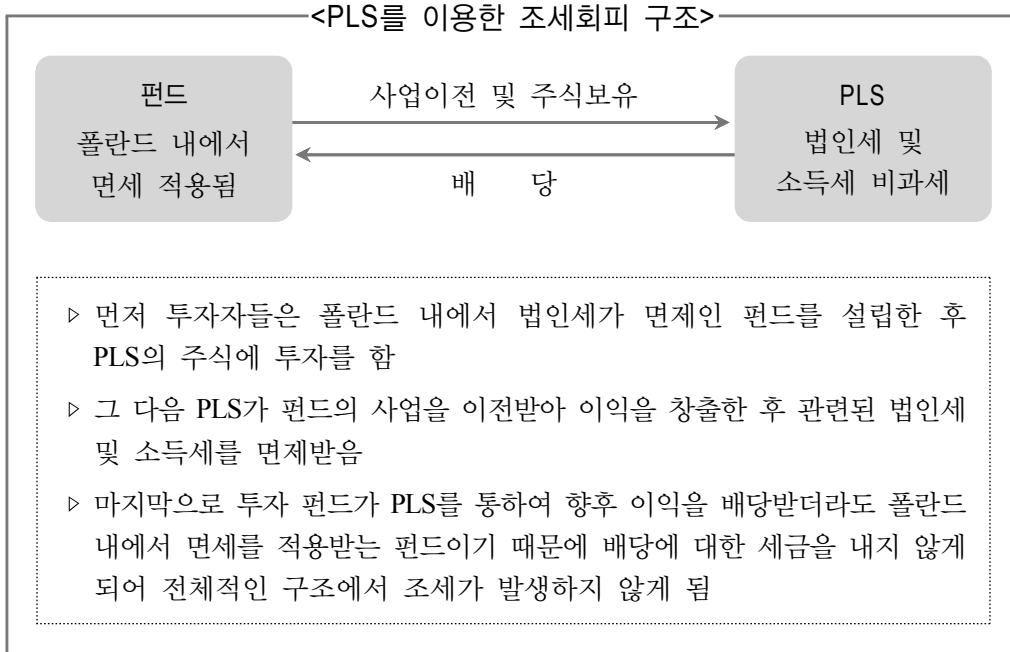
□ PLS(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세법개정

○ 파트너십의 특징

- 파트너십 자체는 법인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파트너십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각각의 파트너에게 배분되어 그들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파트너 단계에서만 법인세 및 소득세가 과세됨
- 과세자본 그룹에 적용되는 많은 행정적 요구 조건이 없어 과세자본 그룹의 대안으로 파트너십을 구성하기도 함

○ PLS의 특징과 조세회피 문제 쟁점

- PLS는 일반적인 파트너십과 유한회사의 성격을 혼합해 놓은 실체이며, PLS의 자본과 경영권은 유한회사의 책임을 지는 주주와 회사의 부채 등에서도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주주에게 각각 분산
- 일반적인 파트너십은 파트너들에게 소득이 실제로 분배되지 않아도 회계 연도 말에 분배될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법 개정 전의 PLS는 실제로 소득이 분배될 때만 소득세 과세 가능
- PLS는 법 개정 전까지는 이익금이 재투자되는 한 법인세 및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실체였고, 설립비용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누구나 설립하여 조세회피에 이용됨
- 특히 대형 투자자들은 폐쇄적인 사모펀드를 PLS와 결합하여 조세회피 전략을 사용
- 폴란드에서 PLS는 'Spolka Komandytowo-Akcyjna'로 명명되며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도관의 역할을 하는 실체로서, 폴란드 재무부는 이에 세금을 부과하려 오랜 기간 노력



○ PSL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세법개정

- 폴란드 의회는 2013년 11월 8일 PLS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개정안을 통과, 개정된 법은 2014년 1월1일 발효되어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PLS에 적용됨
- 이번 개정은 보통의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PLS에서 파트너들에게 분배될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함으로써, PLS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
- 2013년 초 재무장관은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에 까지 법인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기업가, 조세전문가, 내각 장관들 및 정부 소속 변호사들도 반대하여 이루어지지 못함
 - 폴란드 GDP의 4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한파트너십들에 법인세를 과세 시, 폴란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지점과 자회사 과세 비교

	지점 (Branch)	자회사 (Company)
법인세율	19%	19%
이익분배	이익 분배 시 원천세 없음	배당에 따른 원천세 의무 (조세조약에 따라 상이) 한국의 경우 10%
과세규칙	지점활동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정확한 배분이 중요. 구체적 규정이 없어 문제 야기	원칙적으로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세 납부자
구분회계도입	해 당	해 당
비 고	지주회사가 있는 모국에서 폴란드에 지불한 법인세 공제 가능하며, 몇 개 조약은 폴란드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해 면세 조항이 있음	폴란드에서 납부하는 원천세 공제 가능. 모회사가 EU회원국에 소재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서 면제됨

3. 과세표준과 세액

□ 과세표준

- 폴란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공제대상비용, 소득공제, 이월
결손금을 차감하여 산출됨

$$\text{과세표준} = \text{총수입} - (\text{공제대상비용} - \text{소득공제} - \text{이월결손금})$$

- 총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외국정부,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원조
 - NATO, EU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받은 기금
 -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내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



-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비용과 관련하여 얻은 보조금, 지원금
-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 공제가능 비용과 감가상각
 - 공제가능 비용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납세자는 발생비용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함
 - 관련법에 따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공제가능
 - 2012년부터 계약에 따른 지급일과 상관없이 법정기한(60일, 90일)까지 비용명세가 확정되지 않으면 (감가상각 계상액을 포함) 공제비용으로 보지 않음
- 법령에서는 60개 이상의 공제불가능 품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의 항목이 있음
 - 미지급금 이자
 - * 이자 : 지불시기에 비용처리
 - 고정자산의 취득, 창출 또는 개선을 위한 지출, 무형자산 구입비용
 - 벌과금,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
 - 주식, 채권 구입비
 - 회계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항목들
 - 수익의 0.25%를 초과하는 광고 선전비
 - EUR 20,000를 초과하는 차량 보험료, 차량 마모비용
 - 의무사항이 아닌 회원가입비
- 소득공제
 - 기부금은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이 있으며,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소득금액)의 10% 한도
 - 과학기술단체에서 도입한 신기술 및 장비에 대해서 비용의 50%를 소득금액에서 차감 가능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신기술의 기준은 해당 기술의 발명 후 사용기간이 5년 이하인 것
-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 추후 감가상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손

- 결손발생 시 향후 5년 동안 소득에서 이월공제 가능하며, 한 해에 공제액은 결손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결손은 제외함
 - 법인에서 다른 법인으로의 전환은 제외하고 법적 형태를 변화하는 경우, 기업의 인수, 합병, 분할

□ 세금 면제와 세액공제

○ 법인세 면제 대상

- 투자펀드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포함)
- 연금펀드
- 공공서비스기관과 교회
- 특별경제구역의 회사들
 - ▣ 특별경제구역 (p.145) 참고
- 농업회사 (특정 농작물에 대한 소득은 제외)
- 외국인 투자펀드는 법인세 법령의 조건에 부합하면 면제

4. 감가상각

□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 취득가 ×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액
- 감가상각액은 법정 상각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정액법에 따른 고정자산의 감가 상각률>

항 목	상 각 률
건 물	1.5%
기계 및 장치	4.5~25%
자 동 차	20%
컴 퓨 터	30%

(자료원 : Deloitte, Taxation and investment in Poland 2013)

- 체감상각법(The reducing-balance depreciation method)
 - 법에 명시된 최대 격차율에 2를 곱하기 때문에 자산의 사용초기에 감가 상각이 가속화됨
 - 보일러, 발전기, 특화된 기계, 장치 및 장비, 기술장비, 승용차를 제외한 운송수단 및 장비 등에 적용
- 즉시 상각법(one-off depreciation) (3,500PLN 이하의 자산)
 - 소액자산은 일시 비용처리 가능
- 무형자산은 대부분 연 20%의 상각이 가능하나 아래의 항목들은 더 높은 상각률이 적용됨

<높은 감가상각률이 적용되는 무형자산>

항 목	상 각 률(년)
저 작 권	50%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50%
연구개발비용	100%

□ 감가상각 적용 시 유의점

- 계상된 감가상각은 상각자산의 제작이나 취득한 비용에 근거함
 - 중고 또는 보수한 고정자산은 납세자가 처음 무형자산 또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날부터 지나간 시간을 40년에서 뺀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며, 상각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함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기업 또는 조직을 포함한 형태전환 분할, 합병, 현물출자의 경우 고정 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구매자는 판매자가 적용한 감가상각법을 사용해야 함
- 감가상각 적용제외 : 땅의 영구사용권(Perpetual Usufruct)
- 구매 시 발생한 비용은 처분단계에서 공제 비용이 됨
- 세금목적의 감가상각률과 상각기간은 회계목적과는 다를 수 있음

<자산별 감가상각률과 방법의 예시>

고정자산유형	정액법		체감상각법	
	상각기간	연간 상각률(%)	상각기간	연간 상각률(%)
자동차 50,000PLN	60개월	20%(10,000PLN)	n/a	
트럭 100,000PLN	60개월	20%(20,000PLN)	30개월	40% (첫해40,000PLN)
컴퓨터 5,000PLN	3년	30%(1,500PLN)	18개월	60% (첫해40,000PLN)
건설장비 1,000,000PLN	60개월	20%(200,000PLN)	30개월	40% (첫해40,000PLN)
사무실건물 10,000,000PLN	40년	2.5%(250,000PLN)	n/a	

5. 기타

□ 이익분배(profit distribution)

- 폴란드 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불한 배당은 19%로 원천징수 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자
 - 폴란드 회사 간에 지불된 배당은 주주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5%,10% 또는 15%)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주주의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주식의 자동상환이나 회사의 청산에 따른 상환은 그 외 배당소득으로 분류

○ 다음의 배당은 원천징수 제외

- ▷ 폴란드나 EU/EEA국가, 또는 스위스 내에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회사에 지급된 배당
- ▷ 주주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최소 10%이상(스위스 내 사업장이 있는 주주는 25%) 주식을 보유한 것에 대한 배당

- 배당일로 2년의 주식보유 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보유기간은 배당지급일 당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아니며 배당금 수령법인의 관련 서류 제출이 있으면 가능
 - 다만, 그 이후 2년의 보유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배당금 지급 기업에 대하여 원천세 및 가산금이 부과됨
- 배당을 지급한 회사와 지급받은 회사는 폴란드나 EU/EEA 또는 스위스 내의 총 수입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음
-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주주의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수령인(주주)은 법인(주주)의 총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해외기업에 대하여 이자,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20%

○ 한국과 폴란드는 이중과세방지 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아래의 세율적용

- ▷ 로열티 : 10%
- ▷ 배당 : 10% 또는 5%(배당수령기업이 지급기업주식 10%이상 보유시)
- ▷ 이자 : 10% 또는 0%(중앙 및 지방정부, 중앙은행 앞 지급이자,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 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폴란드의 경우 핸들로비은행에 의해 제공 혹은 보증된 차관과 신용)



□ 국외소득 과세 (Tax on foreign earnings)

- 폴란드 기업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비거주자 기업은 폴란드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부담
 - 수입 원천지 국가와 폴란드 사이에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없고, 해외 수입에 대한 세금이 폴란드에서 공제되는 경우, 폴란드 영토 내 기업은 전 세계 수입에 세금납부의무가 있음
 - 외국납부세액은 폴란드 법인세 신고 시 공제되지만 폴란드 내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자본 이익 (capital gain)

- 주식이나 기타 증권의 양도에 따른 수익은 19%의 법인세율로 과세
 -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주식이나 기타 증권의 양도에 따른 수익이나 결손이 법인의 총수입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을 구성함
 - 조세조약에 따라 국외 거주인의 주식양도는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나, 그 회사의 자산이 주로 폴란드 내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의 양도의 경우 폴란드에 과세권이 있음

□ 리스 (Leases)

- 일반적 원칙에 따라 리스로 인한 소득은 19%의 법인세가 부과
 - 세법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가 있으며, 이 두 종류의 리스는 계약의 종료 시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 가능
 - 리스대상은 고정자산, 무형자산, 토지(또는 땅의 영구사용권) 등
 - 세금목적의 리스와 회계목적 리스는 다를 수 있으며, 운용리스는 전체 리스료를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운용리스가 세무관점에서는 더 선호되고 있음



<운영리스와 금융리스의 차이>

	운영(operating)리스	금융(financial)리스
리 스 료	리스제공자의 수입, 리스이용자의 비용	리스제공자의 이자수입, 리스이용자의 비용,
감가상각	리스제공자가 감가상각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
조 건	법정 감가상각기간의 최소 40% (부동산은 최소 5년)	최소 또는 최대 조건

6. 행정사항

□ 법인세 원천징수 납부

○ 일반적인 납부방법

-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매월 20일 법인세를 세무서의 납부계좌로 송금하여 선납
- 매월 납부할 법인세는 사업연도 개시 월부터 납부전월까지의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그 금액에서 직전 월까지의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 납부

○ 간편 납부방법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1/12을 매월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정하여 납부하는 방법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2년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의 1/12을 매월 납부세액으로 정하여 납부 가능

○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납부방법

- 소규모 납세자는 첫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후 5사업연도에 걸쳐 납부 가능



□ 법인세의 신고

○ 법인세 신고서 제출기한과 방법

-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정산도 신고와 함께 납부 또는 환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 법인세 미납 시 연 10%의 연체이자 부과
- 신고서는 CIT-8서식이 사용하며, 기타 세금 공제항목은 구비서류가 준비되어야 함
 - ☞ 신고서 서식 (p.193) 참고
- 무형자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서류가 요구 (과세당국의 관심집중 사항)

3 개인 소득세 (PIT)

1. 개요

□ 거주자와 비거주자

- 폴란드 세법상 거주자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폴란드에 두고 있는 사람
 - 폴란드 영토에서 회계연도 중 183일 이상을 체류한 사람
- 폴란드의 개인소득세법은 납세자를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과세범위에 차이를 둔
 - 폴란드의 거주자는 소득의 발생처에 관계없이 자신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0~32%의 소득세율 적용



- 비거주자는 폴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며, 일반적으로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비례세율을 적용받음
- 폴란드 국내법에 명시된 일반규칙은 국가 간 적용되는 이중과세조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한국 국세청의 '거주자증명서' 통한 개인 소득세 절감 방안

- 폴란드와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를 발급받으면 183일 이상 폴란드에서 체류하더라도 폴란드 비거주자 지위가 됨
- 단신부임의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용역계약의 형태로 인적 용역을 회사에 제공하고 이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20%의 단일 세율 적용받으므로, 과세표준 85,528PLN초과분에 대해선 소득세 절감
- 인적 용역에 대한 계약서 검토와 폴란드 과세 당국에의 질의회신을 받아야 추후 세무조사 시 안전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 이중과세조약에 다른 조건이 없는 한, 비거주자들은 다음 수입의 20%를 세율로 세금을 내며 이에 대한 공제는 없음

- ▷ 상표권, 저작권, 독점권, 디자인으로 얻은 수입
- ▷ 기술과 노하우 이전으로 얻은 수입
- ▷ 리스장치, 상용장비, 과학기기에 대한 사용료
- ▷ 예술, 문학, 과학, 교육, 언론, 스포츠 분야의 독창적 작품수입
- ▷ 행정부, 법원, 검찰의 의뢰로 만든 작품에 대한 수입
- ▷ 이사회, 감사회, 위원회, 그 외 다른 의사결정조직에 참여수입
- ▷ 법인이나 기업과 맺은 계약에 기초한 개인적인 용역서비스 수입
- ▷ 경영상 혹은 계약상 개인적인 활동으로 얻은 수입



□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개관

○ 개인에게 적용되는 주요 세금

소득 구분	세율
개인소득(Personal income)	18% and 32% (PLN85528 기준)
개인소득 : 단일세율 적용	19%
배당 (Dividends)	19%
이자 (Interest)	19%
저작권사용료 (Royalties)	18% and 32%
자본이득 (Capital gains)	19%
비거주자의 특정 소득 (Special expatriate regime)	20%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3%~20% 세율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23% 세율

○ 사회 보험료

보험료 종류	고용주 기여	근로자 기여
연금	급여의 9.76 %	급여의 9.76 %
장애	급여의 6.5 %	급여의 1.5 %
질병	-	급여의 2.45 %
사고	급여의 0.67 % ~ 3.33 %	-
건강	-	급여의 9 % (7.75 % 세액공제)

* 연금과 장애 보험료의 경우 기여금과 관련한 소득 상한이 112.380PLN이며, 다른 보험료의 경우 소득 상한이 없음

* 사고에 대한 보험료는 위험 카테고리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1.67%의 보험료율이 적용됨

☞ 사회보험료 (p.114) 사회보장제 참고

○ 기타 고용주의 책임

종류	고용주 기여
노동기금	급여의 2.45 %
고용 지급보증 기금	급여의 0.1 %



2. 소득의 종류와 납부하는 세금

□ 과세대상 소득

○ 과세대상 소득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장애연금
- 개인인적용역소득
- 사업소득(농업으로 인한 소득 제외)
- 부동산임대소득
- 이자배당소득
- 양도소득
- 기타소득

○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

- 농업소득
- 산림소득
-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증여세법이 적용되는 소득
- 불법행위로 인한 소득
- 선박소득

○ 130개 이상의 비과세소득 항목이 있으며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 행정법, 민법과 그 외 법에 근거해 얻은 손해 배상금
- 손해보험 및 개인보험 청구로 인한 수입(예외 존재)
- 외국 혹은 외국금융기관과 폴란드 정부 사이에 맺은 협정에 근거해 받은 세계원조기금을 제외하고 회사원에게 지불된 보수
- 노동자 소유의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고 노동자에게 주는 지불금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고용주의 사업장 이전 및 정착에 드는 비용 상환 (이사하는 달에 종업원 월급의 200%까지)
- 출장기간 동안 종업원에게 지불되는 일당 및 비용
- 일을 위해 일시적으로 집을 떠난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추가 지불금으로 법에 명시된 규칙과 제한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
- 회사 업무상 개인차를 사용하는 고용인들이 지불하는 비용
- 폴란드와 외국 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면세조항이 있는 경우 폴란드 영토 밖으로 향하는 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유관기관, 외국정부, 국제조직, 국제금융기구에서 받는 원조금 성격의 소득
- 카지노 게임으로 얻는 소득, 대중매체의 콘테스트에서 얻는 소득

□ 공제가능 비용

- 원칙적으로 수입의 발생, 유지, 보호를 위해 사용된 금액은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제대상 비용
 - 수익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은 공제대상이며 간접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름
 - 외화로 표시되는 비용은 폴란드화(PLN)로 전환하여 비용화 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환율은 비용이 발생한 전일 폴란드 국립은행이 발표하는 평균 환율 적용
- 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60개 이상의 항목들 중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음
 - 공제가능 기간이 지난 대손채권
 - 오락비용
 - 발생한 모든 미지급 이자
 - 세금 패널티와, 패널티에 대한 이자
 - 20,000EUR 가치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보험 프리미엄 부분
 - 20,000EUR 가치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부분



□ 소득공제와 과세표준

- 수익에서 공제대상 비용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됨
 - 소득금액의 산정을 위해서 납세자는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있으며, 납세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 산정
- 소득금액에서 다음의 소득공제 항목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산정
 - 당해 과세기간에 폴란드 또는 EU회원국에서 발생한 사회보장비용
 - 인터넷 사용금액
 - 공익을 위해 사용된 금액
 -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
 - 장애인 및 재활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
 - 신기술도입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
 - * 기부금은 자연인에 대한 기부는 제외되며, 2005년부터 소득의 6%까지 인정되며, 음식기부의 경우에는 공제율 한계가 없음
- 고용인을 위한 표준공제는 한 달에 총 111.25PLN(25EUR)

□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단위 : PLN, %)

과세표준	세 율
3091 이하	0
3091 초과 ~ 85528 이하	18
85528 초과	32

- 3091PLN 이하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자는 선납한 소득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소득신고서를 제출해 신청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총액기준 과세소득

- 다음에 열거하는 소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필요경비도 인정되지 않으며 수입금액 전액에 하나의 소득세율이 적용됨

- ▷ 비거주자의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 20% 세율 적용
- ▷ 폴란드 및 해외에서의 이자, 배당,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9%로 과세

- 소득세 확정 신고 절차가 불필요

○ 단일세율 적용

- 사업소득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9%의 단일세율 적용가능
-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의 결손금을 당해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
 - 의무적인 퇴직, 장애, 질병, 사고보험료 공제 가능
-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항목
 -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무적 건강보험료
- 금융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19%의 단일세율이 적용 가능한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귀속연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함

□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한 가구에 아이 한명 당 1.112 PLN까지 세액공제 가능
- 한 회계연도 내에서 아이가 납세자의 양육권 아래에 있는 기간에 비례하여 세액공제액 결정

○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보험 납부금액

- 폴란드에서 납부한 금액뿐만 아니라 EU의 다른 나라에서 납부한 금액도 가능



- 공공시설에 기부한 금액
 - 모든 납세자는 세액의 최대 1%를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사회단체 · 교육단체 · 자선단체 등 기부할 수 있는 단체는 'KRS number'로 지정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세금의 일부로 직접 기부함으로써 자신이 지지하는 단체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 있음

3. 기타사항

□ Copy-Right 제도

- Copy-Right 제도의 의의
 - 해당 직원이 창조적인 업무활동을 수행할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소득은 세액산출시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과
 - 창조적인 업무활동의 범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적용 가능
- 기본적인 적용조건
 - 현지 고용계약을 통한 근무
 - 창조적 업무수행
 - 해당 업무의 문서화
 - 협업에 의한 활동 가능
- Copy-Right 제도를 통한 소득공제
 - 총소득액 중 창조적인 업무활동 적용비율(CR rate)를 적용하여 창출된 관련소득의 50%가 소득공제액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해당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는 감면되지 않으며, 기본 소득공제 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
 - 감면대상소득은 4만 3764PLN을 한도
 - 폴란드 대부분의 기업이 활용하는 일반적인 제도임
- Copy-Right 적용 시 유의사항
- 이 제도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개별적으로 반영가능
 - 세무조사 등 추후 관련내용 증명이 필요할 경우 CR rate 산정근거 및 적용기간 중 관련 업무에 대한 필요증빙이 요구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

□ 가족합산 과세제도

- 가족합산 과세제도의 의의
- 누진세율 하에서의 가족합산 과세제도를 적용받을 때, 개인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합보다 가족단위로 납부하는 세금이 적어지는 혜택을 받게 됨
- 배우자 합산 과세제도 적용 대상 요건
- 배우자 합산 과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어야 함
 - 양 배우자측이 폴란드에서 적어도 183일 이상 체류해야 함
 - 배우자간에 공유재산이 있어야 함
 - 전 회계연도에 걸쳐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는 성명을 제출해야 하며, 이와 같은 성명서에는 양측의 사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개인 사업을 영위하여 1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것



- 자녀합산과세를 적용 대상 요건
 - 자녀가 아직 혼인 전이어야 하며(혼인, 이혼, 사별 전부 적용 불가능),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이거나,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25세 이하
 - 자녀가 개인 사업을 영위하여 1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것
- 가족합산과세 적용 방법
 - 부부의 소득에 대해 합산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순서를 따르면 됨
 - 배우자는 우선 각자의 소득금액과 세금 공제에 따른 세금납부액을 각자 계산 (a)
 - 배우자의 소득을 합하여 소득공제액을 제해준 금액을 2로 나누고, 그 나눈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관련된 모든 세액 공제 후의 세금납부액을 계산 (b)
 - 누진세율 하에서는 b의 값이 a의 값보다 작거나 같게 나오는데, b값에 맞추어 소득세 납부와 환급 가능
 - 자녀합산과세도 부부합산과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4. 세무행정

□ 선납 소득세

- 선납소득세의 납세기한과 납부할 소득세계산
 - 폴란드 소득세 납세자는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 그 다음달 20일까지 소득세를 선납해야 함
 - 소규모 사업자 및 당해연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납세자는 소득세 선납을 3개월에 1번씩 할 수 있음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매월 납부할 세액은 직전연도 또는 2년전연도 납부세액의 1/12로 간편 계산하여 납부 가능
- 선납소득세를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 하는 경우
 - 근로소득
 - 서비스 소득
 - 퇴직소득
 - 장애연금
 - 사회보장소득
 - 총액기준 과세소득
- 국외발생소득의 납부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장애연금 등을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자가 원천징수 할 수 없으므로 지급을 받는 자가 매월의 소득세 선납분을 계산하여 납부

□ 신고와 납부

-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 (PIT forms)
 - 다양한 종류의 소득세 신고서가 존재하며,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서류 종류를 모를 시에는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
 - 완성된 신고서에는 반드시 개인 사인을 포함해야 하며, 사인이 없을 시에는 무효가 됨
 - e-Deklaracje 시스템으로 인터넷상으로도 소득신고서 제출이 가능
-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과 절차
 - 고용주는 다음해 2월 말까지 고용인에게 일년치 선납소득세와 보험료 등 순 보수에 관련한 사항을 발급해야 함



- 소득세 납세자는 당해연도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4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 선납분에 대하여 정산해야 함
 - 장부를 기장한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야 함
 - 4월 30일 전 주는 세무서 개방시간이 연장되며, 마감일 전 마지막 토요일은 세무서가 개방됨
- 19% 단일세율 적용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
 - 1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타 소득의 신고방법과 동일하게 신고
 - 단일세율 적용받는 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선 안됨
 - 당해연도 소규모 신규사업자를 위한 신고·납부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납세자는 사업개시 첫해에 발생한 소득세를 향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 가능
 - 소득세 신고 또한 연기 가능

4 부가가치세 (VAT)

1. 개요

□ 개괄

- 폴란드 부가가치세법은 1993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세법은 2004년 4월 11일 개정세법에 기반을 두고 있음
 - 폴란드의 EU 가입 후, EU 규정에 따라 부가세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고 EU 회원국과의 수출입은 역내공급 및 인수로 대체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2014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거래시기, 매입부가세 공제시기, 송장 발급절차 과세표준 등 기본 요소가 수정
- 부가세(VAT, Tax on goods and services)는 폴란드에서 물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부과되는 광범위한 조세임
 - 연간매출이 1만 유로(한화 약1,400백만원)를 초과하는 법인 부가세 대상 업체로 등록해야 함
 - 현재 폴란드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은 23%이며,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또한 허용되고 있음

□ 과세대상

- 폴란드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
 - 대가를 받는 재화의 공급
 -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출
 - 재화의 수입
 - EU역내 재화의 공급 (Intra-Community supply of goods)
 - EU역내 재화의 취득 (Intra-Community acquisition of goods)

◆ EU역내 재화의 취득

- 다른 EU회원국의 재화가 폴란드 내에 공급되어 폴란드의 구매자가 당 재화의 소유주로서 재화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함
- 부가가치세의 계산 및 과세는 폴란드의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폴란드의 구매자는 매출세액을 계산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동시에 당 매출세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도 있음
- 세율은 폴란드 국내에서의 재화의 공급과 같은 세율이 적용

- 기업 전체 또는 일부의 매매, 비합법적인 활동 등은 부가가치세 대상 아님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독립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실체
 -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포함
 - 경제적 활동에는 제조·거래·광업 및 농업을 포함한 용역의 제공 및 수익을 얻기 위해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 등을 말함
 - 용역의 제공은 비록 1회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수행할 의도가 있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제적 활동에 포함

2.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임
 - 공급가액에는 공급의 대가로 받는 모든 것을 포함
 - 수수료, 포장비, 운송비 및 보험료 등
 - 매출가격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보조금도 공급가액에 포함
- 재화의 수입의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과 관세가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며, 만약 수입재화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면 특별소비세도 과세표준에 포함
- 무상으로 공급되는 경우, 재화 및 유사상품의 구매가격으로 결정
- 일반적인 상품가격이 없다면, 재화의 생산비용으로 대체

□ 세율

- 폴란드의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23%임 (2016년 12월 31일까지)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일부 물품 및 서비스에는 할인된 세율(deducted VAT rates)이 적용되며 일부 용역은 면세가 적용

<물품/서비스 별 부가세율 현황>

세 율	물품 및 서비스
23.0%	- 기준세율(standard rate), 대부분의 품목과 서비스에 적용
8.0%	- 식품(일부) - 의약품 및 보건관련 제품 - 승객 운송 서비스 - 아동용품(일부) - 공공행정서비스
5.0%	- 책과 잡지 -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 - 기본식품(basic food)
0.0%	- EU 영외 지역으로의 수출 - EU 영내 지역 국가로의 수출 - 국제 운송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일부)
면 제	- 금융 서비스(일부) - 보험 서비스(일부) - 교육 서비스

(자료원 : 폴란드 재정부 (www.finanse.mf.gov.pl))

□ 기본계산원칙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됨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세무서에서 직접환급을 받거나 차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적용 상품이 아닐 때에는 매입세액 면제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매출채권이 회수불가능 할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3. 공급시기 및 공급 장소

□ 공급시기 (Tax Point Date)

-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의 경우 인도시점, 용역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임
 - 2014년 1월 1일부터 물품인도 시기(delivery of goods)나 서비스 제공 시기(provision of services)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발생
 - 전기, 수도물, 하수시설, 건설, 통신 및 임대서비스는 예외
 - 허가권, 사용권 및 운송서비스는 일반규정이 적용되지만, 거래시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서비스 등이 실제로 시작된 날로 계산
 - ※ 기존 부가가치세법은 정보 통신, 에너지, 운송, 건설, 대여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공급시기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2014년부터 대부분 『일반 공급시기』 기준으로 통합
- 2014년부터 송장을 인도 받은 이후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업체는 거래한 송장에 의해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분명히 확인할 의무가 있음
 - 이는 납세자에게 유연성을 부여한 반면 정확한 부가가치세 공제 시기의 명시는 오히려 어려워짐
 - ※ 기존의 공제 기준일은 송장 수령일이었고, 수령자는 따로 공급자의 세무시기를 확인할 의무는 없었음
 - EU 회원간의 거래 즉 Intra-Community Acquisition(ICA)는 2013년 3월 1일부터 이미 적용되었고, 새로운 형식에 맞춰 매출 부가가치세가 보고 되어야만 매입 부가세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납세자들은 제품 공급자가 발급한 송장을 받아야만 ICA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음
 - 3개월 이내 송장을 받지 못할 경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줄여야 함
 - 송장을 받은 이후 감소된 매입세액 공제액 조정 가능



◆ 송장(Invoice)관련 2014년 1월 1일 개정사항

- 부가가치세 송장발급 및 작성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변경되어 납품 최대 30일 전에 부가가치세 송장 발급 가능
- 송장작성 규정 상위 법률로 개정 (기존 : 시행규정)
- 공급시기와 송장발행일 분리
- 납품 후 발급도 가능 (기존 제품 수령 후 7일에서 익월 15일까지로 연장)
- 한달 동안 수행된 거래를 포함하는 집합송장 발행 가능
- 송장이 잘못 작성되었을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정정된 송장의 확인에 대한 의무가 폐지
- 송장의 인도를 확인하는 서류에 대한 규정도 개정
- 정확한 날짜와 주소가 기재된 이메일이나 우편물 혹은 송장에 언급된 조건들을 준수하여 거래가 수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납세자 소유의 서류도 납세자가 정확한 인도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로 인정

□ 공급장소

- 공급장소의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국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제 거래에 있어서 공급장소의 판단은 매우 중요
- 주요 공급장소의 판단
 - 물품이 발송 또는 운송되는 경우 : 직전에 해당 물품이 있었던 장소
 - 물품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공급시기에 그 물품이 있었던 장소
 - 공급자에 의해 물품이 설치 또는 조립되는 경우 : 설치 또는 조립이 일어나는 장소
 - 국외소재 기업에게 폴란드 기업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국외소재 기업이 있는 장소
 - 폴란드 기업에게 국외소재 기업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폴란드



- 부동산관련 용역, 부동산 대리인으로 제공한 용역, 숙박용역, 건축관련 용역 : 해당 부동산이 있는 장소
- 음식 및 급식용역 : 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일어난 장소
- 단기 운송수단 렌트용역 : 고객이 해당 운송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한 장소

4.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 면세사업자

- 2011년 1월 1일부터 직전연도 연간 매출총액이 150,000 PLN 이하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
 - 당해 연도에 사업활동을 개시한 과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활동을 수행한 월수에 따라 기준금액 조정
 -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이러한 면제사업자들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국제적 서비스 : 수신인 부담원칙

- 국제적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위치를 고려
 - 폴란드의 부가가치세는 폴란드 내에서 제공한 서비스에만 부과
- 폴란드에서 일반적으로 제공 위치는 서비스 사용자에 따라 결정
 - 서비스 사용자가 기업체라면 공급위치는 사용자의 국가
 - 사용자가 개인이라면 공급위치는 서비스 제공자의 국가
 - 폴란드 기업이 외국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 제공 위치는 폴란드 국외가 되어 폴란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 만약 회사가 폴란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제공 위치는 폴란드가 됨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폴란드에 고정사업장이 있으나, 위에 언급된 제공위치가 없는 납세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폴란드 부가가치세 납부자인 서비스 사용인에게 사용자 부담 원칙이 적용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
 - 폴란드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납세자에 의해 만들어진 국내 상품에도 적용
- EU역내 재화의 공급
 - 폴란드의 재화 공급자가 다른 EU회원국 구매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여 그 회원국의 구매자가 당 재화의 소유주로서 재화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
 - EU역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0%의 세율이 적용
 - 폴란드의 공급자는 당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
 - 단, EU역내 재화를 공급할 폴란드 공급자는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EU역내 거래 시, 폴란드 납세자는 'Identification Numbers' (NIP)를 사용해야 함
 - ※ 예) PL999999999처럼 맨 앞에 국가코드를 기재

5. 기타사항

□ 주요 개정 사항

- 2013년 10월 1일 이후, 연료·철강제품 및 금 등을 거래할 때는 매입자는 매출자와 연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가짐
 - 거래가액 50,000PLN 초과하는 거래만 연대납세의무 적용
- 2014년 1월부터 중고품 인도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폐지
 - 사업 운영상 목적으로 구매하는 재화에 한하여 적용
 - 중고품을 인도할 경우, 중고품에 대한 송장을 새로 작성해야 하며, 최초 구매시 발행한 송장은 사용 할 수 없음



□ 차량 관련 개정

- 3.5톤 이하 개인 및 사업용 차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신규 차량 부가가치세법 적용되며 사용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액 차등
 - 다목적 차량, 즉 개인 및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부가가치세 공제는 50%로 제한 (세무서에서는 개인 및 사업용차량 사용 용도와 비율을 따로 측정하지 않음)
 - 사업용으로만 사용되는 차량과 10인승 이상 차량 부가가치세 전면 면제
- 부가세 감면 또는 면제 조건
 - 다목적 차량 관련 휘발류 부가가치세 면제는 2015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며, 사업용 차량은 이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 사업용으로만 사용되는 차량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전면 공제가 가능하나, 일정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본인의 차량이 사업용으로만 사용된다는 기준 제시해야 함
 - 2014년 4월 1일 이후 구입한 사업용 차량은 상기 VAT-26를 제출한 시각을 기준으로 7일 안에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서를 제출할 때까지 사업용 차량으로 간주되지 않음
- 대여 차량 관련 사항
 - 2014년 4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완료한 대여 차량의 할부금은 2014년 3월 31부터 전면 공제됨
 - 공제기준
 - 2014년 4월 1일 전에 계약 체결
 - 2014년 4월 1일 이후 기존 계약서에 변경이 없을 경우
 - 고객이 차량을 2014년 4월 1일 전에 수령했을 경우
 - 세무서에 늦어도 2014년 5월 1일까지 공제 등록을 할 경우



6. 행정사항

□ 신고 및 납부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매월 이루어짐
 - 매월의 부가가치세 실적에 대하여 그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세무서의 계좌로 송금
 - 직전연도 총매출액이 EUR1,200,000 (원화1,670백만원)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3개월 단위로 신고 및 납부 가능
 - 소규모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09년 1월 1일부터 3개월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 허용
 - 다만,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고는 3개월 단위로 하더라도 납부는 매월 단위로 하여야 함

□ 환급 (VAT Refunds)

- 수출 기업은 수출 통관 후 수출용 원자재 부과된 부가세 환급을 요청 가능하며 또 과도하게 지불된 구입 부가세도 환급 가능
 - 부가세 환급은 최대 180일 내에 이루어짐
 - 기업이 인화된 부가세율 또는 영세율로 과세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구입 부가세가 고정자산 매입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환급 기한이 60일, 더 짧게는 25일까지 단축
- 외국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VAT Refund for Foreign Companies)
 - 2010년 1월 1일부터 비거주자인 외국기업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기업이 EU의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의하여 환급 적용



- 적용 요건
 - 폴란드의 비거주자이며 고정사업장도 없어야 함
 - 해당 거주지국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 이어야 함
 - 폴란드의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가 아니어야 함
 - 폴란드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신청기간
 - 3개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에 대한 환급을 다음해 9월 30일까지 신청
-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 신청서는 폴란드어로 작성
- ▷ 부가가치세 송장원본 또는 통관서류 원본
-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자가 자신의 거주지국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는 증명서*

* 이 증명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자의 거주지국의 조세행정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폴란드 재무부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과 일치하여야 함. 만약 이 증명서가 폴란드 재무부 규정에 정하는 서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폴란드 재무부 규정이 정하는 서식이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담고 있어야 함

- 환급시기 및 방법
 - 외국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환급신청 후 4개월 이내
 - 서류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은 늘어날 수 있음
 - 환급은 폴란드화(PLN)로 환급신청기업의 계좌에 입금되며 환급계좌가 외국계좌일 경우 송금비용은 환급신청자 부담

□ 전자세금계산서(Electronic Invoices) 발행

- 2011년 1월 1일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 공급받는 자의 동의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전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관할 의무 진실성 확보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안심 서명(secure signature)은 요구되지 않음



5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

□ 개요

○ 폴란드 이전가격세제의 도입과 현황

- 2001년 1월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 보고의무 규정을 마련하며 처음 시행되었고, 2007년에는 고정사업장에도 보고의무가 생김
- 2004년 5월 폴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며 EU의 이전가격법령(EU Transfer Pricing Code of Conduct)을 받아들임
- 2013년 7월 18일, 이전가격관련 재정부법령 수정안 발표하였고, 이는 2010년 OECD TP Guidelines 과 EU Joint TP Forum*을 반영함

☞ EU Joint Transfer Pricing Forum Meeting of 6 June 2013

[http : //ec.europa.eu/taxation_customs/taxation/company_tax/transfer_pricing/forum/jtpf_2013_06_06_en.htm](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taxation/company_tax/transfer_pricing/forum/jtpf_2013_06_06_en.htm)

-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다국적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몇몇 다국적기업의 남용적인 이전가격 행태로 세무조사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음

○ 이전가격세제 근거법령

- 법인세법(CIT) 및 소득세법(PIT)에 근거 규정을 두고 지속적인 관련법률 보강과 인력 보강 중

법 령	내 용
법인세법 11조	특수관계자정의, 정상가격원칙, 이전가격방법, 조세피난처
법인세법 9조	이전가격문서 신고규정
법인세법 19조	문서화 누락에 대한 50% 징벌 적 세율 규정
재무부시행령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2006년 5월 개정령 : APA 제도 시작 2009년 9월 개정령 : 특수관계인간 과세가능소득조정 시 이중과세제거와 소득측정의 방법과 절차 규정*

☞ (p.183) 부록 참고



- 폴란드의 이전가격법령은 국제거래(cross-border transactions)뿐 아니라 국내거래(domestic transactions)에도 적용

- 우리나라는 특수관계 내국 거주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52조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인간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규정이 적용되는데 비해,
-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국조법과 같은 특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안에 규정을 두고 내국거래와 국제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해 모두 이전가격 세제를 적용하고 있음**

- 법령에 OECD 가이드라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나, 과세당국이 APA협상이나 TP원칙을 적용할 때나 법인세법 9조a 6항의 Tax Havens 규정에 OECD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녹아들어있음

□ 특수 관계자 규정

-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에 특수 관계자 정의가 다름

국내거래	국제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국내 사업체가 다른 국내 사업체 지배할 때 · 같은 법적 사업체나 개인이 2개 혹은 그 이상의 국내 사업체를 지배할 때 · 경영, 감독, 지배에 관여하는 국내 사업체나 개인 간에 가족, 자본, 재산이나 고용관계가 존재할 때 · 같은 사람이 동시에 양쪽 사업체에 경영, 감독, 지배관계로 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업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사업체를 지배하거나 지분을 가질 때 · 외국사업체나 외국인이 국내 사업체를 지배하거나 지분을 가질 때 · 같은 법적 사업체나 개인이 내국 업체와 외국업체를 동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그들의 지분을 가질 때

- ‘지배(control)’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 감독에 관여하거나 피지배회사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함
- 폴란드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적용되며 고정사업장과 본사와의 이익배분에 대해서도 적용됨



□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자기조정

○ 정상가격 산출 방법 종류

- ① 비교가능 제3자 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 ②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 ③ 원가가산방법 (cost plus method)
- ④ 이익분할방법 (profit split method)
- ⑤ 거래순이익률법 (transaction net margin method)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특징

- 그동안 전통적 접근법(CUP, RP, CP)이 거래순이익률법에 우선하고 그 중에서도 CUP 방법이 가장 우선시 되었으나 13년 세법 개정에서 우선 순위가 사라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라고 변경 됨
- 그러나 여전히 과세당국은 CUP 방법을 선호하며 그중에서도 폴란드 내국기업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방법을 선호함
- 이전가격 방법 중 Berry ratio는 권고되지 않음

○ 납세자의 이전가격 조정(Taxpayer adjustment)

- 납세자가 이전가격 보고를 위해 법인세 신고 전 스스로 조정하는 절차로, 주로 연말에 이루어져 연말이전가격 조정(year-end adjustment)라고도 함
- 납세자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이라 생각되는 가격으로 실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과의 차이에 대한 조정하는 것
- 폴란드는 연말 이전가격 조정을 허용하며, 재무상태표와 세금신고에 조정된 가격이 반영되어야 함
 - ☞ 조정은 부가세와 관세에도 영향을 주게 됨 (p.69) 참고.
- 세금신고 시 특별한 제출 사항은 없음 (문서 및 벤치마킹연구 등 증빙 자료 구비)



○ 상계조정(set-offs) 인정

- 동일한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중 하나가 한 거래에서 이익을 분여받고, 동시에 다른 거래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러한 거래의 대상에 대한 과세당국의 가격의 조정(adjustment)은 없음
 - 한쪽에서의 손해가 다른 쪽에서 보상을 받았기(compensated) 때문

*** Ordinance of the Minister of Finance(2009), Chapter 1**

- Where in a transaction (transactions) between associated entities the terms agreed are less favorable to one of the entities as compared to the terms which would be agreed by independent entities, and at the same time in another transaction (transactions) involving the same entities the terms are agreed are more favorable to this entity, no adjustment of the prices of the objects of such transactions by the tax authorities or the fiscal audit takes place in cases where lower benefits obtained in the first transaction (transactions) are compensated with higher benefits obtained in that another transaction (transactions)

□ 무형자산 관련 이전가격

○ 무형자산 관련 이전가격 주요 내용

- Ordinance of the minister of finance chapter 5. paragraph(19~23)에 규정
-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자 간 무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시장가격(market value) 결정 시, 합리적인 제 3자가 그러한 조건에 거래를 하는 지 여부를 첫 번째 점검요소로 함
- 거래의 결과인 합리적 기대이익이 거래로 발생한 비용보다 적고, 납세자가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할 때 과세당국은 발생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게 됨
- 발생 비용수준을 결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이나 용역의 사용이 조건적(conditional)일 경우, 기타 비용이 고려되어야 함



○ 그룹 내 용역의 제공 유형별 이전가격

(1) 경영자문료(management fee)

- 경영자문료란 컨설팅, 회계, 시장조사, 마케팅, 매니지먼트, 데이터처리, 채용, 보장과 보증, 그리고 다른 유사한 용역에 대한 대가
- 관련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없다면 20% 원천세율,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있으면 조세조약상 원천세율이 적용
- 경영자문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비용 공제 가능함
 - 경영자문서서비스를 받는 자가 수입증가의 목적으로 해당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음을 입증
 - 경영자문서서비스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이익이 없으면서 그룹전체에 발생한 비용을 단순히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함

(2) 광고비용의배분

- 특수관계자 간 발생한 광고비용은 광고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비례하여 결정
- 한 특수관계자가 광고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특수관계자가 그로인한 이익을 얻었다면, 한 특수관계자가 다른 특수관계자들에게 상업광고용역을 제 3자라면 동의하였을 조건과 가격으로 제공한 것으로 간주
- 광고가 수행된 시장과 그 시장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 점유율을 고려해야 함

(3) 자금 대여 및 지급보증

- 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commission)에 대해 정상가격 적용함
- 이자의 시장가격(market price)은 가장 낮은 이자율을 근거 함. 즉 비교 가능한 조건에서 비슷한 만기를 가진 대여금을 얻기 위해 독립된 법인에게 지불하였을 금액



- 이자결정시 고려사항
 - 대여금의 양(amount)과 대여기간
 - 대여금의 성격과 목적
 - 포함된 위험과 담보 : 비특수관계인 채무자에게 요구했을만한 특별 조건들
 - 대여금의 유통, 외환변동위험, 대여금의 헷지펀드 비용
 - 수수료(commission)의 양

(4) 연구용역(R&D)

- 특수관계자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거래에서 연구용역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결정은 Cost Plus Method가 적합

(5) 원가배분약정

- 무형자산의 제조를 위해 특수관계기업에 의해 발생한 비용에 납세자가 공동참여 할 때 납세자가 부담한 비용은 정상가격원칙에 따라야 하며, 비용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제 3자간에도 받아들여질 만할 경우 여야 함
- 위 조건은 각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용부과(기대이익 비율로 각 기업에 청구하는 비용)와 이익할당(비용부과 수준에 따라 당초 조건에서는 기대되지 않았던 이익의 배분)에 적용됨
- 납세자가 비용부담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비교가능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을 경우, 납세자가 낮은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이 납세자의 이익의 시장가격은 낮은 가격을 사용해야 함

□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준비사항

- 국제 거래에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 TP 서류 준비, 정상가격 결정에 관한 벤치마킹 연구,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관한 과세당국의 사전승인(APA)제도 등



○ 이전가격신고규정 (TP Documentation)

	항 목	내 용
1	보고의무 발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0유로이상 - 재화거래 (소기업납세자는 50,000유로 이상) • 30,000유로이상 - 용역 거래, 무형자산의 리스나 판매 • 50,000유로이상 - 그 외의 경우 • 20,000유로이상 - 조세피난처*와의 거래(한 회계연도 동안, 특수관계 여부 관계없음)
2	포함 되어야할 정보 ※ 모두 필수사항, 누락시 문서효력 인정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행된 기능분석(사용된 자산과 위험을 포함하여) ② 지불조건, 방식 및 관련된 거래, 예상비용의 결정 ③ 거래가격의 결정과 이익계산 방식 ④ 거래과정에 수행된 경제 전략 및 실행에 대한 결정 (가격이 기업에서 정한 경제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⑤ 주된 거래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거래참여자들이 고려하는 요소들 ⑥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된 기대이익의 결정(그 거래가 무형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3	제출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의 요구가 있는 날로 7일 이내 • 납세자들은 각 거래가 완결되는 회계연도에 TP문서를 준비할 것을 권고
4	작성 언어	폴란드 어
5	보관 기간	5년
6	가 산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 과세당국의 요구일로 7일 이내 미제출 시, 그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추가과세소득에 대해 50%의 벌과금적인 법인세율적용(일반적인경우19%), 추가납 부분에 대한 지연납부 이자만큼 가산세도 적용 • 개인 : 이전가격 문서를 준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도 부과됨. 미제출 또는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실무자는 책임을 지게 됨. 이 경우 최대 가산세는 3.6백만 PLN (2010년 기준)
7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사업장(P.E.)에도 적용됨(2007년부터) •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필수사항이 포함된 문서

※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을 볼 때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발생요건(threshold)은 각 거래별로 적용하지 않고 같은 거래상대방인 경우 모든 거래의 합으로 적용



☞ 판결사례 7 (p.88) 참고

◆ (참고) 조세피난처

재무부 시행령에서는 유해조세환경(Harmful tax competition, Tax heaven)이 적용되는 국가 목록을 나열하였는데, 2007년 1월부터 이러한 국가에 위치한 회사들(특수관계인 여부 상관없음)과 폴란드 내국법인들의 거래가 정상가격이 아니면 과세당국은 기업내부거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

○ 벤치마킹 연구(Benchmarking studies)

-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규정과 달리 벤치마킹연구는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나,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비교대상거래를 찾아 보고 분석하는 것이 권고
- 특히 APA 과정에서는 과세당국은 벤치마킹 연구를 통한 비교대상거래를 국내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을 선호함
- OECD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국제적인 적용사례가 증가한다 하여도, 실제 세무조사에선 지역적인 접근(local approach)이 우세한 상황
- 지역의 벤치마킹연구(local benchmarks)가 전 유럽의 사례연구보다 선호되며, 산업을 넘나드는 가격정보가 벤치마킹연구에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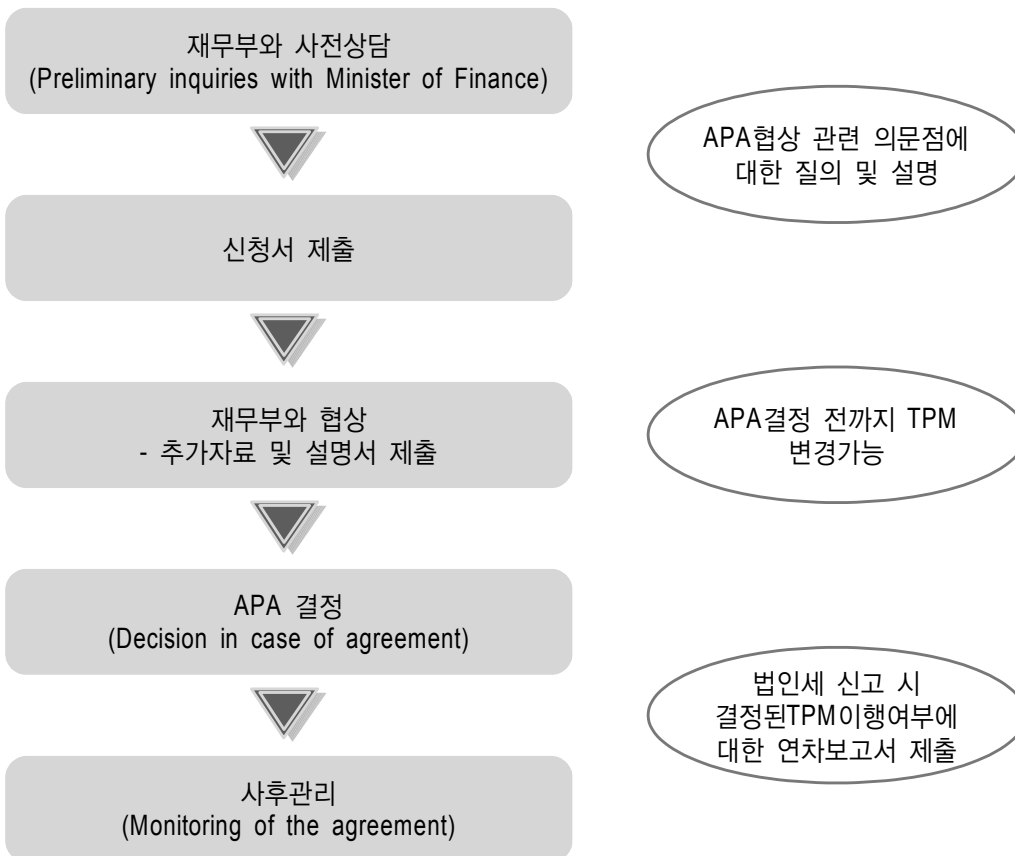
○ 사전승인제도 (APA : Advance Pricing Agreement)

☞ 사전승인제도는 따로 설명 (p.61) 참고

2. 사전승인제도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 개요

○ APA 과정



○ 관련법령

- APA 관련법은 2006년 1월에 발효되었고, APA 절차는 Tax Ordinance Act(2009)와 Section II a of the TAX Code(articles 20a~20q) 설명
☞ (p.187) 부록참고
- 2013년 재무부는 지난 7년여 간의 APA 경험을 살려 Tax Ordinance Act 법령 수정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출, 2014년 3월 의회 승인



- 이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납세자에 대한 유연성과 APA프로그램 이용 가능성 향상에 초점을 맞춤

※ 'Amendments to the Tax Ordinance Act concerning APAs-draft legislation guidelines'
2014.4월 KPMG in poland 보고서

○ 폴란드의 APA

- APA의 결정은 세무조사나 세금관련 소송 등에서 과세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짐
- 다국적기업의 비용배분(Cost sharing agreements)에 대해서도 APA가능
- 폴란드 내국업체(domestic entity)만이 APA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내국 업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조항에 따르며 2007년부터는 고정사업장(P.E.)도 해당되어 고정사업장과 본점간의 거래에도 적용이 됨
- 2006년이후 APA 시행 초기에는 주로 일방APA 신청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쌍방, 또는 다자간 APA-MAP가 늘어나는 추세임. 그러나 외국의 과세당국과의 정보의 교류나 제도정비 면에서 개선사항이 많음
- 현재 법령상에서 오직 '두 당사자(two parties)'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만 APA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최근 개정법령에서 현실에 맞게 제한을 폐기함으로써 APA의 적용범위를 넓힘

종 류	내 용
일방(Unilateral) A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국내·국제거래 · 폴란드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외국의 보상조정 없음
쌍방(Bilateral) A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 국외사업자 대해서는 권한 있는 외국 과세당국의 승인이 필요(납세자MAP 개시요청)
다자간(Multilateral) A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이상의 외국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 · 국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외국 과세당국들의 승인이 필요(납세자MAP 개시요청)

☞ MAP (p.70) 참고



□ APA 신청 절차

○ 사전상담(Preliminary inquiry)

근거법령	Article 20e of the Tax Code
해당부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형 식	서면 또는 사전미팅(prefiling meeting)

- APA 신청 전, 납세자가 해당거래가 APA가 가능한 사안인지,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APA 결정 예정일(likely date), 절차 등에 관해 재무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 사전상담은 APA 신청 전의 의무사항 아니며 납세자 선택사항
- 사전상담에 대한 수수료나 APA과정 중 이 단계에서 갖게 되는 재무부와 미팅에 대한 비용은 없음

○ APA 신청

- APA 신청 시 법정 신청 양식(application form)은 따로 없으며, 필수사항들이 포함된 문서면 됨
 - ☞ 그리스-폴란드 APA 신청서 예시(p.192) 부록참고
- 납세자가 APA를 신청하는 시점에 진행 중인 거래이거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
- 신청은 폴란드 내국업체에 의해 신청되어야 함

<APA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형식	관련 법령	상 세
언어	헌법2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폴란드어로 작성 • 외국어로 준비된 문서는 전문번역가에 의해 번역
기본 사항	세법 168조2항 (Tax Code art 16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내용 • 납세자 이름, 주소, 개인납세번호(NIP) • 대표 및 대표자 서명(다수일 경우 대표자들)



형식	관련 법령	상 세
수수료	인지세 1조 (Stamp Duty Act art1) 세법 20조 2항 (Tax Code art 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 있는 대표자의 모든 문서에 대해 17PLN의 인지 수수료 • 신청수수료 : APA신청대상이 되는 거래 금액의 1% (범위제한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거주자간 일방APA : 5,000PLN(약1,100EUR)이상, 50,000PLN이하 ▷ 국내 - 국외거주자간 일방APA : 20,000PLN(약4,400EUR)이상, 100,000PLN이하 ▷ 국외거주자와의 쌍방 또는 다자간 APA : 50,000PLN(약11,000EUR)이상, 200,000PLN이하
법정 필수 포함 요소	세법 20f조 (Tax Code art 20f)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전가격 결정에 사용된 방법 (법인세법에 규정) ② 이전가격 계산에 사용된 원칙, 재무전망(계산 근거), 이전가격계산에 사용된 비교대상자 Data분석 등, 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 ③ 이전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의 가치, 거래유형, 거래대상 ▷ 거래 과정에 대한 설명 : 거래당사자들의 기능, 자산, 위험 분석, 기대비용, 경제적 전략, 그 외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해당 산업 경제 상황, 제3자 비교대상자의 거래분석, 거래당사자들의 조직 및 자본구조, 당사자들의 재무회계 원칙에 대한 설명) ④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발휘한 문서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조정합의서, 거래당사자들의 의도를 나타내는 그 외 문서들 ⑤ 제시된 조정조건(Term of the arrangement) ⑥ 해당거래에 관여한 특수 관계자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에 관련 모든 서류와 필요한 설명을 제공할 것다는 그들의 동의를 포함해야 함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APA 신청 거부 사유>

요건	사 유
형식 요건	상기(표 참조) APA 신청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요소의 누락
내용 요건	APA신청 이후에 과세관청에 의해 제기된 이전가격결정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납세자는 충분한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합의를 위한 회의(Meeting of consensus)
 - 거래의 정상가격 조건에 대해 재무부와 논의
 - 추가 정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추가 서류 및 벤치마킹 자료 등)
 - 합의를 위한 회의는 평균적으로 4번, 최다 11번, 최소 1번

□ APA의 심사

- 심사기간

형 태	심 사 기 간
일 방 APA	6개월
쌍 방 APA	12개월
다자간 APA	18개월

- 심사기간은 과세당국의 지침사항일 뿐 연장 가능
- 폴란드에서 APA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19개월. 가장 짧았던 것은 6개월 (2011.10월 기준)

- APA 수수료

- 신청 수수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7일 이내에 다음의 계좌로 입금함

▷ 계좌주 : 재무부 관리사무소(Administrative Office)
▷ 은행명 : Polish National Bank O/O Warsaw
▷ 계좌번호 : 10 1010 1010 0038 2522 3100 0000

- APA 연장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최초 APA신청 시 지불된 금액의 절반임



- APA와 관련된 그 외 기타비용 : 외부전문가 및 통·번역가 보수, 전문가 통·번역가, 증인 등의 여행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함
- 신청을 철회할 경우 수수료의 절반 환불
- 일방APA에서 쌍방APA로 전환 시에는 1/4 수수료 환불

○ APA 심사 및 분석

- APA로 다뤄지는 거래의 대부분이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것으로 유통업제조업과 증가추세인 무형자산(무형자산 평가 및 이전가격방법)과 관련된 사례
 - * 폴란드에 투자하는 외국법인은 대부분 제한적 도매업자(limited risk distributors)
- APA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TPM(Transfer pricing Methodology)은 거래 순이익율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 OECD가이드라인은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조정 시, 비밀 비교대상자 (secret comparable)*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폴란드 과세당국은 실제 많은 사례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음
 - * 과세당국이 다른 납세자들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 등 일반 납세자들은 접근 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함
- 폴란드 과세당국은 폴란드 내의 비교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비교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도 폴란드내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
 - 폴란드 내의 데이터베이스 이용이 폴란드 내 비교대상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판단 때문

◆ 비교가능업체 분석 시 사용하는 DB

- ▷ Amadeus : 폴란드 과세관청이 APA에서 주로 사용하는DB
- ▷ Tegieli : 폴란드 국내업체 데이터베이스),
- ▷ Monitor Polski“B”(정부 발간 재무정보 데이터) : 재무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데 대한 벌금수준이 낮아 최근 기업들이 재무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등으로 최신의 재무데이터를 얻기 어려움



□ APA 결정

○ APA 결정의 효력

- APA의 효과는 최대 5년까지 지속됨
- 납세자가 만료기한 6개월 전에 합의의 연장을 신청하고, 당초 APA결정에 적용된 중요한 조건들이 변하지 않은 경우 5년 더 연장 가능함
- 납세자의 이전가격 결정 방법이나 그 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경우, 재무부는 신청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이유에 관해 통지서 형태로 통지를 하고, 다른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제시해야 함.
 - 납세자는 통지서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APA 신청서를 수정하거나 추가 설명 및 추가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음
 - 최근 Tax Ordinance Acts(2009)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재무부가 납세자의 APA신청 거부 시 납세자에게 다른 TP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 삭제

○ 소급적용여부의 선택

- 기존에는 APA 결정사항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없었음(no roll-backs)
- 그러나 최근 개정으로 APA결정의 효력의 시작일이 과세결정을 받은 날(the date of delivery)에서 APA신청서를 제출한 날(the date when the application was filed)로 변경되어 APA의 결과를 소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납세자가 소급적용 여부 선택 가능
- 납세자가 신청일로 APA의 결정을 소급하게 될 경우 법인세와 부가세 과거 신고내역을 수정하게 됨.
- APA심사 과정(평균19개월)이 길어질 경우 소급적용으로 인해 APA 적용(최대 5년)의 남은 기간도 줄어들음

○ APA 결정 사후관리

- APA가 이뤄진 후 납세자는 합의내용의 이행여부에 관한 특별리포트(연차보고서)를 매년 법인세신고서와 함께 제출



- 만약 당초 결정을 위한 중요한 가정(critical assumptions)이었던 항목들의 확연한 부적합성의 결과로 경제적 관계가 변한다면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APA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를 요청할 수 있고, 동시에 당초 결정을 내렸던 과세당국도 합의내용의 변경이나 폐지할 권리가 있음. 이 경우, APA 결정이 이뤄졌던 때부터 효력이 시작됨
- 만약 납세자가 APA에서 비롯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결정을 당초로 소급하여 무효화

○ APA 통계

- APA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납세자들에게 선호되지 않으나 최근 소요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음
- 폴란드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26건의 결정건수 중 22건은 긍정적 결정을 얻었고, 1건은 거부되었으며, 3건은 진행 중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total
사전상담 (preliminary inquires)	27	14	12	11	10	6	80
APA 신청건수	12	3	5	3	4	4	31
일 방 APA	12	2	5	3	3	1	26
쌍 방 APA	0	1	0	0	0	3	4
다자간 APA	0	0	0	0	1	0	4
APA 결정건수	1	2	6	2	7	4	22
일 방 APA	1	2	6	2	7	2	20
쌍 방 APA	0	0	0	0	0	2	2
다자간 APA	0	0	0	0	0	0	0

(자료원 : Selected Transfer pricing issues/APA in Polish practice(2006-2011).MDDP)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과 관세가격(customs valuation)의 관계

- APA 결정이나 이전가격 과세에 따라 물품수입과 관련한 관세가격과 내국세과세가격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경우에, 물품 수입업자는 관세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관세청에 이에 대한 보고와 납부의 의무발생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이 경우, 지연납부이자 및 벌과금 발생, 그러나 자발적 신고시 벌과금은 면제
 - 관세가격이 감소한 경우도 보고의무를 두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과세당국이 이를 강제하지는 않음. 이때 물품수입자가 이미 지불한 관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관세청에 의해 개별적으로(case-by-case basis) 검토될 사항임
 - 관세의 추가납부 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기간은 모두 3년, 추가납부의 경우, 사기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과세기간이 연장 됨
 - 관세가격의 변동에 대한 보고 시 수정신고서와 관세당국에 사유를 설명한 편지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이전가격 소급조정에 따른 관세조정은 합산하지 않고, 각 거래별(transaction by transaction)로 결정함
- 관세가격과 부가가치세와의 관계
- 이전가격 변동에 따른 관세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관세가격의 증가나 감소가 관세청에 보고되면 납세자의 추가 신고 없이 부가가치세는 관세당국에 의해 결정(추가납부, 납부지연 이자 있음) 또는 환급가능
- * 폴란드 관세청(GUC)- 2002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통합됨. 세무행정의 디지털화로 두 세무당국 간의 정보교환이 활발해짐

3. 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 개요

○ MAP 의의

- 이전가격 관련 이중과세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 위하여, 양국의 권한 있는 과세당국(CA)이 상호 합의 절차를 거쳐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



- 쌍방APA 또는, 다자간APA 신청 시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상호합의가 개시 됨

○ 처리담당

- 재무부 소득세과(Department of Income Taxes In the Ministry of Finance)
- 권한 있는 과세당국(Competent Authority)
 - 재무부 소득세국장(Director of the Income Taxes Department)
 - 재무부 소득세부국장(Deputy Director of the Income Department)

○ 폴란드 MAP의 특징

- 폴란드는 짧은 APA이력으로 MAP의 사례도 드물며 대부분이 유럽 내 국가들임
 - ※ MAP외에도 EU Arbitration Convention을 이중과세 분쟁 해결 기관으로 이용
- 과세 당국의 과세통지를 받은 후 상호합의 신청으로 납세자는 납부를 보류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님

□ 상호합의 신청 절차

- 1) 국외특수관계자와 이중과세발생
- 2) 폴란드내국법인의 상호합의신청
 - 세무조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이나 이중과세를 초래한 과세결정이 내려진 때로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 폴란드 내국법인만 신청가능
- 3) 권한 있는 과세당국은 다음의 첨부문서를 서면으로 알려야함 (1달이내)
 - ① 내국업체에게 MAP 요청의 접수사실 ②상대체약국가의 권한 있는 과세당국에게 내국업체로부터 MAP를 요청 받은 사실



4)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① 내국업체와 그 특수관계자의 신상명세 :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 ② 사건의 배경과 구체적 관련사실
- ③ 관련된 과세기간의 명시
- ④ 이중과세와 관련한 증빙이나 세무조사 보고서 및 과세결정의 사본
- ⑤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포함하여 납세자 또는 특수관계자에 의해 시작된 법적절차와 청구에 관한 상세설명
- ⑦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줄 정보나 모든 서류를 과세당국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내국법인의 약속

5)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모든 문서는 상대체약국의 권한 있는 과세당국이 동의한 언어로 번역되어야함

6) 서류 미비 등으로 상기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세당국은 요청이 있는지 2달 이내에 내국법인을 불러 추가정보 제공을 요구

7) 모든 필요문서가 구비되어 요청이 접수된 날 또는 서류미비의 경우 마지막 문서가 도착한 날에 사건이 제출이 된 것으로 봄

8) MAP는 최종 과세결정 등이 이뤄질 날, 또는 사건이 제출된 날로부터 2년 안에 결정되어야 함

□ MAP 관련 기타 사항

○ MAP가 불가능한 경우

- Arbitration Convention의 8조(article 8)에 따라 해당거래에 대한 이익조정 시 ‘심각한 벌과금(serious penalty)’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중재할 수 없음

- ‘심각한 벌과금’이란 벌금의 부과, 금고(imprisonment), 벌금과 금고를 함께 처벌받거나 세법의 위반행위로 자유를 박탈하는 처벌 등에 처해질 경우를 말함



- 대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 폴란드는 1990년 7월 특수관계 기업의 이익조정을 포함한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비준하고 2006년 8월 26일 발효되었음
 - 이중과세제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TP법령 및 이중과세방지협약과 EU Arbitration Convention에 근거하여 대응조정

4. 이전가격 과세동향

□ 이전가격 세무조사

☞ 이전가격은 일반적인 법인조사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며, 조사기관, 방법, 절차 등은 (p.123) 참고

- 이전가격관련 세무조사 현황
 - 2011년 기준 250명이 이전가격전담요원(FTEs : full time equivalents), 이 중 100명은 이전가격 전문가(경제학자, 변호사, 회계사 등)이며 FTEs는 과세관청의 필요에 따라 더욱 증가되는 추세임
 - 과세당국은 조사나 소송업무에서 이전가격방법(TPM)과 기업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를 많이 이용
 - 2008~9년사이 폴란드의 재무감독(fiscal control office)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해 6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
 - * 이 수치는 재무감독당국과는 일선 세무서(tax office)에 의해 실시된 세무조사는 제외한 것
 - 같은 기간 동안 행정법원은 약 50개의 이전가격관련 판결을 내렸으며 이중 대부분은 재정거래(financial transactions)와 관련된 것, 상당부분은 법원이 납세자 패소판결을 내림
 - 연간 수입이 5백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 납세자는 특별세무서 담당. 외국 출자자가 5%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와 폴란드의 지주 회사도 대기업 납세자에 해당함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최근 결손법인, 사업구조조정, 기업내부용역거래 지적재산거래*, 본점활동, 재정거래(자금의 대여, 지급보증)에 주시함
 - * ☞ 지적재산거래 관련 (p.117) 지적재산권 참고
- 이전가격관련 세무조사 선정기준
 - 외국인 소유로 3년 이상 결손법인은 세무조사 가능성 높음
 -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납세자의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짐
 - 이전년도와 현 년도의 소득비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과다납부 된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 등 고려
 - 결손(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의 결손), 기업내부거래에서 무형 자산에 대한 과도한 대금 청구, 서비스 또는 금융거래, 사업모델의 변경, 갑작스런 이익의 감소(예를 들면 사업구조조정의 결과), 회계연도 말 조정 등
 - 가장 조사를 많이 받는 유형은 제한적 도매업자(limited risk distributors)나 계약생산업자(contract manufacturers), 무형자산 서비스 (원가배분약정포함) 그리고 대여(lease)와 같이 한정된 위험구조를 가진 거래임
- 이전가격관련 세무조사 특징
 - 이전가격은 일반적인 법인조사의 한 부분으로 진행됨
 - 과세당국은 조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수색권한을 가짐. 자료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심각한 페널티를 초래함
 - 폴란드 세무조사과정은 납세자가 이전가격과세에 대응해야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 특징이므로, 사전에 문서화 및 벤치마킹연구 준비가 필요
 - 과세는 해당 거래가 신고 된 과세연도 말로부터 5년 동안 과세가 가능함 (실질적으로는 6년이 됨)



□ 최근 TP 관련 법 개정 주요 이슈

- ※ TP Decree of the Ministry of Finance'13, 07월18일. 14.1월부터 발효
- OECD TP 가이드라인, EU Joint TP forum 반영

(1) 특수관계자 간 기업구조조정(Business restructuring)에 대한 이전가격 문제

○ 법령 개정 사항

- 폴란드 재무부는 그동안 법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특수관계인 간 기업구조조정(Business Restructuring)에 대한 법령을 개정
- 재무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재무부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추상적이기 쉬운 구조조정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
 - 어떠한 부분이 구조조정으로 여겨지고, 구조조정이슈는 어떻게 분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세당국의 관점을 제시함
 - ☞ OECD가이드라인의 chapter IX 준용. 부록참조
 - * [http : //www.finanse.mf.gov.pl/cit/wyjasnienia-i-komunikaty](http://www.finanse.mf.gov.pl/cit/wyjasnienia-i-komunikaty)*

- 과세당국이 향후 주목하고 있는 분야로,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함
 - 구조조정의 이유가 사업목적이 분명한가?
 - 이전된 기능, 위험, 자산의 평가가 적절한가?

○ 기업구조조정 정의

- 폴란드법 상 구조조정의 정의는 OECD 가이드라인과 비슷하게 매우 광범위
- 기업구조조정이란 특수관계인 간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능과 자산, 위험을 이전하는 것
 - 모든 종류의 이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이전(transfer)이 기업의 잠재적인 이익(profit potential)을 이전하는 결정적인 요인일 것
- 과세목적상 정상가격의 원칙을 따름
- 기업구조조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기업의 프로필이 완전한 기능과 위험을 가진 제조업자(Fully Fledged manufacturer)에서 제한된 기능 위험을 가진 하청업자(toll manufacturer)나 위탁제조업자(contract manufacturer)로 변경되는 것
- 완전한 기능과 위험을 가진 유통, 배분업자(distributor)에서 제한된 위험을 가진 배분 유통업자로 변경되는 것
- 조달이나 수출, R&D와 같은 그룹 내 기능의 중앙 집중화
- R&D 기능이나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그룹 내 중앙 집중화 등

○ 과세당국이 기업구조조정 세무조사 시 중점을 둘 사항

- 실질 : 구조조정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서류상에서만 발생했는지 여부
- 합리적 선택 : 내국회사가 구조조정에 따른 기대이익에 대해 선택 가능한 다른 사업의 기회가 있었는지,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었는가 여부
- 탈출비용(Exit-payment) : 중요한 기능, 자산, 위험을 이전할 때, 그에 대한 대가로서 탈출비용에 대한 평가와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내국회사에게 청산비용의 지불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입증
-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자간 계약의 재협상이나 취소의 대가로 구조조정된 회사에게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합의에서 권리의 이전과 같은 특정 상황에 주의를 기울임
- 과세당국은 2008년 이후의 구조조정 및 관련거래에 대해 적용가능

(2) 저부가가치 서비스(Low value-added services)

○ 저부가가치 서비스의 의미

- 서비스 이용자의 주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일상적인 서비스로서 일반적으로 쉽게 이용가능하며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에게 중요한 가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
- 폴란드정부는 저부가가치서비스의 개념을 최근 법령개정을 통해 소개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예를 리스트화하여 첨부함



- 관리 또는 회계 서비스, R&D서비스, IT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재무 및 관리서비스, 기술지원 등
 - 개정 TP법령은 저 부가가치 서비스로 자본그룹(Capital group)의 구성원들이 주로 요구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망라하고 있음
- 납세자의 준비사항
-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면 세무조사가 간단해 지는 등 TP 분야에서 관리 부담이 절감되나 이를 위해 납세자는 또 엄격한 자료 제출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또 다른 위험부담이 됨
 - 납세자는 그룹 내 서비스제공거래가 저 부가가치서비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설명 및 관련 문서를 준비해야 함
 - 제출 자료에는 ① 서비스제공의 유형 및 방법에 대한 결정 ②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확증 ③ 관련비용의 결정 에 관련한 정보가 있어야 함
 - 과세당국에 의해 정상가격으로 받아들여지는 mark-up 비율(비용에 대해 이익을 가산함)에 대한 지침이 누락되어 아직 미비한 점이 있음

□ 이전가격 관련 판례(Legal case)

- 폴란드 법원
- 매년 재무감독당국(fiscal control office)과 일선 세무서(Tax office)는 특수관계거래에 관해 수백 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법원에서는 약 40~50 건의 이전가격관련 판결이 발생함
 - 법원판결은 폴란드 법규뿐만 아니라 해석된 OECD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판결하여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시 폴란드 법령뿐 아니라 OECD가이드라인 또한 고려하도록 함
 - 폴란드 법원은 이전가격과세관련 사건에 있어 벤치마킹 분석 등 TP관련 과세당국의 철저한 사실분석을 요구



○ 이진가격과세 관련 법원의 최신판례(2010~2013)

— <사례1. 중개자의 관여가 위험을 증가시키는가?> —

- 소송기간 : 2.5년
- 조사년도 : 2006
- 추가과세금액 : 265,000PLN
- 거래유형 : 재화
- 거래범위 : 국내
- 판 결 일 : 2012년 3월27일
- 사건번호 : II FSK1882/10-최고행정법원(Superme Administrative Court) 판결
- 결 과 : 국승 (과세유지)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 과세당국은 모회사에 의해 공급되는 제품(연마된 금속;forged steel)의 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니며 공제되는 비용이 과대 계상되었음을 발견하고 정상가격 원칙에 근거하여 가격이 선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슷한 유형의 사업 활동을 하는 제3자간에 사용된 가격과 비교함
- 과세당국에 의하면 연마된 금속을 제조업자로부터 바로 구입하고, 모기업으로부터 구입하지 않는 것이 가격 면에서 더 이익이었으므로 누락된 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함
- 행정법원은 해당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정상가격이 적용되지 않았고 납세자가 공제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판결. 법원은 납세자를 위한 최선의 사업모델과 더 낮은 비용은, 모기업의 중개 없이 제철소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보았음. 법원은 모기업의 중개가 상승효과(synergy)를 가져왔다는 회사측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모기업의 참여는 비용의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임

(2)판결의 시사점

- 과세당국이 특수관계인 간 사업관계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가를 입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진가격 측정에 있어 최고행정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은 제품의 구매거래에서 중개자로서 모기업의 정당하지 못한 관여에 근거한 사업모델을 인정하지 않음.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해당 거래에 대하여 중개자의 기능수행과 비용절감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하여 입증한 것의 정확성에 손을 들어줌



<사례3. 과세당국은 부동산 양도수익을 추정할 때 그룹관계를 무시할 수 있나?>

- 소송기간 : 3년
- 조사년도 : 2005년
- 거래유형 : 재화
- 거래범위 : 국내
- 판 결 일 : 2010년 12월15일
- 사건번호 : FSK1528/09-최고행정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판결
- 결 과 : 국패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구매에 대한 가격이 정상가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문 제기함. 당국은 전문 감정인에게 해당 토지의 가치평가를 의뢰했고 양도가격보다 부동산의 시장가격이 더 높게 책정됨. 이에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법인세법 11조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의 정확한 양을 결정하기 위한 적용법인 법인세법 14조 3항으로 추가 수입소득을 결정함

■ 법인세법 14조3항(Article 14 of the CIT Law (general rule for all companies))

양도계약상에 나타난 가격이 시장가격과 상당히 다르다면 과세당국은 계약서상 양측 당사자에게 그러한 가격을 조정하거나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다른 그 가격을 정당화할만한 이유를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납세자가 답을 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한 가격으로 과세를 한다. 만약 그렇게 과세된 가격이 납세자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 최소 33퍼센트 차이가 발생한다면 전문가 의견에 소용된 비용은 양도자가 부담해야 한다.

- 최고행정법원은,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전문감정인의 가치평가가 법인세법 제11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함. 과세당국이 적용한 계산방법은 특수관계를 포함한 거래로 인해 시장가격과 차이가 생기는 것에 대한 법인세법 제11조를 고려하지 않았음

(2) 판결의 시사점

- 과세당국은 법인세법 14조3항에 따라 추가 소득에 대한 과세절차를 수행하는데 있어 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법 제11조를 무시해서는 안됨
- 특수관계와 그로 인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당국에 있으며 과세당국은 계약의 결정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비슷한 거래에 적용되는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거래가치를 산정해야 함.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면, 과세당국은 그것을 무시해선 안됨



<사례4. 금융리스가 이전가격 법령 적용대상인가?>

- 세법해석
- 거래종류 : 금융
- 거래범위 : 국내
- 판 결 일 : 2012년 2월 16일
- 사건번호 : I SA/Po 827/11
 - The Municipal Administrative Court in Poznań-valid판결
- 결 과 : 납세자 주장 기각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 금융리스. 특수관계자의 상표권 사용료와 재구매 가격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법인세법 11조 (특수관계자 항목)가 고려되어야 함
- 회사는 리스 할부료는 재구매 가격 - 적어도 리스자산의 최초가격 이상 - 을 고려하여 특수관계 업체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법 11조는 금융리스 계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함
- Voivodeship 행정법원의 의견은, 법인세법 11조에 근거한 소득의 측정은 금융리스에도 유효하며 특수관계인 간의 그러한 협정은 당사자들이 비특수관계일 때보다 더 우호적인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소득의 측정에 관한 법률조항(법인세법 11조)은 분명하고 적용 가능함

(2) 판결의 시사점

- 법인세법에 리스 할부료의 최소한의 가치를 구체화했음에도, 특수관계인 간 합의한 경우, 수수료는 법인세법 11조에 따른 정상가격원칙을 지켜야 함. 해당 수수료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짐



<사례5. 창고 보관인가 판매인가?>

- 조사년도 : 2005/2006
- 추가 과세금액 : 302,000PLN
- 거래유형 : 재화
- 거래범위 : 국제거래
- 판 결 일 : 2011년 7월 5일
- 사건번호 : I SA/Kr 716/11
- Voivodeship Administrative Court in Kraków - valid 판결
- 결 과 : 납세자 주장 기각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 납세자는 난방용품 및 위생품의 도매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음. 주 공급자는 독일의 특수관계인이며 상품의 매입자는 국내외에 모두 있음. 나중에 라트비아와 우크라이나와도 특수관계가 발생하였음. 약 30%의 매출이 특수관계인에게 일어남
- 특수관계인 거래의 경우 판매가격은 구매단계에서 공급자의 판매가격에 따라 결정됨
- 납세자는 특수관계인과의 사업상 거래의 핵심은 상품의 판매가 아니라 창고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수행된 기능과(특별히 주문을 받아 넘기는 것과 상품을 보관하는 것, 하역과 적재, 매출 송장작성, 관세문제처리) 발생한 비용(외환차손)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균일하게 공급자 가격에서 5%의 마진을 받음
- 과세당국은 (a)납세자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의 활동범위와 (b)그러한 거래 아래에서 재화에 대한 법적권리가 납세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볼 때 거래의 핵심은 단순한 창고보관 서비스가 아닌 재화의 거래라고 문제제기 함
-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상품의 매출에서는 상당히 높은 마진을 얻었다고 주장함
- 결론적으로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품매출의 정상가격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법인세법 11조에 의거, 추가소득을 과세함. 과세 시 제3자간의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래순이익율법(Transaction net margin method)을 사용 함. 과세당국은“해당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을 선택적으로 한정하고,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계산에 있어 경제적 원칙을 저버렸으므로”납세자가 제출한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이익 계산방법을 거부함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추가적인 소득과세는 50%의 벌과금적 세율로 적용되었음. 납세자는 당국의 이전가격 문서요구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오직 공급자와의 계약서만을 제출함
- 주(州)행정법원(Voivodeship Administrative Court)은 과세당국이 입증한 폴란드 시장가격의 이익(margin)이 특수관계인 간의 이익보다 상당히 높았으므로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함. 법원의 의견은 납세자의 활동이 단지 창고보관 및 수송업무에 그치지 않았을 뿐더러 매입가격에 대한 제품의 매출 - 주요 주주의 지시로 어떠한 이익도 없이-이 정상가격 조건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함. 따라서 회사는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발생했을 이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결론내림

(2) 판결의 시사점

- 이 케이스는 세무조사가 점점 광범위해진다는 것을 보여줌. 과세당국은 단지 계약서 검토 또는 납세자의 설명이나 피상적인 TP문서의 설명을 살펴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 비교대상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의 요소들을 이해하려 노력함. 가격을 측정할 때 과세당국의 거래순이익 방법 적용은 점차 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재정 분석도 수행하고 있음
- 납세자들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조건을 신중히 정해야 하고 미리 제3자와의 거래와 차이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함
- 납세자들은 또한 개별거래의 수익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정확한 비교근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세무조사 기간 동안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행정법원의 아래의 두 코멘트는 새겨봐야 함
- “과세당국은 증거자료를 고려해달라는 납세자의 요구에 대해 그 증거자료에 의해 제공되는 상황들이 이미 충분히 다른 증거들로 인해 입증된 것으로 여겨진다면 납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계약서가 법에서 정한 이전가격 문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TP문서를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짐. “어떠한 증거도 없이, 지점들과 제 3자들 간의 관계가 각각 다른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관점은 받아들일만한 주장이 되지 않는다.”



<사례6. 대여금에 정상가격의 완전한 평가가 요구됨>

- 소송 기간 : 1년
- 조사 연도 : 2006년
- 추가 과세금액 : 49,500PLN
- 거래유형 : 재무거래
- 거래범위 : 국내거래
- 판 결 일 : 2010년 10월 15일
- 사건번호 : I SA/Kr 1188/10
 - judgment of the Voivodeship Administrative Court in Kraków - valid 판결
- 결 과 : 국패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 납세자는 투자업을 영위, 특수목적 회사(special-purpose vehicle(SPV))를 폴란드 내 지점으로 설립함. spv와 납세자간의 지배관계가 존재함
- 투자를 위해 납세자는 2004년~2006년 사이 spv에 대여금을 지급,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기한은 2007년 12월 31일이었으나 2008년 부속계약에 근거하여 상환일이 2008년 12월31일로 연장됨
- 재무감독세무조사팀(Fiscal Control Office)은 2006년 해당 거래가 정상가격에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함. 대여금은 기한까지 상환되지 않았고 납세자는 발생 이자와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지 않았음. 과세당국은 그들이 대여금의 계약 조건 결정방법에 이익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함
- Voivodeship 행정법원은 납세자의 불만은 고려할만하다고 판결. 법원은 과세 당국이 계약의 어떤 조건이 정상가격과 다른지에 대해 분명히 제시하지 못했으며 비교가능 거래에 대한 제시도 없었고 오직 SPV에 준 대여금의 당초 조건보다 이익을 조금 적게 취한 계약조건만이 있을 뿐이었다며,
- 법원은 이 사건이 “과세당국은 원칙적으로 비교가능 거래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이후 과세당국은 규정된 비교가능한 계약과 대여금 계약의 벤치마킹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계약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계약과 다른지를 살펴야한다”며, 그러한 분석의 전제가 있을 때 소득의 추가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결함

(2) 판결의 시사점

- 특수관계자 간의 대여금 계약의 조건은 종종 과세당국에 의해 혐의를 받게 되는데 과세당국은 계약 조건이 대여금 수령자에게 있어 은행에 의한 대여금보다 더 우호적인 것인가를 고려함. 이자율에 대해 과세당국은 1) 원금과 이자상황이 반복적으로 달라지는 것과 2)이자 추징에 어떠한 페널티도 없으며 3) 담보도 없고 4) 대여금지불에 수수료도 없는 경우 의문을 제기함
- 법원의 판결은 납세자에게 우호적임. 과세당국이 내부거래(inter-company) 대여금의 정상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근거제시가 중요함
 - 1) 법인세법 11조에 따른 소득 계산 시,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완전한 벤치마킹분석을 수행해야하고 특수관계인 거래의 요소가 시장 조건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제시해야 함
 - 2) 과세당국은 소득계산의 방법을 완전하게 입증해야 함. 법인세법 11조가 과세당국에게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아님
 - 3) 자금 대여자가 자금수령인의 활동을 분명하게 지배(control)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지점의 주요지분을 보유), 담보가 없는 것이 정상가격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않음. “자금 대여자가 주요주주일 때, 대여금 계약은 전통적인 담보형식 없이도 충분히 안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사례7. 이전가격보고기준 결정에 포함되어야할 용역은?>

- 세법적용에 대한 해석
- 거래의 종류 : 용역
- 판 결 일 : 2012년 5월 10일
- 사건번호 : II FSK 1894/10
- judgment of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 결 과 : 납세자의 항고 기각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 납세자는 특수 관계자와 유사한 성격의 다양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으려고 준비 중임. 그러나 각각의 용역의 형태에 따라 가격은 다르게 계산됨. 납세자는 용역의 가치결정에 있어 각각의 용역이 별도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따라서 특수관계인 용역에 대한 이전가격 문서 보고화 규정 (TP Documentation) 적용(30,000EUR 이상)은 각 거래별로 기준금액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고 주장함
- Voivodeship 행정법원 및 최고행정법원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주장을 지지하고, 그 본질(nature)이 같은 용역의 형태에 있어서는 각각의 거래의 가치를 합해야 한다고 결정함. 따라서 이전가격 보고화규정의 기준(threshold)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결정
- 그러나 법원은 동일한 특수관계자와의 수많은 거래를 무조건 더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 다른 가격이 결정되는 다른 성질의 용역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2) 판결의 시사점

- 해당 사례는 납세자의 의견이 수용되지 못하였으나 이 판결은 납세자에게 우호적이 판례로 볼 수 있음
- 용역거래의 총 가격은 오직 같은 종류의 거래일 경우에만 합산하여야 함. 최고행정법원은 “만약 납세자가 수개의 거래를 동일한 특수관계자와 수행 하지만 각각 다른 가격이 결정되어있는 다른 용역이라면 그러한 개별적인 용역은 합산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함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6

국제조세 관련 추가 이슈



1. 기타 국제조세

□ 과소자본 세제 (Thin Capitalization)

○ 과소자본 세제의 의의

- 특수관계 기업(related party)간 과도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폴란드 법인세법 Article 15 Section1에 명시

○ 과소자본 세제의 적용

- 국외지배주주(회사지분의 25%이상 보유)로부터 차입 또는 보증한 금액이 이자를 상환하는 날 기준으로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련 이자는 법인세 결산 시 공제 (deduction) 대상에서 제외
- 지배주주 판단 시 회사지분율은 의결권(voting right)에 근거하여 계산
 - 예를 들어, 회사 지분율은 10%이나 3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지분율 30% 보유한 것으로 보고 과소자본세제 적용

□ 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피지배외국회사과세제도)

○ CFC제도의 의의

- 내국법인이 해외 경과세국에 소득을 유보함으로써 국내의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제재하려는 제도
- CFC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해외실체가 EU나 EEA 관할권 하에 위치하여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임



○ CFC제도의 도입

- 폴란드는 2013년 5월 6일 자국의 국제조세제도의 보완을 위하여 CFC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표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 CFC제도의 도입 목표는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국내 납세자들이 소득의 일정부분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기 위한 것임
- CFC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와 동일한 취지를 가진 제도임

○ CFC제도 적용에 해당하는 실체를 판정하기 위해 도입 기준

관련 실체 위치	필요 조건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적용됨)
관련 실체가 OECD가 정하는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경우	조건 없이 CFC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
관련 실체가 OECD가 정하는 조세피난처가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폴란드 납세자가 25% 이상의 주식 또는 의결권을 소유한 경우
	해외 실체의 수익의 50% 이상이 수동적 소득일 경우(이자, 배당,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의 소득) 해외 실체가 위치한 관할권의 세율이 폴란드의 현행 세율보다 25%를 초과하여 적은 경우 (현재 폴란드의 법인세·소득세 세율이 19% 이므로 19%의 25% 이하인 14.5%보다 낮은 세율을 가진 관할권)

(자료원 : [http : //tmagazine.ey.com/news/ibfd/poland-cfc-regime-draft-bill-released-consultation](http://tmagazine.ey.com/news/ibfd/poland-cfc-regime-draft-bill-released-consultation))



2. 한 - 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

□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배경 및 현황

○ 개정 배경

-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1992년 2월 발효된 이후 20년이 경과
-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금융정보 교환, 조세회피방지 규정 등이 OECD 등 국제기준에 미흡하여 개정하게 됨
- 금번 개정을 통하여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양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

○ 현황

- 2013년 10월 정상회담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 서명
- 동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은 2014년 현재 국회 비준 대기

□ 주요 개정내용

○ OECD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 협정 개정

- 사용료 제한세율 : 원천지국의 사용료 제한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인하
- 부동산 주식* : 사실상 부동산과 실질이 동일하고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

- * 자산 가치의 50%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
- ** 일반적인 주식의 경우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

○ 조세회피목적의 거래 방지

-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간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등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 신설
- 양국간 투자 및 인적교류 증대를 위하여 조세상 혜택 적용범위 확대
 - 이자면세기관의 범위에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추가
 - 이자면세기관은 폴란드 거주자로부터 이자를 수취할 경우 폴란드 정부로부터 과세가 면제되는 기관
 - 기존 협정에는 정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만 포함
 - 정부용역기관의 범위에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추가
 - 정부용역기관의 직원(폴란드 국민 제외)이 폴란드 현지 지사 등에 근무하고 보수 또는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폴란드 정부로부터 과세가 면제
 - 기존 협정에는 정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만 포함

3.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 개요

- 고정사업장의 의의
 - 고정사업장이란 폴란드 영토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하며, 외국인 세금을 내는 영구적인 사업장을 의미
 - 지점, 대리점, 사무실, 공장, 작업장 또는 천연자원 발굴 작업장 등이 이에 속함
 - 외국인 납세 거주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폴란드 영토 내의 공사장 또는 공사, 조립 및 설치작업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외국인 납세 거주자 대리인이나 외국인 납세 거주자를 위해 폴란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고정사업장에 포함되며, 이때 계약을 위한 위임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 폴란드 고정사업장의 특징

- 고정사업장 건설 공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기간에 대한 조항 없음
- 독립대리인이 만들지 않은 고정사업장을 가리키는 조항 없음
- 폴란드에 고정사업장 건설 준비 과정을 가리키는 조항 없음

○ 이중과세방지협정 관점에서 본 고정사업장

- UN 모델에 기초한 OECD 모델을 따름
 - ※ 단, 저작권 과세에 관련된 조항은 예외
- 외국인 기업가의 고정사업장 건설 여부 조건
 - 고정된 장소 (Fixed place of business concept)
 - 종속 대리인 (Dependant agent concept)
 - 건설 하도급은 고정사업장 제외 (Construction PE concept)
- 위의 조건 이외에도, 서비스 및 해외에서의 고정사업장 조건 등을 포함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있음

○ 폴란드 고정사업장에서 창출된 수익은 폴란드에서 19%의 세율 적용

- 폴란드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소득은 폴란드 일반세법 적용하여 과세

□ 한 - 폴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상 고정사업장

○ 건설, 조립 또는 설치작업 장소와 관련한 고정사업장

- 원칙적으로 한국회사가 폴란드에 설립한 건설, 조립 또는 설치작업 장소는 한국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 건설, 조립 또는 설치작업이 12 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로 회사가 폴란드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 작업기간에 관계없이(작업기간이 12개월이상 되는 경우라도) 한국회사가 폴란드에서 건축사업 일부분(하도급 등)에 참여하는 것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음

○ 컨소시엄 계약과 관련한 고정사업장

- 폴란드 입찰경쟁에 참가하는 한국기업들은 흔히 폴란드 법인과 함께 컨소시엄 방식으로 활동
- 폴란드 법원은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회사가 폴란드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컨소시엄 참가로 받은 한국회사의 모든 이윤은 폴란드에서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적용

○ 직원파견과 관련한 고정사업장

- 한국회사가 직원을 폴란드로 파견할 경우, 해당직원의 폴란드 상주는 한국회사의 폴란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
- 또한, 폴란드로 파견된 직원이 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이 대리권을 이용했다면 이 해당 직원은 회사에 종속되는 대리인으로 인정되고 폴란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 이 직원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폴란드에서 과세 적용

□ 고정사업장 관련 사례

<사례 1>

A회사는 한국기업임. A회사는 폴란드시장 진출을 결정하고 현지지점을 설립함. 폴란드에서의 지사활동이 번창해짐에 따라 다른 EU 국가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현재 계획 중임. A회사는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지점의 경제활동을 법인으로 전환시 지점의 모든 현물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이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짐. 통상적으로 지점은 경제적, 재정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고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지점의 현물자산은 법인자본의 일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지점의 현물자본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거래에 대한 과세도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이 경우 법인의 자본증자 관련 정관작성은 민법거래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며, 과세율은 회사자본금의 0.5%가 적용

법인자산으로 소속되는 지점의 현물자본은 소득세도 적용되지 않음. 추가적으로 지점의 현물자산에 상응하는 지분의 매각으로 인한 소득은 한국과 폴란드의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

<사례 2>

폴란드 회사(회사A)는 한국에서 과세적용을 받는 회사의 일인주주(회사B)와 함께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폴란드 구청도서관 건축 입찰수주를 따냈음. A회사는 컨소시움 리더로서 건설 현장에 근로자, 감독, 관리, 건축자재 구입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하청업체들을 고용함. B회사는 노하우를 담당하는 역할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도서관 건축을 감독하는 엔지니어, 건축기사를 파견함. A회사는 B회사가 발급한 대리권 하에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함. 건축은 11개월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회사A와 회사B에 관계없이 2개월이 더 지연되었음. B회사의 엔지니어들과 건축기사들이 항시 건설현장에 배치되었음

☞ 도서관 건축이 12개월 이상 소요된 사실만으로는 회사B의 고정사업장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없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회사A에 의해 건축이 관리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회사 B는 폴란드에서 컨소시움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정사업장을 가지게 됨. 회사A는 회사B로부터 입찰에 컨소시움으로 참가하고 입찰계약 내용에 따른 적절한 대리권을 받았음. 이러한 측면에서 회사A는 회사B의 대리인이 되었으며 컨소시움 계약아래 입찰수주로 인하여 회사B가 창출한 모든 수입은 폴란드에서 19 %의 과세를 적용받음



7 그 밖의 세금과 관련 규정

1. 국세 : 직접세

□ 상속증여세 (Inheritance and Donations Tax)

○ 과세대상

- 폴란드내의 재산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 증여한 경우

○ 납세의무자

- 폴란드내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인 또는 수증인이 폴란드의 거주자일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 증여세는 자연인에게만 과세

○ 과세표준 및 세율

-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취득한 재산 또는 재산권의 시장가치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대상은 아래와 같음
 - 단층주택 또는 아파트 획득 : 110㎡의 경우이나 특정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공제대상
 - 지난 5년 동안 한 사람으로부터 품목 또는 자산을 획득한 경우 그 관계에 따라 최대 PLN 9,637 까지 공제가 가능
- 세율은 취득한 재산의 가치 및 피상속인 증여자와 상속인 수증자와의 근친관계에 따라 3%~20%까지 부과

○ 신고 및 납부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납세자는 1개월 이내에 상속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과세당국은 상속증여세 신고서를 바탕으로 상속증여세를 납세자에게 고지하며 이에 따라 납세자는 상속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상속증여세가 면제
- 납부기한은 각 3월15일, 5월 15일, 9월 15일, 11월 15일임

□ 거래세 (Tax on Civil Law Transactions)

○ 과세대상

- 거래세의 과세대상은 상품 및 재산권의 판매 또는 교환, 대부, 저당, 파트너십(partnership), 회사의 설립 등
- 부가가치세가 거래당사자들 중 한 납세자에게 부과 되거나, 회사간의 합병의 경우는 거래세가 적용되지 않음
- 부동산의 양도, 파트너십,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더라도 거래세가 부과
- 1000PLN 이하의 동산의 판매 및 회사의 주주들이 보증한 대출건에 대해서는 거래세가 면제

○ 과세표준 및 세율

- 거래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과세대상물건 및 그 종류에 따라 다름
- 상품 및 재산권의 과세표준은 그 시장가치(세율 2%)이며, 대부는 그 금액 (세율 2%), 파트너십은 그 지분(세율 0.5%)이 과세표준이 됨

○ 신고 및 납부

- 거래세는 원천징수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 후 14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운송세 (Tonnage Tax)

-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국제운송에 대하여 부과
 - 운송세의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폴란드 거주자이어야 함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1개월동안 운행한 선박들의 운송량을 합하여 일별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그 금액에 대해 19%의 세율을 적용
- 신고 및 납부
 - 운송세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부과
 - 당해연도에 매월의 실적에 대하여 예납을 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1월말 까지 당해연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운송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분리하여 신고할 수도 있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임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며, 한 번 분리 신청을 하면 5년간 운송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분리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 금속채굴세 (Tax on Extraction of Certain Minerals)

- 금속채굴세의 도입
 - 2012년 4월 3일 구리, 은 등의 금속 채굴 세제에 대한 새 법이 공포
 - U.S 달러로 산정되는 은과 금의 국제 평균 상거래 시세를 참작하여 폴란드 즐로티(zloty)로 변환하여 과세되고 두 금속을 채굴함으로써 얻는 초과 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폴란드에서 구리, 은 등의 광석을 채굴하는 개인, 기업 및 비법인 단체에 적용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과세표준 및 세율

- 은은 킬로그램에 따라, 구리는 톤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그 킬로그램 및 톤에 대한 수치 기준은 매년 1월 20일까지 공표
- 최고세율과 최저 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음
 - 은의 킬로그램 당, 구리의 톤당 세율은 법으로서 정하여 있으며, 그 범위는 최저 0.5%에서 최고 35%임
 - 현재, 최고세율 적용 시 구리의 경우에는 톤당 16.000ZL이며, 은의 경우에는 킬로그램 당 2,100ZL 임

○ 신고 및 납부

- 해당 법에서는 납세자는 세금을 계산하여 관세청에 기한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납세 마감일은 금속 채굴 후, 다음달 25일까지임

□ 자본세 (Capital Tax)

- 주식 자본금이 증가하면 0.5%의 자본이득세가 부과
- 거래로 인해 주식자본이 증가해도 회사의 합병·분할·다른 회사로 변경 및 현물출자 시에는 부과되지 않음

◆ (참고)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주식이나 기타 증권의 양도에 따른 수익이나 결손이 법인의 총수입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을 구성함



2. 국세 : 간접세

□ 소비세 (Excise Duty)

○ 과세대상

- 폴란드의 소비세는 에너지 제품, 전기, 주류 담배 등 소비재(excise goods)에 부과되는 세금
 - 위와 같은 소비재는 반드시 소비세 관인이 찍힌 제품을 공급해야 함
 - 차량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모터 자동차에는 부과
- 폴란드의 소비세는 EU 소비세법과 일치하는 과세대상과 EU 소비세법과 일치하지 않는 과세대상 두 가지로 나누어짐
 - EU소비세법과 일치하는 과세대상 : 석유, 주류, 담배
 - EU소비세법과 일치하지 않는 과세대상 : 자동차, 향수 및 화장품, 전기 등
- 소비세는 폴란드에서 과세대상 물건의 제조, 창고에서의 반출 및 과세대상 물건의 수입, EU역내 국가 간의 공급, 과세대상 물건의 교환 및 무상 공급에 대하여 과세
 - * 과세대상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제

○ 납세의무자

- 소비세 과세행위를 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과세대상 물건에 따라 다르며,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4가지 방법이 있음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자동차)
 - 과세(수)량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법(연료, 가스, 알코올)
 - 최대소매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 (2), (3)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법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수입가격에 관세를 합한 금액
- 2014년 소비세 세율

항 목	세 율
가솔린 엔진	1.565,00 ZL / 1.000 L,
디젤 연료	1.196,00 ZL / 1.000 L,
액화 가스 연소 엔진	695,00 ZL / 1.000 kg,
고유의 바이오 연료	1.196,00 ZL / 1.000 L,
전 기	20,00 ZL / 1 MWh
에틸 알코올	5.704,00 ZL / 1 hl 100% vol
맥 주	완제품 1 hl 당 7,79 ZL
와 인	완제품 158,00 ZL / 1 hl 당
담 배*	1,000개당 206,76 ZL , 최대 가격의 31.41 %
승 용 차	2,000CC이상은 과세표준의 18.6%, 2,000CC미만은 과세표준의 3.1 % 적용

* 담배소비세는 2011, 2012,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각각 4%씩 인상

○ 신고 및 납부

- 소비세의 과세기간은 1개월이며, 소비세 신고는 당월분 실적에 대하여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동시에 관세청 계좌에 입금되어야 함
- EU 특별소비세법과 일치하는 과세대상은 매일 선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익 월 25일 신고 시 선납 분을 반영하여 신고서를 제출
- 수입재화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관세의 납부절차와 같음
- 소비세는 관세청에서 수집



□ 게임세 (Gaming Tax)

- 과세대상
 - 허가받은 gambling, betting업 및 독점적 gamble과 복권판매업 등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및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다름
 - 복권의 경우 총수익이 과세 표준이 되며 세율은 15%임
 - Betting의 경우 Betting총액이 과세표준이며 세율은 10%임
 - 카지노 Gamble의 경우 최대 45%의 세율이 부과
- 신고 및 납부
 - 매월 실적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함

3. 지방세 : 직접세

□ 부동산세 (Property Tax)

- 과세대상
 - 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의 소유 및 사업용 고정설비의 소유임
 - 폴란드 부동산세는 기업 보유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및 활동도 분석 등이 수반되어 납부세액이 결정
 - * 보유자산의 공정가액 대비 법정비율에 의한 단순산출 구조인 한국의 재산세와 차이
 - 농업용지, 산림용지 및 농업 및 산림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건물 및 고정설비, 공공복지기관의 고유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 교육 목적으로 이용되는 학교건물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과세표준 및 세율
 - 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과세대상 물건 및 그 종류에 따라 다르며, 세율은 지방의회에서 결정되어 지역에 따라 감면 적용률이 상이하나 그 한계세율은 법률에 정해져 있음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과세표준

항 목	기 준	비 고
토 지	면 적	-
건 물	사용면적	-
고정설비	사용가치 (세무상 상각대상액)	상각완료자산의 경우 마지막 상각연도 사용가치

- 사용면적 및 사용가치를 산출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 기준 및 적용사례 등에 근거하여 기술적 방법을 통해 합법적 범위내에서 일부조정 가능

- 한계세율 (2013년 기준)

항 목	한계세율
사업용 토지	0.88 PLN/m ²
거주용 건물	0.73 PLN/m ²
사업용 건물	22.82 PLN/m ²
고정설비	자산가치의 2% (감가상각 고려)

○ 신고 및 납부

-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격 없는 파트너십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
 - 부동산 취득 등으로 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납부는 신고가 수반되어야 하는 1월의 경우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이 후로는 매월 15일 납부하여야 함
- 개인의 경우 부동산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부동산세 납부의무가 발생·변경·소멸되었을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만 하면 됨
 - 납부세액은 세무서에서 1년에 4차례에 걸쳐 세무서에서 계산하여 고지
- 부동산세는 납부 후에 수정신고 등을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절차를 통해 과다납부액이 증명되는 경우 환급도 가능



□ 차량세 (Vehicle Tax)

○ 과세대상

- 개인, 법인, 법인유사단체가 소유하는 3.5톤 이상의 트럭과 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각 자동차의 종류와 중량에 따라 다름

○ 신고 및 납부

- 과세기간은 역년으로 1년이지만 신규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다음달부터 12월까지가 과세기간이 됨
- 당해연도의 운송세에 대하여 2월 15일까지 차량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자동차를 신규 취득 시 취득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 차량세는 2월 15일과 9월 15일 두 차례로 나누어 납부

□ 농지세 (Agricultural Tax)

○ 과세대상

-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 및 영구사용권임
- 저질농지 및 나무로 우거진 농지, 대학의 부속농지는 농지세가 면제되며, 지방의회가 농지세의 면세를 결정할 수도 있음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은 농지가 농장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름
- 세율은 농지의 수확량과 비례하여 정해지며, 농장에 속해 있는 농지에는 저율의 세금이 부과
- 세액공제에는 투자세액공제, 척박한 농지(산악지역, 자연재해)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음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신고 및 납부

- 농지세의 과세기간은 1년이나, 납세의무는 매달 소유상태에 따라서 결정
-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파트너십 등은 당해연도의 농지세에 대하여 1월 15일까지 신고서 제출
 - 이 기한 이후에 농지의 취득 등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은 농지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납세의무가 발생·변경·소멸되었을 경우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됨
 -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개인납세자에게 1년에 4번 농지세 고지서 발부
- 농지세는 3월 15일, 5월 15일, 9월 15일, 11월 15일 4번 납부

□ 산림세 (Forestry Tax)

○ 과세대상

- 산림세의 과세대상은 산림의 소유 및 영구 사용권
- 40년 이상 된 산림, 유적으로 지정된 산림, 학교 또는 대학의 부속산림은 면세되며, 지방의회에서 면세대상 산림 지정 가능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은 헥타르를 기준으로 하며, 세율은 1헥타르에 얼마만큼의 나무가 있는지에 따라 정해짐
-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지역은 50%의 세율경감이 이루어지며, 지방의회에서 경감률 지정 가능

○ 신고 및 납부

-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농지세와 같음



◆ (참고) 지방에서 부과하는 요금(charge)

- 개 소유에 대한 요금 (Dog charge) : 개 소유자가 내는 요금으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의 반려견 등은 과세하지 않으며, 수입은 크지 않음. 지역에 따라 선택 사항
- 휴양지 요금 (Health resort charge) : 법령으로 지정된 리조트 및 목욕시설에서 하루이상 머무를 때, 개인들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하루 단위로 부과됨
- 지역요금 (Local charge) : 지역요금은 선호 하는 기후나 풍경 있는 도시 및 법령으로 지정된 리조트 및 목욕시설에서 하루이상 머무를 때 개인들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하루 단위로 부과됨

4. 관세 (Customs Duty)

□ 개요

- EU의 주요 관세 제도 : 폴란드는 기본적으로 EU 관세제도 따름
 - 폴란드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
 -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 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 부과
 -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 간 특혜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수입 관세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 부여
 - 관세는 EU가 정해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당국이 징수
 -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
 -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나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증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 적용
-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의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

- 일년에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하고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
- 관세 부과 가액
 -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
 -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있음
- 수입 시 납부하는 세액
 - 수입 시 납부하는 세금에는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Sale Tax Luxury Goods), 소비세(Excise Tax)등이 있음
- 여러 가지 적용 규정
- 세관신고
 - EU에 수입 상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려는 사람은 상품 수입 시 수입국 세관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함



- 세관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법과 신고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작성을 통해 문서로 하는 방법이 있음
- EU 회원국 입국 시 1만 유로 이상을 소지한 여행자는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함
 - 세관 검사에서 개인 여행자가 소지한 위조상품이 적발될 경우 해당 상품의 압수 및 벌금형에 해당
- ※ 세관신고 사이트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procedural_aspects/general/sad/index_en.htm
-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 (EORI :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 EORI 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customer Code 번호이며, 2009년 7월 1일부터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번호인 EORI번호 사용
 -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 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 등록번호를 받을 필요 없음
- 원산지 규정
 - 폴란드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은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상품의 원산지는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됨
 - EU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해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 적용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상품 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 적용
 -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되나, 필요에 따라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 적용가능
 -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 관세 환급이나 수입규제 적용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품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분류 번호를 획득할 필요가 있음
- EU는 EU 수출입업자에게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번호를 제공하기 위해 BTI(Binding Tariff Information) 시스템 마련
 - EU 수출입업자가 EU회원국 세관당국에 BTI 상품 분류번호를 요청하면, 신청국 세관에서 발급한 상품번호는 EU전체에서 유효
 - 유효기간은 6년이나 EU가 규정을 통해 해당상품의 관세번호를 변경하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기존의 상품번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BTI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U 집행위 관세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 EU 집행위 관세 사이트

[http : //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ects/classification_goods/index](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ects/classification_goods/index)

□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일반특혜 관세제도의 의의

-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도국 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 혜택 제공

* 한국은 EU한테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음

○ GSP제도는 세 가지로 구성

- 표준 GSP제도는 176개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제도



- GSP+제도는 표준 GSP제도에 추가해 노동권 보호를 포함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
 - 최빈국에 대한 GSP제도는 표준 GSP제도에 추가해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
-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개정
- 현행 EU의 GSP제도는 2009년부터 2011년간 3년 동안 적용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신규 수정안이 늦기 마련돼(2012년 5월에 채택) EU 당국은 현행 제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 신규 수정안 2012년 5월 채택,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정안에서 경제적으로 더 이상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벨라루스, 러시아 등의 국가를 수혜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대신 여타 최빈국에 대한 혜택을 강화
 - 개정안에서는 일반특혜 관세제도를 “open-ended”제도로 변경하여 기간에 상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수혜조건 조정 가능

□ 한 - 폴란드 관세

- 한 - 폴란드 관세는 한-EU관세 규정을 따름
- 한국과 EU는 FTA 발효 후 5년 내 한국이 10,538개 항목의 관세를, EU가 9,803개 항목의 관세를 100% 철폐 합의
 - 품목 기준으로 EU는 모든 품목의 관세를 5년 내 철폐하며 한국은 의료용 전자기기, 건설 중장비, 순모직물, 합판 등의 품목에 대해 7년간의 철폐 구간을 두기로 합의
 - 우리 수출업체가 EU에 수출할 때 한-EU FTA 협정에 의한 관세특혜를 받으려면 건당 6000유로 초과 시 우리 관련 당국(관세청 당국)한테 인증 수출업자로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4.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Insurance)

□ 개요

- 폴란드의 사회보장보험은 연금, 장애, 사고(산업재해) 및 질병 보험으로 구성
 - 사회보장세는 의무사항이며, 월 단위로 기업 소재지 사회보장기관 (ZUS)사무소에 지불해야 함
 - 사회 보장세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모두 납부하며, 고용주의 기여분은 종업원 급여의 19.48 ~ 22.67%에 달하며, 근로자의 기여분은 급여의 13.71%임

<사회보장세(ZUS) 체계 및 고용주와 종업원의 기여분>

구 분	기여분(급여대비)	기여금 분할	
		Employer	Employee
연금(Pension)	19.52%	9.76%	9.76%
장애(Disability)	8%	6.5%	1.5%
사 고 (Accident)	해당 산업의 위험도에 따라 0.67%에서 3.33%까지 차등	1.67% (종업원 9인이하) 0.67%~3.33% (종업원 9인초과, 업종에 따라 상이)	-
질병(Sickness)	2.45%	-	2.45%
추가 기여금			
노동기금	2.45%	2.45%	-
고용지급보증기금	0.10%	0.10%	-

* 의료보험은 근로자가 추가로 9% 부담



- 변경된 사회보장세 체계는 2013.1.1일부터 적용되고 있음
 - 남성 1948.1.1., 여성 1953.1.1. 이전에 출생한 근로자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구제도를 따르게 됨
 - 구제도 하에서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 남성의 경우 폴란드에서 최소 25년 근무하고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여성은 최소 20년 근무, 60세 이상이 되어야 했음
 -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연금법(2012.5.11 제정)에는 남녀근로자 정년퇴직 연령을 67세로 동일하게 상향 조정
 - 단, 남성의 경우 2013년부터 연간 3개월씩 정년을 연장하여 2020년까지 67세로 단계적 연장이 실시되며, 여성의 경우 2040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
- 의료보험에 대한 기여금
 - 의료보험에 대한 기여금은 급여에서 상기 사회보장세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의 9%이며, 근로자에게만 적용
 - 2001.9.27일부로 폴란드 내 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의무화
- 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
 - 한-폴란드 사회보장 협정 발효
 - 한-폴란드 사회 보장 협정 발효 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존재
 - 한국에서 폴란드로 단기 파견된 근로자도 폴란드 사회보장세 납부의무
 - 한국인 직원이 폴란드에서 연금을 납부할 시 대부분의 폴란드의 최소 가입기간 25년을 다 채우지 못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함
 - 2010.3.1.일부로 발효된 한-폴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양국 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 및 가입기간 합산 가능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사회보장협정 핵심 내용

- 근로자와 경제적으로 보다 긴밀한 관계에 있는 어느 한 쪽 당사국만의 법령이 적용되어, 기업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 중복 적용 및 기여금의 이중 납부 부담을 경감
-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에 적용

대한민국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폴란드	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 한국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5년 동안 한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게 되어 폴란드에서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되며, 추후 이 기간에 대한 연장 가능
- 사회보장세 가입 기간에 대한 합산이 가능해져, 어느 한쪽 계약당사국에서 급여수급자격 등을 결정할 때 다른 쪽 계약당사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만약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서도 연금 대상자가 급여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양국이 공통으로 합산협정을 체결한 제3국 가입기간까지도 고려 가능

○ 폴란드에서 사회보험료 면제 요건

-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 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에 방문, 우편, 혹은 팩스로 접수한 뒤, ‘한국법률 적용증명서’의 발급 신청해야 함
- 적용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무 인사명령서 등 파견 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 증명발급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본사,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 사식자료)에서 얻을 수 있음



- 이 증명서가 발급되면 파견 근무지의 사용자는 이 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기간 동안 근로자의 급여에서 폴란드의 사회보장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폴란드 실무기관의 요청 혹은 보험료 부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적용증명서를 제시하면 됨
- 차후 연금 급여를 신청 시 우리나라 체류자는 국민연금공단에 폴란드의 연금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폴란드 체류자는 폴란드의 실무기관에 이를 청구하면 심사 후 매월 말일에 지급되게 됨

5. 지적재산권

□ 개요

○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 폴란드의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과 산업재산권법(the Industrial Property Act)에 의해 규제됨
-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등
-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그대로 적용
- EU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
 - EU집행위 : 유럽 공동체 상표와 디자인 등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
 - 각 회원국 정부 : 여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 가능
 - 유럽특허청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

○ 지적재산권 관련 현황

- 폴란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 액션 플랜을 이행하여 미국무역대표부가 발행한 2010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감시 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
- 최근 폴란드 정부의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하여 지적 재산거래에 관련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종류

○ 저작권

- EU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작자에 대한 재 판매권도 보호되어 판매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격에 대한 재 판매권 부과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재 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영화 및 시청각 작품은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
- 음반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
-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년간 보호

○ 특허권

- 폴란드에서 특허는 초기 단계를 포함하여 새로운 발명과 산업의 응용을 포함하며, 그 특허의 보호는 특허청의 출원 시점에 시작됨
- 폴란드 내 특허권과 관련한 사항은 폴란드 특허청(www.uprp.pl)에서 관할하고 있음
- 특허권은 최대 20년까지 보호됨
-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 ① 폴란드를 포함하여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제도
 - ② 유럽 특허청을 통한 특허제도
 - 출원자가 지정하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 취득 가능하나, 28개 EU 회원국 전역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유럽 특허청(EPO : European Patent Office)은 유럽 특허 협정(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의해 1973년에 창설되었으며 38개



유럽 회원국(28개 EU 회원국과 11개 여타 유럽 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 기구

-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독일어이며 출원자는 이 3개 공식 언어 중 1개 언어를 선택하여 출원
- 유럽 특허청이 출원서류 심사를 거쳐 특허를 부여하면 특허소유자는 출원 시 선택한 언어 외 나머지 두 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EPO에 제출해야 함
- 유럽특허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아 관보에 공고되면 특허 소유자는 동 기구에 유럽특허 등록대장에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데, 단일효과가 등록되면 해당 특허권은 각 회원국의 추가 인정 요구 없이 전 EU 25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

③ EU 공동 단일 특허제도

- 2012년 12월 11일, 단일 특허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40년만에 유럽의회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한 채 EU공동 특허제도 승인
- 2014년부터 25개국의 특허제도는 통합되며, 통합된 특허제도를 통해 분쟁해결 절차 간소화 및 특허출원 비용 감소 기대
- 1회 출원으로 25개 회원국에서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EU 공동 특허를 받은 후에 각국에서 인정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
- EU 공동 단일특허 출원방법은 현행 유럽특허 출원방법과 동일
- 유럽특허청은 단일특허효과를 등록하고 특허권이 소멸될 때까지 갱신비용 지불 등 특허권 유지와 관련된 행정을 취급함
- 특허 침해 시 한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 제소제도(unified litigation system)도 도입

○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은 구성과 형태와 관련한 새롭고 유용한 무형자산을 의미하며, 특허권과 비교하여 덜 엄격한 등록 요건을 가지고 있음
- 특허청에 출원시점에 그 보호가 시작되며, 최대 보호기간은 10년임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상표권

- 단어, 로고, 사운드, 디자인, 이미지, 색깔, 홀로그램 등이 모두 상표권에 포함되며, 상표권 보호기간은 10년이며 연장 가능함
- 유럽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
 - ① 각 개별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 별 상표권
 - ② 유럽 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상표제도
 -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
 -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 가능
 -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
 - 공동체상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
 -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 하나를 제2언어로 지정해야 함

○ 디자인

- 산업디자인은 새로운 특허 선, 윤곽, 모양, 색상, 제품 구조와 관련한 무형자산이며, 특허청에 등록한 이후 최대 25년 보호 가능함. 디자인 등록기간은 2~3개월 정도임
- EU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공동체 상표청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보호기간은 등록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5년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됨

□ 지적재산권 취득 소요 비용

- 폴란드에서 지적재산권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등록비, 법적 비용이 있음 (번역비는 필요시에만 부담하면 됨)
 - 등록비용은 등록하고자 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따라 다름
 - 법적비용은 각 국의 지적재산권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개입되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남
 - 보통 폴란드 지적재산권 법적 변호사는 서유럽에 비하여 50~60%의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 폴란드 지적재산권에만 등재하는 경우에 해당함
 - 만약 폴란드 외 국가에서도 지적재산권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면, 폴란드 변호사 외에 외국 변호사도 반드시 개입하여 진행하여야 함

8 세무 행정

□ 조세 판정 제도 (Tax Rulings)

- 조세판정제도의 의의
 - 과세당국에 특정한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쟁점상황에 대한 조세법령 해석의 기준 및 적용 제반 사항을 알려주는 제도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일반적인 판정 (General rul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당국이 세법의 모든 납세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
개별적인 판정 (Individual rul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가 실제 사실 또는 예정된 사건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을 담아 세법의 적용에 대한 판정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 · 전적으로 가상의(hypothetical) 상황에 대한 신청은 거부됨

○ 제도의 효력

- 조세 판정의 결과는 과세당국을 구속시키나 납세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음
 -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조세판정에 따른 Ruling letter에 따라 과세환경을 결정한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납세자는 TAX ruling 판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됨
- 판정은 과세당국이 기존판정을 바꾸기 전까지 유효함
 - 특정한 경우 변경된 판정은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부터 효력이 발생하기도 함
- 진출기업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예정인 거래에서 조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제거 할 수 있을 것임

□ 폴란드의 세무조사

○ 세무조사 기관

-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폴란드 재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는 재무부 내 조세관리과(Tax Administration Dept.)와 재정관리과(Fiscal Control Dept.)에서 담당

조세관리과	지방국세청 및 지방세무서의 상위기관으로, 일반세무조사를 담당하며 세금신고, 서류확인, 납부확인 등의 업무 총괄
재정관리과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며, 당해의 세무조사 방향수립, 기타의 재정수입 관리 업무 등을 총괄



- 일반세무조사의 경우 지방 국세청 산하 지방세무서 조사관이 현장 세무조사를 수행하며, 특별세무조사의 경우 지방재정관리소 조사관이 현장 조사 수행
 - 지방국세청 및 지방재정관리소는 각 주별로 1개씩 소재하고 있으며, 지방세무서는 주요 시군별로 전국에 362개가 소재하며, 이 중 20개가 특별세무서 지정
 - 지방세무서 중 특별세무서로 지정된 20개는 연 매출 5백만 유로 이상의 폴란드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 업무 담당
 - 우리 투자기업은 보통 특별세무서로 지정된 세무서와 조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세무조사 시 동 특별세무서 조사관이 조사 수행
- 세무조사 통지 및 조사기간
- 조사 개시일 7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통지 없이 당일 방문하는 경우도 있음
 - 세무조사 기간은 최장 8주로 규정되어 있으나, 연장가능 요건이 다양하여 실무적으로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진행되며, 특수한 경우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 세무조사 기간은 사전 통지 없이 회사 방문 후에 결정 가능
- 세무조사 규모 및 빈도
- 통상 2명이 조사관이 회사를 방문하여 세무조사를 수행하며, 사안이 중요한 경우 3명 정도가 파견
 - 세무조사에 유효한 회사 데이터 축적 기간을 3년 정도라 판단하여, 일반적으로 설립 3년 이후에 세무조사 시작
 - 최초 세무조사 후 매년 세무조사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며 이례적으로 2년에 한번정도 조사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세무조사 동향

- 폴란드 재정관리과를 통해 매년 주요 세무조사 대상 항목에 대한 지침을 일선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우리 투자진출기업은 당해의 집중 세무조사 분야 외에도, 경제특구에 위치한 기업의 관세조사, 비경제 특구 기업의 법인세 조사에 잘 대비해야 할 것임
 - ☞ 이전가격관련 세무조사 동향은 (p.73) 참고

○ 세무조사 종료

- 세무조사관이 적발된 사항을 회사에 알리는 절차인 결정고지에는 추가 납세금액이 안내되지 않으며, 지적사항만 통보됨
- 이후 회사 측의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추가 납세 금액이 안내되는 확정통보가 이루어지며 이때를 세무조사의 종료로 봄

□ 납세자의 이의신청과 불복청구

○ 이의 신청

- 납세자는 과세 또는 조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고지 이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으로 확정
- 회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는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완료 (연장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당국에 있음

○ 불복청구

- 회사 측 이의제기를 관할 세무서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결정 고지된 세금은 소송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납부



- 과세당국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행정법원 (Regional Administrative Court)에 소송 제기
- 지방행정법원의 결정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에 최고행정법원 (Supreme Administrative Court)에 소송 제기

□ 가산세

○ 가산세 및 패널티

- 폴란드 가산세는 미납부 세금에 대한 가산이자 연 10% 이며, 50그로시 (groszy, 1/100 즐로티)미만은 버림, 50그로시 이상은 반올림
 - * 기존 10.5%에서 2013년 7월 4일 이후 적용 분부터 10%로 인하
- 납세자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개인 패널티 부과 가능

○ 법인 세금납부 오류에 대한 개인 패널티

- 세금납부 오류가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기본 가산세에 추가하여 업무담당자에게 개인 패널티(Fiscal Penalty)부과
- 개인 패널티의 확정은 법원에서 결정하며, 해당자의 2년간 급여총액을 한도로 함(과세당국은 개인의 위반이 의도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음)
- 과소납부나 과다환급의 결과로 과세가 일어날 경우, 책임 있는 개인은 최대 약 12.6백만 PLN의 벌과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가 함께 처벌됨
 - 실질적으로 금고형은 거의 적용되지 않고, 벌과금은 평균 수만 PLN
- 어떠한 의도 없이 단순히 회사경영 규정에 대해 감독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도 회계상의 부당한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우며 이 경우 벌과금은 최대 26,340PLN



III

폴란드의 투자



1. 외국인의 폴란드 투자
2. 폴란드에서 사업 투자 절차
3. 기타 사업관련 정보



1 외국인 투자

□ 외국인 투자정책 개요

○ 폴란드의 EU 가입 이전

- 사회주의 체제 붕괴직전인 1988년 경제활동법(Act on Economic)을 제정하여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기반 마련하였으며, 이를 외국기업의 경영활동에 포괄적 적용
- 1991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별도 관리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관한 법률(Law on Companies with Foreign Participation)을 제정함
 - 1996년 개정되면서 외국인 투자환경을 크게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외국인 투자는 제한 받아옴
- 2002년 투자보조금법 (Law on Financial Support for Investment)을 제정하여 신규투자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체계 마련, 폴란드 경제부와 투자자간 개별협약을 통해 내외국인이 모두 보조금 받을 수 있게 됨

○ 폴란드의 EU가입 이후

- 2004년 EU가입에 따라 경제활동법은 각종 EU 규정에 맞추어 정비된 경제활동자유법(Economic Freedom Act)로 대체
 - 기업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이 확립
 - 정부의 사업허가가 요구되는 영역이 종전 30여개에서 6개 분야로 대폭 축소
- EU 및 EETA 지역 외국인은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폴란드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여타지역 외국인은 4가지 형태로 현지법인 및 지점을 설립·운영 가능함



○ 외국인의 투자동향

- 1989년 폴란드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90년대 초반부터 서유럽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2004년 EU가입으로 급증
-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누적액은 2011년 1975억 3천8백만불을 기록, 중동부 유럽 최대의 외국인 투자 유치국으로 성장
-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로 유럽연합 내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유럽 경제회복과 대규모 EU기금의 유입으로 향후 꾸준한 외국인 투자 예상
- 2013년 기준 폴란드의 시간당 평균 인건비는 7.6유로로 유럽 28개 국가중 23위이며, 25세~34세 인구 중 학사 이상 학력가지고 있는 인구 비율이 약 41%로 EU평균인 35%를 상회하여 노동집약생산 분야에 투자 매력도가 높음

○ 한국기업 투자동향

- 2005년부터 LG전자 등의 투자가 시작되고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며 투자가 급증하여, 2006년 한해 동안에만 투자액이 2억 2000만달러를 기록하여 폴란드의 주요 외국인 투자국이 됨
- 2008년부터 폴란드 남부지방으로 자동차 분야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2010년 삼성전자가 현지1위 가전회사인 아미카 인수
-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투자 중 약 90%가량은 그린필드 투자로, 총 12억불 가량이 제조업에 투자
 - 그린필드 투자 : 국외자본이 투자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
-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소, SOC, 조달, 방산분야 등에 진출 증가



□ 폴란드 투자환경

○ 폴란드 투자의 이점

- 국토·인구 및 경제 규모 면에서 중동부 유럽 최대로, 건실한 경제성장과 경쟁력 있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내수시장 보유
- EU국가들 중 가장 많은 노동 인구층을 가진 나라로,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이 EU평균에 비해 높으며 양질의 노동력에 비해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서유럽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임
- 생산기지들이 위치한 중동부 유럽국가와 주요 시장인 서부 유럽국가를 잇는 유리한 입지적 조건 보유
- 각종 세제 감면 및 특별 경제구역, 현금 지원금 제도의 운영 등을 통한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 비효율적인 신규 사업 지원 행정절차, 더딘 건설인허가, 복잡한 세금 납부 시스템이 여전히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됨
- 폴란드 서남부 외국인 투자집중 지역을 제외하면, 폴란드의 인프라는 아직까지 열악한 편으로 특히 낙후된 도로 사정으로 교통망 개선이 시급
- 폴란드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독일과 실질임금이 4배이상 차이 나는 등 저임금을 기반으로 각광받는 투자처이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임금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

□ 주요 투자법 내용

○ 투자법 개요

- 폴란드 내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규정하는 기본 법령은 경제활동자유법 (Economic Freedom Act, 2004.7.2.)으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는 없음



- ‘외국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 등이며 폴란드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경제활동자유법의 내국인 대우 원칙 하에 폴란드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 영위
- EU나 EEFA 지역의 투자자는 폴란드 시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외 외국인은 제한된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업 운영 가능

○ 투자 장려분야

- 폴란드 정부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산업 분야에 투자 시 투자자의 총 규모나 고용 규모에 따라 현금지원이 이루어짐

▷ 자동차 ▷ 항공 ▷ 기업서비스	▷ 전기 ▷ 생명공학 ▷ 연구 개발
--------------------------	---------------------------

○ 투자제한분야

- 기간산업이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허가나 인가를 취득해야 함

이권 (Concession)	광물 탐사 및 채굴, 폭약·무기제조·기타 군용 제품 및 기술, 연료 및 에너지 제조·가공·유통거래, 항공 수송,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등
등록 (register)	화장품 판매, 사설탐정 등 통제되는 활동
허가 (permit)	주류도매, 주류 및 담배제조, 유독성·방사성 물질의 제조 및 판매, 공항관리,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약국 또는 의약품 창고 운영, 특정 우편 및 택배서비스, 카지노의 운영, 은행·보험회사 또는 중개회사 운영, 통신서비스, 도로 수송, 상수 공급 및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투자펀드 또는 연금펀드 설립, 비료 및 살충제 거래, 원양어업, 부동산 중개 서비스, 경제특별구역 (SEZ)에서의 사업활동 등
라이선스 (license)	특정 물품 수입 및 판매(크레용, 물감 등 일부 아동용품), 식수와 접촉하는 물품, 동물, 육류, 작물 등, 공공 전화 네트워크,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공공 통신 네트워크 이용 등

(자료원 : 폴란드 투자 유치청, "How to do business")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폴란드의 정부의 투자 지원

○ 투자 인센티브

- 경제특구지역(Special Economic Zones)의 소득세 면제
-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보조금
- 재산세 공제
- EU 구조기금 내 보조금
- 신규고용 부대비용지원, 특수고용 보조금 지급, 사회보장세 보조금 지급

○ 지역지원 (Regional aid)

- EU 규제하에서 지역지원 형태로 알려진 정부지원은 유형 및 무형자산 구매를 포함한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함
- 자산대체관계 관련 투자 프로젝트는 대상이 아니며, 지역지원의 규모는 투자비용에 따라 달리 계산됨
- 폴란드 내에는 총 16개의 주가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센티브는 각 주별로 상이하며 총비용 대비 30~50%까지 지원될 수 있음

○ 정부 지원 요건

- 정부의 지원정책은 관련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투자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투자 개시 전에 해당 정부에 신청서 제출
- 투자자는 정부 지원이 투자가치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며, 투자진행을 추진시킬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함
- 정부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최소 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하는데 대기업은 투자 프로젝트가 완료된 시점부터 사업을 최소 5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소 3년을 유지

○ 기업규모 명시

- 지역지원의 조건들은 기업 범주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모든 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의 4개 범주로 구분됨



기업범주	직원수	연 매출(백만유로)	연 재무상태표 (백만유로)
대 기업	250이상	50이상	43이상
중견기업	<250	≤50	≤43
중소기업	<50	≤10	≤10
소 기업	<10	≤ 2	≤ 2

2 폴란드에서의 사업 투자 절차

□ 기업의 종류

○ 투자기업 유형 및 투자형태 개요

- EU나 EETA회원국이 아닌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회사, 유한책임 회사, 유한주식합작회사, 유한합작회사의 형태로만 기업 활동 가능
- 외국인 투자자는 지사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음

○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S.A.)

- 우리나라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으며 지분은 유가증권으로 유통될 수 있음.
 - 폴란드 어로 기업명 뒤에 S.A.라는 표식이 붙음
 - 최소자본금 10만PLN, 법인 등기 시 신고 자본금의 최소 25%가 출자 되어야 하며, 주식 최소 액면가는 0.01PLN임
- 지분이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만큼 정부 및 관계 당국의 감시 수준이 높으며, 관련 의무조항이 많아 소형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비 선호
- 은행업, 보험업 등의 특수법인 설립과 바르샤바 주식거래소에 상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형태로 설립되어야 함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대표되며 반드시 감사 선임
- 우리나라 투자기업 중 이 형태로 설립한 예는 없음
-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Sp.zo.o)
 - 우리나라 유한회사와 같은 형태의 법인격
 - 폴란드 어로 기업 명 뒤에 Sp.ao.o.라는 표식이 붙음
 - 최소자본금은 5,000PLN이며 주식의 최소 액면가는 50PLN
 - 경제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고 주주 구성이 간단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 설립 형태
 -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 설립비용과 신속한 법인등기부 등록과정
 - 유한책임 및 적은 최소주식출자자본과 회사 정관의 집행으로 즉시 사업 활동 수행 가능
 - 우리나라 대부분 투자기업의 진출 형태
-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 우리나라 합자회사에 해당하는 회사로 법인격은 없으며, 회사명의로 경제활동 가능
 -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정 없고, 공증 받은 정관의 중앙등기법원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어 소형 비즈니스 운영에 적합
 - 최소 2명 이상의 Partner 가 필요하며,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
- 합자주식회사 (Limited Joint Stock Partnership)
 - 우리나라 합자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형태로 법인격은 없으며, 회사명의로 사업활동이 가능
 - 최소 자본금 5만PLN이며 공증받은 정관의 중앙등기법원 등록을 통해 설립 가능하며 비교적 규모가 있는 가족회사 운영에 적합
 - 최소 2명 이상의 Partner,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



- 지사 (Branch Office)
 - 지사는 법인격을 갖지 못하며, 본사영업범위 이내의 상거래 활동만 가능하고 국가법원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함
 - 해당사업장이,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점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발생
-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폴란드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단지 본사와의 연락, 광고 및 프로모션 등으로 활동이 제한
 - 폴란드 경제부가 관리하는 대표사무소 등기부에 등록

□ 진출 형태별 설립절차

- 법인의 설립 절차
 - 폴란드에서 법인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회사의 법적형태 결정 및 한국에서의 서류 준비 : 상기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주한 폴란드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폴란드에서 영어서류를 다시 폴란드어로 번역 후 공증 받아야 함

- | | |
|------------|-----------|
| ① 대표이사 위임장 | ② 이사회 결의서 |
| ③ 주주명부 | ④ 법인등기부등본 |

- 정관의 작성 : 정관의 내용에는 회사명, 소재지, 사업내용, 초기 자본금의 액수, 주식의 수량 및 액면가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여기에 더해 등록 전 자본금 납부액,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수도 포함되어야 함
- 자본금의 납입 :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 자본금은 전액 납입하여야 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자본금은 최소 25% 이상을 납입
- 국가법원등기부 (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 :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이나 주로 사업이 영위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등기를 해야 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음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신청서, 정관, 자본금 납부내역서, 주주명부, 이사회 구성원의 내역,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 견본, 임대차계약서	신청서, 정관, 회사설립 및 주식인수 관련 공증된 결의서, 자본금 납부내역서, 회사 경영진 명단 및 인적사항,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견본

- Regon번호(Statistical Identification Nuber)신청 : 중앙통제국(GUS)에 신청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장 관할 소재지 세무서에 납세자번호(NIP) 신청
- 지사의 설립절차
 - 한국에서의 서류준비 : 상기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주한 폴란드 대사관의 확인을 받고, 폴란드에서는 영어서류를 다시 폴란드어로 번역 후 공증 받아야 함



- ① 사업자등록증
- ② 정관
- ③ 폴란드에 지사를 설립할 것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 국가법원등기부 등록 :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사항들을 첨부

- ① 지사에서 외국기업을 대표하도록 위임 받은 사람의 폴란드 내 이름 및 주소
- ② 외국기업을 대표하도록 위임 받은 사람의 공증된 서명
- ③ 정관사본과 공증된 폴란드어 번역본

- 지사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을 한 후 중앙 통계국에 REGON 번호를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에 납세자번호(NIP)를 신청

- 지사는 폴란드 회계법의 규정과 합치하도록 폴란드어로 별도의 장부를 유지해야 하고, 실질적 또는 법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이를 폴란드 경제부에 통보

- 회계감사의 의무는 없으나 장부기록은 유지하여야 함

○ 연락사무소의 설립 절차

- 폴란드 경제부가 관리하는 대표 사무소 등기부에 등록

- 대표사무소 등록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① 지사에서 외국기업을 대표하도록 위임 받은 사람의 폴란드 내 이름 및 주소
- ② 외국기업을 대표하도록 위임 받은 사람의 공증된 서명
- ③ 정관사본과 공증된 폴란드어 번역본

- 신청서는 폴란드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①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모기업의 명칭, 등록사무소 및 법적지위
- ② 모기업의 회사형태, 자본금
- ③ 모기업의 사업목적
- ④ 대표사무소 책임자의 성명, 폴란드 내 주소



□ 투자법인 철수 및 정산

○ 지분양도

- 지분 양도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투자기업 철수 시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선호하고 있음
 - 매각차익에 관련 세금은 거래세와 소득세가 있음
 - 거래세(TCLT)는 지분양수인에게 징수되는 세금으로 양도된 지분의 거래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되며 양도인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없음
 - 양도소득세(PIT 또는 CIT)의 경우 폴란드 내에 외국인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 최근 이에 대해 과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업 지분 매각시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유
- * 한-폴 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비롯하여 여러 관련 조항들은 외국인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

○ 청산

- 사업여건상 청산이 유리한 경우, 정관상 유한의 존속기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한 경우 등에 있어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6개월~1년 정도 시간이 소요

◆ 폴란드 투자기업 청산 절차

청산결의서 주주총회 및 청산대리인 선임 → 기업청산 공고 및 채권자 소환 → 자산매각 → 채무상환 → 잔여재산 분배 → 청산 보고서 제출

- 등기법원에서 법인 말소 이전까지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기업 청산의 경우 자산매각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 한-폴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한국인(법인포함)에게 분배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취득 원가와 차액에 10%의 소득세만 부과, 법인 주주의 경우 청산 대상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 시 잔여재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5%로 감세



3 기타 사업관련 정보

□ 계약 및 고용

○ 채용 및 고용계약

- 폴란드에서 구인은 인터넷 취업 알선 사이트의 이용, 주요 일간지에 채용 공고, 전문 헤드헌팅 업체를 통하는 방법 등이 사용 됨
 - 인터넷 취업알선 업체를 통하는 것이 구인 광고의 노출효과와 다양한 인력 정보 획득에 유리하여 가장 추천
- 고용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 조건이 적힌 고용계약서를 근무 시작일까지는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하고 불이행시 벌금이 부여
 - 고용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업무의 종류, 근무지, 보수와 그 상세 내용, 근무 형태, 근무 시간 및 요일, 근무 시작일
- 계약기간에 따라 임시수습기간, 기간제 계약, 프로젝트 계약, 정규직 4가지 종류의 채용형태가 있으며 사회보장세, 소득세 납부 및 휴가 등이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보장됨
- 기간제 채용이라도 같은 근로자와 두 번 이상 계약을 연장하며 그 사이 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 정규직 채용으로 간주
-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급여 등 고용계약 내용 중 어떤 것이라도 변경 가능하며, 고용조건 변경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유효 함

○ 법정 근로기간

- 근로자의 4개월간 평균 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시 40시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무시간은 12시간 초과 불가
- 기준 근로 시간인 40시간 초과 근무는 불가피한 업무의 지속성이 필요한 경우만 가능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초과 근무 시간은 주당 총 8시간, 1년간 총 150시간 초과할 수 없고, 임신 중이거나 4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시에만 야간 근무나 초과 근무 가능
- 초과근무 시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로 대체하여야 함
 - 근무일 야간,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급여의 200%
 - 그 외 추가 근무 시 급여의 150%

○ 휴가

- 모든 근로자는 매년 유급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법정 보장 최소 연차 휴가 일수는 10년 미만 근무 시 20일, 10년 이상 근무 시 26일
 - 근무 경력에는 교육기간인 고등학교 인문과정 4년, 학사학위 6년, 석사학위 8년 중 가장 긴 기간도 포함 됨
- 출산 휴가는 기존의 첫 아이 20주, 둘째부터 22주, 쌍둥이의 경우 30주에서 2014년부터 2주가 연장되었으며, 남성들에게도 2주간의 출산휴가 보장
 - 출산예정일 최소 2주전부터 출산휴가 시작 가능하며, 출산휴가 중 33일까지는 급여의 100% 지급
 -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무보수 육아휴직 가능
- 종업원의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연 33일까지 급여의 80% 지급
- 출퇴근 시 사고, 장기 기증으로 인한 휴가는 연 33일까지 급여의 100% 지급

○ 해고

- 고용 계약의 해지는 조용주가 근로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해고 통지에는 해고의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함
- 근로자는 사전통지 기간부터 해고일까지 정상적 급여를 받으며, 서면 통지 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구직을 위해 유급휴가 사용 가능



- 피고용자가 연차 휴가 또는 출산 휴가일 경우, 의사의 진단에 의해 병가중일 경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년 임기가 4년 이내인 경우, 임신 중인 경우에는 고용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서면 통지 불가

○ 노동조합

- 모든 근로자의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 권리가 헌법,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에서 보장
- 국영 기업의 경우 아직 노조의 위력이 상당하나 최근 높은 실업률 등을 원인으로 민간 기업에서 노조의 지위나 역할이 약화되고 있음
- 노사분규는 노사 양측의 협상, 조정절차, 사회적 중재 등으로 해결
 - * 중재위원회는 1명의 심판관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결정을 내리며, 중재가 시작될 때 노사 양측이 이에 따르기로 했으면, 의무적으로 결정 결과를 수용

□ 금융제도

○ 은행 및 금융기관

- 금융시장관리감독에 관한 법이 2006년 6월21일에 명문화되고, 2008년 1월1일부터 폴란드 금융감독원(PF주식회사)가 금융 감독을 수행
- 2008년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 감독 업무는 예금의 안정성 보장이라는 제한된 목적이었으나, PF주식회사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투명성 등 더 넓은 목표 지향
- 폴란드 국립은행은 통화시장의 안정성 위해 통화정책, 통화보유고 관리 등의 업무 수행
- 1990년 초반부터 상업은행간 합병 및 인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은행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앞으로 외국인 투자은행의 진출이 더 활발해짐에 따라 은행간 M&A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주식거래 및 자본시장 규정

- 1991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바르샤바 주식거래소(WSE)는 국고부가 설립한 주식회사임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폴란드 자본시장은 2005년 7월 29일부터 ① 공모, 조직화된 거래에 금융상품 소개를 관리하는 조항 ② 금융상품의 거래 ③ 자본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법률의 규제를 받음
- 폴란드 자금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투자회사 및 투자자금 운영회사는 PF 주식회사의 승인 받아야 함

○ 금융감독원

- 폴란드금융감독원(PF 주식회사)는 금융감독, 자본시장감독, 보험감독, 연금제도감독 및 전자화폐기간 감독을 맡음
- 금융, 연금, 보험 또는 자본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소송에서 PF 주식회사 회장이 민사소송법의 조항이 보장하는 검찰권 보유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외환관리

-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경제 시스템을 EU에 맞추고 있어 외환거래 시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통계 집계를 위해 외환거래 시 중앙은행에 단순한 등록절차 요구
- 2002년 10월 발효된 외환거래법(Foreign Exchange Law)이 현재 외환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
- EU회원국 및 OECD국가들과의 외환거래는 자유화되었으며, 한국도 OECD국가 일뿐만 아니라 1989년 폴란드와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외환거래와 관련한 제한이 거의 없음
- 폴란드와 투자협정을 맺은 국가로서 OECD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외환 거래에 다소 제한
- 폴란드의 외환보유액은 폴란드 중앙은행(NBP)에 따르면 2013년 8월말 기준 1,094억 달러



○ 환율 제도

- 2000년 4월 기존 환율체제인 관리변동환율제를 폐지하고 완전한 변동 환율제를 도입
- 외부충격에 영향을 받는 움직임은 보이나, 다른 신흥시장 통화가치 변동과 비교하면 가치변동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

○ 자금 조달 방법

- 한국기업 현지 법인은 현지 은행으로부터 시설 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음
- 인지도 높은 대기업의 경우 본사 보증으로 대출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1년정도 사업 운영 뒤 사업실적과 담보를 제시하여 대출받는 것이 일반적임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하는 해외투자 금융 활동도 가능

□ 지역별 투자여건

○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s : SEZs)

-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14개가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운영 기한이 연장
- 법인세 감면 등의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존재
 - 그단스크, 브로츠와프, 포즈난, 카토비체 지역에서는 적격 투자비용의 40%, 수도 바르샤바 지역은 30%, 그 외 지역은 50%까지 법인세 감면
 - 투자기업은 2년에 걸쳐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노동비용의 50%(지역별 지원율 차등)까지 조세 면제되며 신규일자리는 최소 5년간 유지
 - 이외에도 지방 정부로부터 부동산세 면제, 직업 훈련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
- * LG는 2007년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LG클러스터를 형성해 LG 전자, 디스플레이, 이노텍, 화학 등과 동양전자, 동서전자 등 협력업체가 각각 생산법인 설립해 현지 생산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투자기업이 SEZ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관리당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며 약 3개월이 소요

① SEZ 당국과 접촉 및 입주 신청 → ② 신청에 대한 심사 → ③ 추가 서류 준비 → ④ 투자 수용에 대한 최종결정(입찰) → ⑤ SEZ 내 사업활동 허가서 발급

- * 투자 규모가 상당할 경우 폴란드 정부와 협상을 통해 현재 지정되어 있는 SEZ에 입주하는 형식이 아닌 투자자가 원하는 곳으로 지정가능

○ 산업단지

-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폴란드 전역에 30개정도 있으며, 일부는 SEZ로도 지정
- 일반적인 투자 보조금 혜택과 부동산세 감면, 에너지·난방·용수 등 유틸리티의 저렴한 공급과 단지 내의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취한 운영당국의 노력 등이 매력임



IV

기타 폴란드 정보



1. 폴란드 국가 정보
2. 폴란드 생활 정보



1 폴란드 국가 정보

□ 폴란드의 정치

○ 폴란드의 행정부

-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며 임기 5년, 2회 연임이 가능하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헌법에 의해 국정 운영의 지속성 보장하는 역할
- 총리는 각료회의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하원 다수당과 협의하여 지명하며, 총리 지명자가 내각을 구성 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원이 이를 인준

○ 폴란드의 의회

- 임기 4년의 하원 460석과 상원 100석으로 구성, 하원은 국정 운영기관인 정부 구성에 직접 참여하지만 상원은 하원의 견제 기능 담당
- 하원은 중선거구 비례대표제를 통해 전국 41개 선거구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구 별로 4~10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전국적으로 5%이상 득표한 정당에 한하여 선거구별로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
- 상원은 중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 전국 40개 선거구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다수득표자 순으로 2~4명 선출

○ 폴란드의 사법부

- 대법원, 최고행정법원, 일반법원(주법원, 지방법원), 특별법원으로 구성
 - 대법원은 형사재판부, 민사재판부, 행정재판부, 노동사회보장재판부, 군사재판부
 - 특별법원은 헌법재판소와 탄핵 재판을 담당하는 국사재판소
- 법관은 국가사법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하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폴란드의 경제

○ 정부지출과 민간수요

- 내수 증대를 주도하며 폴란드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평가되던 정부소비가 2011년 출범한 신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지속적 감소
 - 폴란드 재정 적자폭 축소를 위한 노력으로 은퇴 연령 상향 조정을 통한 연금 개혁, 지방 정부의 지출 상한선 도입, 부가가치세 인상
 - 폴란드 헌법은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5%를 넘어설 경우 정부 지출에 여러 가지 제약을 둠
- 내수 성장의 한 축을 이루어온 민간소비는 2012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경색되었으나 2014년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음

○ 인플레이션과 금리 및 환율

-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2013년도 말부터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
- 2012년 11월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에 대비해 처음으로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하여 기준금리를 2013년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0%p를 인하, 2014년 3분기까지 정책금리 2.5%로 유지 전망
- EU 회원국임에도 자국통화(PLN)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 요인에 따라 환율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음

○ 고용

- 유럽연합 이후 하락하던 실업률은 2009년 세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여 현재 13% 안팎을 기록
 - 유럽연합 가입 직전 20%에 육박하던 실업률 보였으나, 가입 후 매년 감소하여 2008년에는 10%까지 실업률이 하락
 - 2009년 세계 경제 위기 기점으로 실업률 증가, 2012년 말에는 산업체와 건설업의 불황으로 남성 실업률이 여성보다 3배 빠르게 증가 양상



□ 폴란드의 산업

○ 전체 산업 구조 개관

- 전통적 농업국가 폴란드는 공산 정권하에 공업화에 주력하여 기계와 중화학 공업이 크게 발전하여 산업 기반 구축
- 2004년 EU 가입 이후 시장개방과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제조업, 건설업, 숙박요식업 및 금융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
- 2011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며, 자동차, IT, 전기전자, 항공, 기계 등의 부문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발전

○ 자동차 산업

- 중동부 유럽지역의 중요한 자동차 생산기지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진출해 있으며, 우리나라도 90년대 중반 대우 자동차의 진출로 시작하여 현대차, 기아차 등이 폴란드 남부 지방으로 진출
- 최근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선전으로 입지가 약해져 2013년 총 생산 및 판매는 전년대비 1% 증가에 그침
 - 특히 승용차 부분생산이 2008년 84만 여대에서 2013년 47만 여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침체가 두드러짐
 - 폴란드 생산된 자동차의 90%가 수출용이고 주로 EU 회원국 대상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바, EU경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음
- 2014년도부터는 자동차 업계가 활기를 되찾음
 - 2013년도에 생산공장 설립 등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활발
 - 길었던 유로존 침체의 끝이 보이며 폴란드 자동차 수출이 회복세

○ 가전산업

- EU가입 후 글로벌 가전 업체의 직접 투자를 바탕으로 유럽의 주요 가전 제품 생산 기지로 급격히 부상하며 특히 유럽 최대의 TV 생산국
- 2014년 가전제품 생산에 있어 유럽 선두로 나설 것이라 예상



- 생산 가전제품의 70~80%를 수출
 - 2009년 삼성이 폴란드 아미카브론키 공장 전격 인수 후 폴란드 가전제품 생산에 큰 부분 차지
- 항공산업
- 80년이 넘는 항공기 제조 역사를 보유하며 EU가입을 계기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발해지며 급성장
 - 연간 8억유로의 매출을 달성하는 120여개의 항공관련 기업과 23,000여명의 업계 종사자
 - 전 세계 여객기는 최소 한 개 이상의 폴란드 부품 사용
 - 폴란드 국가연구기관 투자 계획으로 2013~2017년 항공산업에 750만 유로 투자 예정으로 폴란드의 신 성장동력으로 각광
- 건설업
- 2006년부터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와 개인 주택수요 증가로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보여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는 침체
 - 2010년 정부의 EU펀드 조기집행과 유로 2012년 관련한 인프라 건설 확대로 2010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
 - 2012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수입 감소와 판매 수익에 대한 압력, 시장에서의 주문 감소 등이 건설업계 침체 요인
 - 원활하지 못한 자금흐름과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 수준이 문제
 - 2012 바르샤바유로컵 경기장 건설한 폴란드 대형 건설사 PBG그룹 파산
 - 폴란드 내 건설업계의 위기는 고용시장과 임금에도 악영향
 - 장기적으로는 건설업계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폴란드도로공사가 도로인프라 확장을 위한 투자 계획
 - 기차역 현대화, 선로 현대화 사업 진행 중
 - 산업건설 프로젝트 투자 위해 신설된 국영투자회사를 통해 투자 확대 예상
 - EU 등 외부 자금 가세로 인프라 공사 발주 물량이 큰 폭 증가 예상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에너지사업

- 폴란드는 유럽 최대의 셰일가스 매장국으로 유럽지역 전체 매장량의 30%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향후 폴란드의 셰일가스 개발은 폴란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
- 현대 에너지원은 석탄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에너지원을 셰일가스와 원자력 개발에 중점을 둔 대체 에너지 발굴 추진 중

□ 폴란드의 역사

○ 피아스트 왕조

- 6세기쯤 폴란드 북서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한 서슬라브인은 10세기에 폴라니족에 의해 통일되고, 966년 피아스트 왕조의 미에슈코 1세가 로마카톨릭을 받아들임으로 국가의 모습을 갖추

○ 야기에오 왕조

- 단기간의 폴란드 · 헝가리 방이 이루어지면서, 1385년 피아스트 왕조가 끝나고, 헝가리의 야드비가 공주가 리투아니아의 야기에오 대공과 결혼하여 폴란드 - 라투아니아 연합왕국인 야기에오 왕조 탄생
- 카시미르 4세(재위 1447~1492)때에 폴란드 사상 최전성기를 이룩했으며, 16세기 말에는 북으로 발트해, 남으로 흑해에 이르는 유럽 최대강국이 됨

○ 분할시대

- 1573년 왕위 계승자 부재로 야기에오 왕조가 끝나고, 귀족들이 국왕을 선출하는 일종의 귀족 공화정이 등장
- 17세기에 투르크와의 전쟁, 발트해를 둘러싼 스웨덴과의 전쟁으로 국력 쇠퇴
- 주변의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3국은 점진적으로 폴란드를 침범하여 1795년까지 완전히 분할지배



○ 망국기

- 나폴레옹에 의한 바르샤바 공국시대(1807~1815)기간을 제외하고 1918년 까지 3국의 지배는 계속
- 1831년 11월 봉기로 이어진 독립투쟁은 실패로 끝을 맺어 대량의 망명자가 국외로 탈출
- 1864년 봉기를 끝으로 민중 봉기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지만, 농민 계층을 중심으로 민족의식은 꾸준히 이어져 갔으며, 해외에 망명해 있던 폴란드 인들도 독립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전개

○ 독립과 세계대전

- 러시아 제국의 몰락,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몰락, 독일 제국의 패망과 함께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힘입어 1918년 외부의 힘으로 독립
- 세나라의 지배를 받던 지역의 행정 및 경제제도의 차이와 민족간의 이해가 상충된 혼란 상태에서, 피우스드스키가 군부의 지지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아 강한 정치적 통제의 독재 국가 면모를 띄게 됨
- 1939년 독일은 폴란드에 침공하여, 폴란드 전체 인구의 20%인 600여 만명이 희생됨
- 제2차 대전 전후 처리 결과 폴란드의 동부지역이 소련 국토에 편입되는 대신 독일 동북부지역이 폴란드에 편입됨

○ 공산 정권하의 폴란드

- 1945년 6월 폴란드 임시정부가 수립, 1947년 1월 총선 실시결과 공산·사회 양당 중심의 인민전선 압승, 공산당 정부가 수립
- 당 제1서기로 집권한 고무우카가 1970년 12월 실질임금 하락에 항의하는 대규모 노동자 시위로 실각하고 뒤이어 기에레크가 취임하여 경제 재건을 위한 산업화 추진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1980년 마이너스 성장 등 불안한 경제상황 아래에서 표출된 지도층의 부패와, 같은 해 7월 육류 가격 인상을 계기로 발생한 노동자들의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개월 동안 전국을 휩쓸어 공산권에서 전례가 없는 대폭적인 권리가 노동자 측에 허용됨

○ 폴란드의 자유노조와 민주화개혁

- 노조결성권 획득 후에 결성된 자유노조 지지자들은 1981년 9월 제1회 자유노조 전국회의를 개최하여 바웬사를 의장으로 선출
- 야루젤스키 공산당 정권은 1981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경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자유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은 꾸준히 전개
- 1988년 8월 폴란드 부두 노동자, 광부 등 1만3천여명이 자유노조의 인정, 임금인상 및 경제개혁을 요구하며 파업
- 1989년 2월 폴란드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원탁회의 실시하여 12월 사회주의 관계조항이 삭제되고 자유경제 조항이 삽입된 개정안이 통과되어 본격적인 민주주의 국가 지향
- 1989년 6월 실시된 총선에서 자유노조가 압도적 승리를 이루고, 1990년 임기 5년의 직선대통령제가 채택되고 바웬사가 전후의 첫 민선 대통령이 됨
- 1999년 3월 NATO, 2004년 5월1일 EU에 가입

□ 폴란드 지역별 특징

○ 폴란드 국토 개관

- 북동쪽으로는 러시아 연방, 동쪽으로 리투아니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남쪽으로 슬로바키아·체코, 서쪽으로 독일과 국경을 접하며, 남국길이 649km, 동서길이 689km로 거의 4각형의 국토를 이루며 행정구역은 16개주로 되어 있음



○ 바르샤바 (Warszawa)

- 폴란드의 수도로, 1945년 독일로부터 해방 후 시가지의 재건이 시작되어 도시의 근대화와 역사적인 건축물 복원이 동시에 일어남
- 폴란드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며, 전차·버스 노선망이 발달하고 철도·도로교통의 요지임
- 비슬라강 우안에 자리한 고도시에는 제2차세계대전 후에 복원된 중세의 성터와 유적이 많음

○ 크라쿠프 (Krakow)

- 폴란드의 제2의 도시로, 17세기에 수도를 바르샤바로 옮기기 전까지 폴란드의 수도였음
- 축산가공업과 함께 철도차량·전화교환기 제작 및 소다 화학 등의 공업이 활발
- 2차대전 중 독일군 사령부가 위치하여 파괴되지 않아 중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

○ 브로츠와프(Wroctaw)

- 1742년 체결된 평화조약으로 프로이센령이 되면서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1945년부터 다시 폴란드령으로 돌아감
- 폴란드의 공업중심지로서 기계·전기기구·직물·식품·화학·약품·피혁 등의 공업이 활발

○ 비아위스토크 (Bialystok)

- 1310년 설립되어 프로이센에 이어 러시아에 편입되었다가 1945년 폴란드령으로 복귀
- 주민대부분이 유대인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반수 이상이 살육되었으며 도시도 파괴됨
- 현재 모직물을 중심으로 다시 재건, 귀리·감자 등 농산물 재배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루블린 (Lublin)

- 1918년 독립 폴란드의 부활에 즈음하여 최초의 정부가 수립되고,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민족해방위원회의 임시소재지
- 우크라이나강 연변에 있는 동부 폴란드의 공업도시

○ 우지 (Lodz)

- 폴란드의 대도시중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화가 강력히 진전되어 많은 폴란드인과 유대인이 학살·추방
- 폴란드 제1의 섬유공업도시로 섬유공업과 관련된 기계·화학공업 성행

○ 포즈나뉴 (posen)

- 10세기에 성채로서 건설된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의 하나로 968년에는 폴란드 최초의 주교구가 설치
- 제2차세계대전 때에는 독일군과 소련국의 격전장, 공산치하에서는 대규모 반정부폭동이 일어났던 곳으로 유명
- 폴란드의 공업·무역의 중심지이며, 폴란드 서부의 문화 과학의 중심지

○ 그디니아 (Gdynia)

- 인구 300명에 불과한 어촌에서 1924년 거대한 냉동고·식용유 제조공장과 조선, 철도 등의 시설을 갖춘 발트해 유수의 항구로 발전
- 해양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이 집중

□ 폴란드의 자연

○ 지형

- 동·서 유럽의 중간에 위치한 폴란드는 제4빙하기의 영향을 받은 넓은 저지대가 국토 북부의 약 2/3을 점하며 호수가 산재하는 평야지대가 동서로 전개



- 수많은 지류와 함께 수로망이 전국적으로 펼쳐져 전국의 90%에 가까운 물이 모여드는 비스와강과 오데르 강이 하천 수계의 중심이고, 어류가 풍부한 빙하호가 산재
- 삼림은 서유럽의 활엽수림으로부터 동유럽의 침엽수림으로 옮겨가는 접이지대의 특징이 나타나며 국토의 약 1/4를 점함

○ 기후

- 북위 49 - 54도, 동경 14 - 24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러시아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의 접이지대에 위치하여 기온의 분포가 다양
- 봄은 통상 3월에 시작되어 5월(또는 6월)까지 이며 평균 기온은 -1도 ~ 15도이며 여름은 6월~8월로 건조한 편이며 평균 기온은 21~32도이나 매우 무더울 때는 40도까지 올라감
- 가을인 9월부터 약간 추워지며 하루에도 날씨 변동이 심하고, 겨울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으며 0도 이하 일수는 80~130일 임

○ 강수량

- 연평균 강수량은 600mm이고, 평야 지대 500~700mm, 중부지역 500mm 이하, 남부 산악지대 1,000~1,100mm이며, 평균적으로 우기인 여름철의 강수량은 겨울철의 약 두 배임
- 적설일수는 동남부가 40일 이하, 동북부 90일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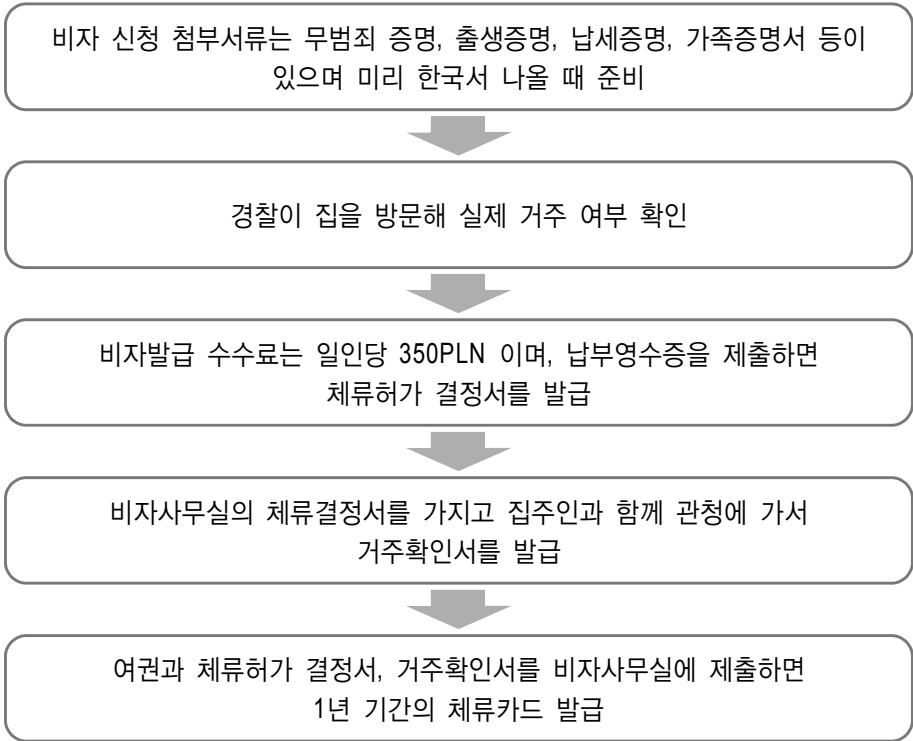
2 폴란드 생활 정보

□ 폴란드 정착

○ 비자

- 폴란드에 3개월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며, 비자의 갱신기한은 1년이므로 비자 만료 2개월 전에 비자연장 신청을 해야 함

폴란드에서 법인의 설립절차



- * 일정 수수료를 받고 위의 절차를 변호사나 브로커가 대행해주시기도 함
- 1년 취업비자를 중단기간 없이 다섯 번 연장해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짐
- 지역사회 고용에 기여한 사람에게 특별히 평생비자를 주기도 함



○ 화폐와 환전

- 화폐 이름은 즈워티(ZLOTY) 약칭 'PLN', 'Zł'라고 씀
- 지폐는 10, 20, 50, 100, 200 즈워티, 동전은 1, 2, 5 즈워티가 있음
- 1달러는 3.5즈워티, 1유로는 4즈워티, 1즈워티는 350원 정도

○ 주거여건

- 주택형태는 아파트, 연립주택(라인하우스), 단독주택 세 종류
- 라인하우스와 단독주택은 정원이 있는 게 장점이고, 아파트와 라인하우스는 경비원이 24시간 지키고 있어 안전
- 임차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며,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월세의 절반, 보증금으로는 1개월 치 임차료를 선금으로 납부
 - 가구가 있는 집과 없는 집 두 종류가 있으며, 가구가 있는 집을 렌트할 경우 부족한 집기 요청 가능
 - 렌트비에 모든 공과금을 포함시키는 방안과 단순 렌트비만 약정하고 매월 공과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음
 - 임차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산출하며 한국과 같이 공용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관례
- TV나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집주인을 통해 가맹 설치

○ 교육여건

- 폴란드의 공교육 제도는 만 18세까지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만 5세 내지 6세가 되면 유치원 입학, 만 7세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함
- 폴란드에 주재하는 외국 기업인 및 외교관의 자녀들은 국제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음
 - 바르샤바뿐 아니라 브로츠와프, 슈체친 등 주요 도시에는 영어, 독일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을 사용하는 다양한 국제학교 존재
 - 대부분이 시설이 훌륭하고,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일반 공립 학교들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다양한 과외 활동을 운영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연간 수업료가 초등학교 약 \$19,000, 중학교 이상 약 \$21,000로 다소 높은 편
 - 바르샤바에는 국제학교가 바르샤바 미국학교, 영국학교, 국제미국학교 세 군데가 있음
 - 폴란드의 한인학교는 바르샤바, 브로츠와프, 포즈난의 지역에 있는 비상설학교로 일주일에 한번 씩 운영됨
 - 바르샤바에 1995년 2월 설립되었고, 4세부터 중등반까지 약 80여명의 학생이 우리나라 정규교과서를 이용하여 수업하며 학생들의 참가 열의가 높음
 - 브로츠와프와 포즈난의 한글학교에서도 유치부와 초등반 운영 중
- 의료
- 약국에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은 그냥 구입할 수 있으나,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 필요 (약국은 ‘APTEKA’)
 -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공립병원에서 무상으로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
 - 의료보험가입은 의무가 아니며, 젊은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경향
 - 사립병원은 돈이 들어도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고 진료가 신속

□ 폴란드 차량운행관련 정보

- 자동차 구입 및 등록
- 폴란드는 전반적으로 자동차 값이 한국보다 비싸나,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
 - 자동차 구입 시 매매계약서,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등록사무소를 찾아가 번호판 신청
 - 거주확인서 사본과 여권 복사본 제출하면 현장에서 새 번호판 발급
 - 등록 후 인근 세무서에 등록세, 수입인지세 등 세금을 내야 함



○ 자동차 보험

- 폴란드는 자동차 사고나 났을 시 언제나 잘못된 쪽이 100% 과실
-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오체, OC)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자차(아체, AC)보험
-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 사고 시 타인에게 준 피해를 보험사가 전액 보상 처리하나, 과실로 인한 차의 손상은 자비로 수리
- 자차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은 교통사고로 일어난 모든 손상, 분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경찰에게 먼저 알려야 하며, 경찰이 확인해 주어야 보험사가 인정
 - * 경찰 전화번호 : 997
- 보험계약 시 보험료를 분할 지급할 때, 지급 기한을 넘기면 그 날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음

○ 운전면허증 교부

- 1998년 11월 폴란드와 운전면허 상호협정 및 교환협정
 - 한국 면허증을 폴란드어 공증 번역하여 사진과 함께 관서에 제출하면 폴란드 운전면허증 교부
 - 폴란드 입국 후 1년 이상 거주 시 발급 가능
- 폴란드 운전면허증을 연장할 경우 폴란드 면허증 연장과 동일한 절차
 -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검사 결과 동봉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임

○ 운전 수칙

- 운전할 때는 언제나 면허증, IDZ카드,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서 소지해야 하며, 자동차에는 고장을 알리는 적색 삼각대와 예비전구, 국가인식 스티커가 있어야 함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속도 제한은 시내 50km/h, 도시 밖의 지역 90km/h, 편도 2차선 110km/h, 자동차 전용도로 130km/h
- 벌점은 한 항목당 1~10점이며, 1년간 유효하고 24점이 넘을 경우 면허 박탈
 - 여러 항목 위반 시 위반항목 전체의 벌점을 합하여 부여되어 한번에 24점 넘을 수도 있음
 - 면허 박탈시 재발급 위해서는 심리검사와 운전면허 재시험이 필수
 - 벌금의 경우 위반자가 외국인일때 그 자리에서 50~100즈워티의 벌금 즉시 부과 가능
- 벌점 관련 항목은 음주, 속도, 안전관련, 면허증, 라이트, 사고 등
- 강력한 음주단속법을 지니며,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
- 불법 주·정차, 유료 주차 위반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통경찰의 정당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함

□ 폴란드 현지생활

○ 대중 교통

- 폴란드 국철(PKP)은 운행시간이 정확하며, 인터시티와 유로시티기차가 있어 폴란드 거의 모든 도시들을 연결
- 버스회사(PKS)는 바르샤바와 지방도시, 폴란드와 유럽 각국 도시 연결, 열차 노선이 발달해 있지 않는 산악지역은 이용률 높음
- 시내 대중교통은 시내버스, 트램, 지하철 등이 있는데 한가지 승차권으로 모두 이용 가능
 - 승차권은 환승이 가능한 시간제 승차권과 1회권, 체류 기간에 따라 1일권, 3일권, 한달권, 3개월권이 있음



- 4세 이하 동반 유아는 무료이고, 12세 이하의 어린이, 학생, 정년 퇴직자는 50% 할인
- 승차권은 곳곳의 버스 및 트램 정류장에 있는 소형매점과 지하철역 자판기 통해 구매
- 주간버스의 경우 배차시간이 짧고 시내 곳곳을 운행하지만 야간버스의 경우 배차시간이 길고 주요 지역만을 운행하며, 지하철은 1개 노선
- 콜택시가 일반화 되어 있으며, 거리에서 지나는 택시를 세울 수 없음

○ 인터넷 이용

- 폴란드 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Plus, Orange, T-Mobile, Play가 대표적으로 핸드폰 통신업체지만 인터넷 통신, 케이블 TV등 통신분야 전반에 걸쳐 활동하며 통신서비스 상품이 서로 비슷
- 폴란드에서 인터넷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
 - 카드충전방식은 인터넷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동식 라우터나 인터넷 연결용 USB, SIM카드를 꽂아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요금을 지불하면 되고, 장소의 제한 없이 인터넷 연결 가능
 - 약정방식은 특정기간까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기간을 못 채우고 해지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와 서명이 있어야 가입 가능. 특별한 트래픽 제한은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전송속도에 따른 가격차이가 존재함

○ 휴대폰 이용 안내

- 휴대폰 약정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폴란드에서 만든 신용카드, 고용증명서, 폴란드 학생증 중 하나), 거주 증명서, 여권
- 휴대폰 약정계약 : ①‘Abonament’는 일정액을 정해두고 사용하며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 결제일에 추가로 지불 ②‘Mix’일정액을 정해두고 사용하며 그 이상 사용하고 싶을 경우 충전하여 사용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요금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약정계약기간이나 지불하는 기계 값에 따라 요금과 혜택이 달라짐
- 은행이용
 - 주중 오전 8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2시 영업
 - 은행 계좌의 종류는 즈워티계좌, 달러계좌, 유로계좌가 가능하며 예치는 최고 10,000\$ 이내로 제한
 - 외화의 계좌 이체는 폴란드 국내 계좌간이라도 국제 거래로 간주하여 높은 수수료 부과하며, 외화는 은행창구에서만 인출가능
 - 현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직불카드 발급되며, 이 직불카드는 조그만 상점에서도 사용가능하며 사용범위가 매우 넓음
- 우편
 - 우편은 폴란드 국영기업인 우체국이나 전문 운송업체인 DHL, TNT등 이용
 - 우편배달부는 집에 사람이 없거나 방문해서 찾아가야 할 소포(검역문제, 관세부과 대상)가 있으면 메시지를 남겨 놓으며,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함
 - 소포나 등기를 정해진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발신인에게 반송 조치



□ 폴란드 여가

○ 공휴일

신 정	(1월 1일)
주 현 절	(1월 6일) 예수가 제30회 탄생일에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공증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축절. 거리에는 사람들이 동방박사 분장을 하고 돌아다님
부 활 절	(춘분 뒤 첫 만월 뒤에 오는 일요일)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기 위한 날로 달걀을 주고 받으며, 날짜는 매년 변경됨
부 활 절 월 요 일	(부활절 다음날) 남자들이 젊은 여자에게 물을 끼얹는 날로, 봄이 오기 전에 물을 뿌리면 질병을 물리친다고 믿었던 것에서 유래
노 동 절	(5월 1일)
제 현 절	(5월 3일) 유럽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1791년 근대적 성문 헌법이 제정된 날. 거리에는 퍼레이드, 독립영웅을 기리는 미사, 무명용사를 위한 헌화식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오 순 절	(부활절 이후 7번째 일요일) 풍년을 기원하는 폴란드 민속명절
성 체 축 일	(부활절 이후 9번째 목요일) 성체에 대한 신앙심을 고백하는 축일
성모승천일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이자 국군의 날
만 성 절	(11월 1일) 모든 카톨릭 성인을 기념하는 축일로, 초를 밝히고 세상을 떠난 친지들의 묘지를 방문하여 꽃과 촛불로 무덤을 장식함
독립기념일	(11월 11일) 1918년 123년 만에 독립국가로서 지위를 회복한 날로, 폴란드 전역에서 행사가 이루어짐
크리스마스	(12월 25일, 26일)

○ 폴란드의 축제

- 말타 축제

- 일시 : 매년 6월 말 ~ 7월초 약 1주일간
- 1주일 동안 포츠난 도시 곳곳에서 연극, 음악, 댄스, 영화, 비주얼아트 등의 야외공연이 이루어지며, 전세계 수십여개의 국가에서 대표적인 공연팀들이 참여 - 라이코닉 페스티벌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노츠 쿠파위
 - 일시 : 매년 성 요한 탄생일 (하지날 밤)
 - 성 요한 축제라고도 불리우며, 하지날 밤에 열리는 폴란드 포즈난의 풍등 축제. 저마다 소원을 풍등에 적어 하늘에 띄우며, 2013년엔 약 3만여개의 풍등이 여름밤을 수놓아 기네스북에 등록됨
- 라이코닉 축제
 - 일시 : 매년 성체축일 후 첫 번째 목요일
 - 크라코우라는 폴란드 남부 도시의 13세기 경 몽골군을 한밤중에 무찌른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한 소박한 전통 민속 축제로, 말의 형태를 한 가장행렬, 간단한 전쟁놀이, 다양한 거리극 형태의 공연을 펼침
- 단스크 셰익스피어 축제
 - 일시 : 매년 8월첫째주
 - 10여개 이상의 해외 우수작들과 폴란드 극단중에서 그 해 선발된 초우수 4개팀이 참여하여, 세계의 아티스트들의 각각의 표현법으로 새롭게 해석된 셰익스피어를 공연
- 볼레스와비에츠 도자기축제
 - 일시 : 매년 8월
 - 세계적으로 유명한 폴란드 전통 핸드메이드 도자기로 유명한 마을인 볼레스와비에츠에서 열리는 축제로, 폴란드 도자기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백토로 온몸을 바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수 있음
- 바르샤바 가을 축제
 - 일시 : 매년 9월 하순
 - 쇼팽 사후 100여년이 지난 1956년 쇼팽을 기리기 위한 축제로 개최된 쇼팽의 고향에서 펼쳐지는 세계적 명성의 클래식 전문 축제로, 매년 현대 음악에 기여하는 우수한 예술가들이 참여



○ 문화생활

- 연극, 음악 등의 분야에서 연간 공연 횟수가 5만회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에도 많은 문화시설이 있어 일반 시민들의 문화향유 수준이 높음
- 쇼팽 국제피아노 콩쿠르, 바르샤바의 가을 국제 현대 음악제, 베토벤 페스티벌, 모차르트 페스티벌, 바르샤바 국제 영화제, 국제 거리 연극제 등 수많은 국제 문화행사 개최

○ 음식

- 국가 면적이 넓은 만큼 지역마다 다양한 특징을 지닌 음식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국인 독일, 헝가리, 러시아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

비고스 (Bigos)	사냥꾼의 스투라는 별명을 가진 대표 전통음식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절인 양배추, 온갖 채소류, 소시지, 베이컨 등을 넣고 끓인 요리로 신맛이 특징
피에로기 (Pierogi)	우리나라 만두와 비슷한 음식으로 속재료로 고기, 버섯, 양배추, 치즈, 양파, 과일 등 다양
골론카 (Golonka)	우리나라 돼지족발을 연상케 하는 음식으로 구운것과 삶은것 두 종류

- 목축업이 발달해 육류요리가 주를 이루며, 고기의 느끼한 맛을 없애기 위해 식초에 절인 양배추 샐러드를 곁들여 먹음
- 이른 아침 차와 빵, 10시쯤 간단한 아침, 점심을 13 : 00~16 : 00에 가장 푸짐하게 먹고, 간단한 저녁 이렇게 4끼를 먹음
- 유로 2012에서 다음과 같은 자국의 특산물과 특산물로 만든 폴란드 대표 음식을 소개함.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카슈비안 딸기	루티니아 지역의 생과일 주스
2009년에 폴란드산 과일로는 처음으로 EU에 등록되어 EU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당도가 높고 향과 과즙이 풍부하기로 유명	필터링 역할을 하는 린넨 천을 통해 추출된 과즙은, 보기에 탁할 정도로 진하고 씹히는 과육이 있음
그루예츠 지역의 사과	포즈난 지역의 세인트마틴롤
2011년 10월에 EU에 등록, 다른 사과들보다 껍질의 붉은색이 강하고 맛의 산성도가 5%정도 높음. 이 지역에는 1918년 폴란드 최초로 과일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가 만들어졌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사과 수확량이 급격히 증가	11월 11일 세인트 마틴의 날에 즐겨 먹는 달달한 빵으로, 포즈난과 인근 지역에는 매년 250톤이 소비됨. 양귀비 씨앗이 듬뿍 들어있는 이 롤은 초승달 모양을 띠고 있으며, 빵의 표면에 발라진 계란 흰자위와 갈게 손질된 견과류 장식에 특징

○ 쇼핑

- 호박(Amber)은 폴란드의 특산품으로 현재 호박 부존량이 많지 않아 상당량의 호박 원석을 수입하나, 원석을 가공하여 각종 장신구와 주방용품 장식품을 제작
- 전통술 보드카도 유명한데, 독특한 향이 나는 풀잎을 넣고 만든 것으로 폴란드에서만 나는 특산품인 'Zubrowska', 미주지역에서 최고급 술로 판매되는 'Belvedere' 등이 있음
- 은제품, 파란색 바탕의 물방울무늬 문양이 특색인 폴란드 전통 도자기, 저렴한 크리스탈 제품도 인기



V

부록



1. 이전가격세제 관련 법령
2. 폴란드 법인세법 중 이전가격세제
관련 조항
3. Tax Code-Section II
(APA 절차 관련 법령)
4. 폴란드 - 그리스 APA 신청서
5. 법인세 신고서식 (CIT - 8)
6.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이전가격세제 관련 법령



<http://www.oecd.org/ctp/transfer-pricing/polandtransferpricingcountryprofileandannexes.htm>

Name of Country : Poland

Last updated : January 2012

ORDINANCE OF THE MINISTER OF FINANCE

of 10 September 2009

on the Mode and Procedure of Determining Legal persons' Income by Estimation and
on the Mode and Procedure of Eliminating Legal Persons' Double Taxation in
Connection with the Adjustment of Profits of Associated Entities
(Journal of Laws of 29 September 2009)

Pursuant to Article 11 Clause 9 of the Corporate Income Tax (Journal of Laws of 2000,
No. 54, Item 654, as amended), The Minister of Finance hereby orders what follows :

Chapter 1 General Rules

Paragraph 1

1.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govern the mode and the procedure of determining income, by estimation of prices, referred to in Article 11 of the Corporate Income Tax of 15th February 1992 and the mode and procedure of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onnection with the adjustment of profits of associated entities.
2. The provisions of this Ordinance should be applied accordingly in estimation of the part of income of the taxpayer that do not have the place of residenc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conducting its business activity by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and the taxpayer having its place of residenc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conducting its business activity by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on the territory of foreign country.

3. The objective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Ordinance shall be to determine and to tax income which can reasonable be deemed to have been earn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and with respect to entities having its place of residence o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also income earned abroad, if it can be reasonably attributed to these entities.
4. The provisions the Ordinance shall not apply to the transactions, in which price or the mode of setting the price of the object of such transaction is prescribed in the acts of law and enforcement regulations issued on its basis.

Paragraph 2

For the purpose of this ordinance, the following terms shall be understood as :

1. entity - an individual, a legal entity or entity without legal personality,
2. domestic entity - a domestic entity in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of Tax Code of 29th August 1997 (Journal of Laws from 2005, No. 8, Item 654, as amended),
3. foreign entity - a foreign entity in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of law indicated in Point 2;
4. associated entities - entities which are in rel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1 Clauses 1 and 4-6 and 8a of the Act of law indicated in Paragraph 1 Clause 1;
5. independent entities - entities that are not in relations indicated in Point 4;
6. permanent establishment -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meaning of the provision referred to in Article 4a Item 11 of the Act of law mentioned in Paragraph 1 Clause 1.

Paragraph 3

1. The tax authorities and the fiscal audit authorities shall determine income of the associated entity by estimation in the amount as it would have been settled between independent entities.
2. In order to estimate the income indicated in Clause 1, the methods mentioned in Paragraphs 12-14 as well as 15-18 have to be applied exclu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rules indicated in Chapter 2. Such estimated income is treated as being at fair market value.



3. Estimation, as indicated in Clause 1, covers especially all types of transactions where occur transfer of ownership or transfer of rights to use tangible and intangible property as well as granting of loans (credits) and performing services or undertaking common arrangements indicated in paragraph 23.

Paragraph 4

1. The tax authorities and the fiscal audit authorities shall determine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object of a transaction between associated entities on the basis of all information available to them, which may affect determination of this value.
2. During determina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object of a transaction, the tax authorities or the fiscal audit authorities assure that taxpayers can actively participate at each stage of proceedings, in particular submission to these authorities' documents, notes and other data which formed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of the price of transaction.
3. During determina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object of a transaction, the tax authorities or the fiscal audit authorities shall not take into account circumstances which the parties could not be aware of at the date of conclusion of transaction and which, had they been known to the parties, might have caused the parties to determine higher or lower value of the object of such a transaction.
4. Where a taxpayer determined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object of a transaction based on a method or methods referred to in Paragraphs 12-14 and submits to the tax authorities or the fiscal audit authorities the data indicated in Clause 2 and the documentation referred to in Article 9a of the act of law mentioned in Paragraph 1 Clause 1, and the reliability and objectiveness of the data submitted can not be justifiably questioned, the authorities shall determine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object of such a transaction using the method applied by a taxpayer, unless application of another method is evidently more appropriate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especially of chapter two, and the data available.

Paragraph 5

1. Where in a transaction (transactions) between associated entities the terms agreed are less favorable to one of the entities as compared to the terms which would

be agreed by independent entities, and at the same time in another transaction (transactions) involving the same entities the terms are agreed are more favorable to this entity, no adjustment of the prices of the objects of such transactions by the tax authorities or the fiscal audit takes place in cases where lower benefits obtained in the first transaction (transactions) are compensated with higher benefits obtained in that another transaction (transactions).

2. The compensation referred to in Clause 1 shall be deemed compliant with the arm's length principle where independent entities would make such a compensation. 3

Chapter 2 Comparability analysis of transaction

Paragraph 6

1. While conducting comparability analysis of transactions concluded between associated entities with those concluded between independent entities, differences in the economically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the compared transaction, to the extent that these features can affect the market prices established in these transaction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2. Deemed as comparable may be transactions in which none of the possible differences between compared transactions or between entities undertaking these transactions could have a material impact on the price of the object of such transaction on free market or where reasonably accurate adjustments can be made to eliminate material effects of such differences.
3. To factors determining comparability belongs in particular :
 - 1)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of transaction,
 - 2) characteristics of the entities undertaking transactions,
 - 3) contractual terms,
 - 4) economic circumstances occurring at the time and in place, where the transaction took place,
 - 5) business strategy.

Paragraph 7

1. While conducting an comparability analysis of the objects of transaction between the associated entities with the objects of transactions undertaken by independent entities,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s, services or other disbursements, which are the objects of compared transactions, to the extent that these features may affect the market price of the object of transaction and the applied method,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2.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objects of transaction which affect market prices and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during determining comparability of the market value of these objects in a given market, are in cases of :
 - 1) tangible goods - their physical features, quality, durability, accessibility, possible pledges of the related rights in favor of third parties, accessibility of goods and related services as well as volume of supply,
 - 2) intangible goods - duration and extent of protection as well as projected benefits from the use of these goods,
 - 3) for services and other disbursements - type, scope and quality of such services and considerations.
3. In the case when the applied method does not require strict comparability of the objects of transaction, the comparability analyses referred to in Clause 1, shall be conducted in relation to the business sector, to which the transaction relates, taking into account especially provis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8 and 10.

Paragraph 8

1. While conducting comparability analysis of the entities undertaking transactions in a given market the course of transaction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cluding the functions performed by these entities in the compared transact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analysis of assets used, including also tangibles and intangibles not classified as assets, human capital and risks assumed.
2. The analysis of entities undertaking transaction shall determine, which party to the transaction performs functions, uses assets and assumes risks that are economically important, that is which are the most relevant to generating value and profit from the transaction.

3. While performing analysis referred to in Clause 1 and 2, the following is to be taken into account :
- 1) types of functions performed by parties to transaction,
 - 2) type and value of assets and tangible goods used, especially land, buildings, constructions, premises, machinery, equipment, means of transport,
 - 3) type and value of assets and intangible goods used,
 - 4) degree of human capital engaged,
 - 5) type and allocation of business risk and responsibility of parties to the transaction.

Paragraph 9

1. Comparability analysis of transactions shall take into account terms of compared transactions to the extent, that differences of these terms can affect the market prices of the object of transaction.
2. Terms of transaction which may affect the market price of the compared transactions include in particular :
 - 1) dates, conditions and forms of payment,
 - 2) the period within which the transaction is realized and the factors connected with passage of time,
 - 3) punctuality of transaction realization,
 - 4) hedging of transaction.

Paragraph 10

Comparability analysis of transactions conducted on different markets shall take into account conditions existing on comparable markets to the extent that these differences can affect the market prices of the object of transaction. Belongs to them in particular :

1. size and geographic location of a given market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retail or wholesale),
2. supply-to-demand ratio with respect to given goods or services, consumer purchasing power, bargaining power of suppliers and level of competition,
3. availability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as well as risks related to it,

4. substance and scope of government regulation of the market and degree of risk inherent in pursuing activity on a given market,
5. the level and structure of costs related with transaction on a given market.

Paragraph 11

1. Comparability analysis of transaction shall take into account used business strategy, in the case when such strategy affected the price of the transaction. The business strategy include in particular :
 - 1) promotional prices when entering a new market,
 - 2) temporary decrease in profits in return for higher long-run profits,
 - 3) incurring higher costs for a definite period to retain the current market position or to gain a new market.
2. Impact of the factor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a business strategy as declared by an entity may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cases where subsequent activities of this entity prove that a given strategy is not actually being implemented, unless failure to implement such a strategy is due to reasons beyond the control of the entity, which reasons could not be predicted at the time of selecting a given strategy for implementation.

Chapter 3

Basic Methods of Determining Taxpayers' Income by Price Estimation

Paragraph 12

1. The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relies on comparison of the price agreed in transactions between associated entities with the price applied in comparable transactions by independent entities and, on this basis, determination of the market value of the object of transaction concluded between the associated entities.
2. Comparison, referred to in Clause 1, is made on the basis of prices applied by a given entity on a given or comparable market in transactions with independent entities (internal price comparison) or on the basis of prices applied in comparable transactions by other independent entity (external price comparison).

3. Where the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an be applied, this method shall take priority over the methods defined in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unless application of other method allows determination of the prices in the transaction at a level closer to the market value of the object of such transaction and allows more accurately to determine taxpayer's income.

Paragraph 13

1. The resale price method relies on reduction of the price agreed in a transaction of a given entity with an independent entity, involving goods or services acquired by this given entity from a associated entity, by resale price profit margin. Thus determined price may deemed to be the market price set in transaction of a given entity with associated entity.
2. The resale price profit margin includes direct expenses and, subject to Clause 3, indirect expenses incurred by a given entity in connection with this transaction plus a profit rate appropriate for this type of transaction. Where, prior to the resale, the entity reprocessed or otherwise changed the value of goods or services, this change shall be considered during adjustment of the price adjustment referred to in Clause 1.
3. The resale price profit margin does not include expenses equivalent to the price of the object of transaction and general administrative costs, that is costs of operating the entity as a whole and costs of managing the entity.
4. The resale price profit margin shall be determined by comparing the margin charged by the same entity in transactions with independent entities or the margins charged by independent entities in comparable transactions.
5. While determining the resale price profit margi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ollowing in particular :
 - 1) factors related to the period of time between the original purchase and the resale, in particular those concerning changes in the market with regard to costs, currency exchange rates, inflation;
 - 2) changes of condition and degree of wear of goods or rights constituting the object of transactions, including those resulting from technological progress in a given field,
 - 3) exclusive right of the reseller to sell certain goods or rights, which may affect the decision to change the margin.

Paragraph 14

1. The reasonable margin method (cost-plus method) involves determination of the sales price of objects and rights and provision of services in a transaction of a given entity with a associated entity, at a level corresponding to the sum of cost base and profit margin, comparable to cost base and profit margin set between independent entities, which take into account comparable functions, risks assumed and assets used.
2. As cost base it is understood a sum of costs directly related to the purchase or own manufacturing of the object of the entities and indirect costs, with the exception of general administrative costs, that is costs of operating the entity as a whole and costs of managing of the entity.
3. In the reasonable margin method ptofit margin is calculated in relation to cost base.
4. Profit margin in relation to certain cost base, reffered to in Clause 3, is determined by comparing the margin charged by the same entity in comparable transactions with unrelated entities or the margin charged in comparable transactions by independent entities.

Chapter 4

Determination of Income while Using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Paragraph 15

1. Where it proves impossible to determine income by using the methods referred to in Paragraphs 12-14, the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may be applied which involve determination of income on the basis of profit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obtained by a given entity participating in a transaction.
2. The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are to be applied in such a way so that no to increase the tax liabilities of the entity only because profit generated by the entity is lower than an average profit of other entities, if lower profit or failure to generate profit by given entity can be attributed to economic or organisational factors.

Paragraph 16

While determining income form transactions realised by associated entities, the following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may be applied :

1. the profit split method and
2. the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Paragraph 17

1. The profit split method, referred to in Paragraph 16 Clause 1, relies on identification of aggregate profits generated by associated entities in a given transaction (transactions) and allocation of these profits to these entities, in a proportion that would have been applied by independent entities.
2. Proportional allocation of profits which would be applied by independent entities participating in a given transaction (transactions) should be carried out by :
 - 1) residual analysis, in which the sum of profits generated in a given transaction (transactions) by associated entities participating in a given transaction (transactions) is allocated in two stages; in the first stage, to each participant of the transaction is allocated basic profit adequate to given kind of transaction that is generated by independent entities performing routine functions, using typical assets as well as assuming standrd risk in those kind of transactions; in the second stage, all the profits remaining after the allocation of profits in first stage are divided between the associated entities participating in a given trans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which would be agreed by independent entities participating in such a transaction; where the sum of profits generated by related entities is lower than the sum of profits allocated in the first stage, the profits allocated shall be reduced; the adjustment made in the second stage shall take into account the economic func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8 Clause 2, or
 - 2) participation analysis in which the sum of profit from a transaction, involving goods manufactured or improved by these entities, is allocated between the entities, on the basis of the relative value of activities undertaken by each associated entity, having regard to the factors referred to in Paragraph 8.



3. Allocation of profits, referred to in Clause 1, is made by appropriate determination of the earnings generated by each related entity and the costs incurred related to a given transaction (transactions).

Paragraph 18

1. The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referred to in Paragraph 16 Point 2, relies on examination of the net profit margin achieved by an entity in a transaction or transactions with another associated entity and determination of it at the level of the margin obtained by that same entity in transactions with unrelated entities or the margin obtained in comparable transactions by independent entities.
2. The transactional net margin, referred to in Clause 1, is determined by deducting from the earnings generated in the transaction the costs incurred in order to generate those earnings, including general administrative costs.
3. Deduction of general administrative costs, referred to in Clause 2, is made by taking into account the ratio of the earnings from a given transaction to total earnings.
4. While applying the net transactional margin method, on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ntities whose margins are being compared; in particular the following factor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 competition from other market participants and substitute products, efficiency and management strategy, position on the market, differences in costs structures and costs of raising capital as well as degree of business experience.

Chapter 5

Special Cases and Conditions of Determining Market Value of Intangible Goods and Services

Paragraph 19

1. On determining the fair market value of intangible goods or services in transactions among associated entities, the tax authorities or fiscal audit authorities at first examine, whether independent, reasonably acting entities would conclude such transaction on conditions, which were agreed by associated entities.

2. Where reasonably expected benefits of an entity concluding such transaction are evidently lower than the expenses incurred in this transaction, and the entity doesn't indicate rational causes justifying their incurring in a given amount, tax authorities and fiscal audit authorities examine correctness of determination of amount of incurred expenses.
3. While determining the level of expenses, referred to in Clause 2, other costs on which the use of a given intangible or service is conditional are to be taken into account.
4. The provisions of Clause 2 is not applicable where a given entity is obligated by separate regulations to undertake a given legal action.

Paragraph 20

1. While estimating income, the tax authorities or the fiscal audit authorities determine advertising costs incurred by associated entities, proportionally to benefits from advertising generated by these entities. Where one taxpayer incurs the costs of advertising, the benefits of which an associated entity related to this taxpayer also participate in, it is deemed then, that this first entity performs commercial services in limits, in which they correspond of their nature and scope to services run by independent advertising enterprises.
2. In particular,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proportionality of the expenses for advertising, which carrying on generates potential benefits for two or more associated entities, on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markets where the advertising is carried on and the share of sales of advertised goods and services sold by particular associated entities on the markets where the advertising is being carried on.

Paragraph 21

1. If a taxpayer grants a loan (credit) to a associated entity related to it or receives such a loan (credit) regardless of their purpose and assignment, or where he grants or is granted a guarantee or a pledge in any form, the market price for such service are interest or commission or any other form of payment, which would be agreed for such a service, provided under comparable terms, by unrelated entities.

2. The market value of interest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lowest interest, that a given entity would have to pay to an independent entity for obtaining of a loan (credit) with similar maturity under comparable terms.
3. While determining the value, referred to in Clause 2, all relevant circumstances involved in a given cas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particular :
 - 1) the amount of the loan (credit) and the period for which it has been granted,
 - 2) the character and purpose of the loan (credit),
 - 3) risk involved and security on the loan (credit), having regard to special terms, which the lender (creditor) could grant to an unrelated borrower,
 - 4) currency of the loan (credit), risk involved in exchange rates fluctuations, costs of funds hedging the loan (credit) and funds limiting the risk of exchange rates fluctuations,
 - 5) the amount of commission.

Paragraph 22

If one entity related with another entity or with more entities launches research as commissioned by this other entity or entitie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earnings by these entities from such a transaction (transactions), it is deemed to accrue eventual benefits from outcome of research to the principa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earnings of the contractor for providing such services it is appropriate to use method referred to in Paragraph 14.

Paragraph 23

1. If a taxpayer shares the costs jointly incurred by associated entities for the manufacture of intangible goods, the level of the cost incurred by the taxpayer attributed to it may be deemed to have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arm's-length principle only if such terms, in light of expected benefits from such participation, would be approved by unrelated entities.
2. The terms, referred to in Clause 1, apply in particular to charging these costs to the entities in proportion to expected benefits and, additionally, to allocation of benefits which were not expected (taken into account) on setting these terms in proportion to the level of charges.

3. Where a taxpayer has an opportunity to obtain comparable benefits within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Clause 1, or from an independent entity and in one of these cases the taxpayer will incur lower expenses, than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market value of the benefit the of this taxpayer lower value one should use lower value.
4. In the cases, referred to in Clauses 1-3, the provision of Paragraph 4 Clause 3 shall apply accordingly.

Chapter 6

Procedure of Making Adjustments of Tax Liabilities

Paragraph 24

1. In order to eliminate double taxation of income of associated entities, if income of a taxpayer, which is a domestic entity, is included by the tax administration of the other state in the income of a foreign entity and taxed accordingly in connection with determination by this tax administration of the terms which would be agreed by independent entities, on the request of the domestic entity, minister responsible for public finances may make an adjustment of the tax liability of this taxpayer, on condition that the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 Republic of Poland is a party, foresee such adjustment.
2. The adjustment, referred to in Clause 1, may be made, if the terms determined by the tax administration of this other country are,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are consistent with the terms, which would be agreed by independent entities.
3. In case when the adjustment, referred to in Clause 1, took place competent tax authority makes change of tax liabilities of this taxpayer, in the scope resulting from the adjustment.



Chapter 7

The Mode and Procedure of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onnection with the Adjustment of Profits of Associated Entities.

Paragraph 25

1. In order to eliminate double taxation of income of associated entities, domestic entity may request the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to initiate a mutual agreement procedure according to Convention of 13 July 1990 on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onnection with the adjustment of profits of associated enterprises (Journal of Laws 2007, No 152, Item 1080) or according to double taxation treaties concluded by the Republic of Poland. The request shall be submit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delivery of tax audit report or tax decision to taxpayer or its associated entity which result or is likely to result in double taxation, unless double taxation treaty according to which request is issued provides for different time limit. The three year period starts with the first of the following dates : date of delivery of tax audit report or date of delivery of tax decision.
2. The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shall inform in writing :
 - 1) domestic entity about receipt of request indicated in Clause 1,
 - 2)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about submission of request by domestic entity indicated in Clause 1 attaching a copy of the request - within one month from its receipt.
3. The request indicated in Clause 1 shall include at least :
 - 1) identification of domestic entity and its associated entities involved in procedure in particular : name, address, tax identification number;
 - 2) details of 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details of the relations between domestic entity and associated entities indicated in item 1,
 - 3) identification of tax periods concerned,
 - 4) copies of the tax decisions, tax audit reports or equivalent that give evidence about double taxation (leading to the alleged double taxation),
 - 5) details of any appeals and litigation procedures initiated by the taxpayer or associated entities indicated in item 1, including any court decisions concerning the case;

- 6) justification of the request, including explanation concerning application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referred to in Clause 1,
 - 7) an undertaking that domestic entity shall deliver to the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all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that may influence the outcome of the case.
4. Upon request of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all indicated documents shall be translated into working language agreed with competent authoritie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concerned.
 5. If the request does not meet requirements indicated in Clause 3 and 4 the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shall invite (call on) the domestic entity within two months upon receipt of the request to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6. The case shall be regarded as being submitted at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indicated in Clause 1 including all elements provided for in Clause 3 and 4 or at the date on which the last document with additional information on request referred to in Clause 5 is being submitted.
 7. If the request indicated in Clause 1 appears to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to be justified but it is not itself able to resolve case in a satisfactory way within the framework of domestic proceedings, it should initiate a mutual agreement procedure informing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concerned attaching a copy of information indicated in Clause 3. At the same time the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shall inform domestic entity about the initiation of mutual agreement procedure.
 8. The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shall inform - on the basis of information available to him -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concerned and the domestic entity whether the request was submitted within time limit provided for in Clause 1 and of the starting point for the two-year period referred to in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indicated in Clause 1.
 9.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shall be completed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indicated in Clause 10.



10. The two-year period indicated in Clause 9 starts at the latest (not beyond the ..) of the following dates :
 - 1) the date of the final tax decision or equivalent,
 - 2) the date on which the case has been submitted, indicated in Clause 6.
11. Undertaking the remedies provided by domestic law does not preclude mutual agreement procedure referred to in Clause 1.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indicated in Clause 1 shall not apply if the final court decision was issued in the case concerned.
12. The outcome of completed procedure referred to in Clause 1 shall be a basis for initiation of proceedings for determination of taxable income or loss.
13. Provisions of Clauses 3-8, 11, 12 shall apply as appropriate to mutual agreement procedure initiated according to double taxation treaty.
14. Provisions of Clauses 9-12 shall apply as appropriate in case when the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enters into mutual agreement procedure initiated, according to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indicated in Clause 1, by competent authoritie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15. Provisions of Clauses 11 and 12 shall apply as appropriate in case when the minister competent in matters of public finance enters into mutual agreement procedure initiated according to double taxation treaties indicated in Clause 1 by competent authoritie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Chapter 7 Transitional and Final Regulations

Paragraph 26

In cases initiated and not finished before the day of taking effect of the Ordinance previous regulations apply.

Paragraph 26

The Ordinance shall take effect in 14 days from the date of promulgation.

Remark : please keep in mind that this is not an official translation

Poland Corporate Income Tax(CIT)
- Transfer Pricing -

1. Reference to the Arm's Length Principle

Article 11 of the CIT Law (similar regulations in article 25 PIT Law)

Clause 1

If : an income tax payer having its seat (board of management) or place of residenc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omestic entity”,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or control of an enterprise located abroad or has a share in its capital; or

2) a natural or legal person residing or having its seat (board of management) abroa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oreign entity”,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or control of a domestic entity or has a share in its capital; or

3) the same legal persons or natural persons at the same time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or control of a domestic entity and a foreign entity or have shares in their capitals

- and if, as a result of such relations, there are agreed or imposed conditions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ose which would be agreed between independent entities and, as a result thereof, such entity does not disclose any income or discloses the income smaller than might be expected, if such relations did not exist - the income of a given entity and the tax due shall be assessed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conditions resulting from such relations.

Clause 8a

Regulations from clause 1-3 are applied when assessing the part of the income of the taxpayer, who is mentioned in article 3 clause 2 [non-resident], carrying on activiti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on the Polish territory, liable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2. Related part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rticle 11 of the CIT law (similar regulations in article 25 PIT Law)

Clause 1

- 1) an income tax payer having its seat (board of management) or place of residence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o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omestic entity”,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or control of an enterprise located abroad or has a share in its capital; or
- 2) a natural or legal person residing or having its seat (board of management) abroa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oreign entity”,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or control of a domestic entity or has a share in its capital; or
- 3) the same legal persons or natural persons at the same time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or control of a domestic entity and a foreign entity or have shares in their capitals.

Related parties in domestic relations

Art. 11 of the CIT law (similar regulations in article 25 PIT Law)

Clause 4

- 1) a domestic entity participates,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of another domestic entity or its control or holds a share in the capital of another domestic entity
- 2) the same legal or natural persons participate at the same time,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of domestic entities or their control or hold a share in the capital of these entities.

Clause 5

The provisions of clause 4 also apply to the relations of family nature or those resulting from employment relationships or property relations between domestic entities or persons performing managerial, inspecting or supervisory duties with these entities or where any person combines managerial, supervisory or inspecting duties performed with such entities.

Clause 6

The family relation referred to in clause 5 shall be meant marriage and consanguinity or affinity (relationship by marriage) up to the second degree.

General rules applying to related parties in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relations

Art. 11 of the CIT law (similar regulations in article 25 PIT Law)

Clause 5a

Holding a share in the capital of another entity referred to in clause 1 and 4 shall mean a situation where an entity,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holds a share of at least 5 per cent in another entity's capital.

Clause 5b

While determining the size of a direct share held by an entity in another entity's capital, a principle shall apply whereby if an entity holds a certain share in the capital of another entity, and the latter holds the same share in the capital of yet another entity, then the former entity holds an indirect share of the same size in the capital of this yet another entity; if these sizes differ, the indirect share shall be deemed to be of the smaller size.

Clause 8

Provisions of clause 4 shall not apply to performance made by companies which constitute a tax capital group.

Application of arm's length principle to transactions concluded with tax haven entities

Clause 4a

In cases when domestic entity concludes transactions with entity having the place of residence, seat or board of management within a territory of or in a country pursuing harmful tax competition, and conditions agreed in those transactions ar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ose which would be agreed between independent entities and, as a result thereof, such entity does not disclose any income or

discloses the income smaller than might be expected - the income of a given entity shall be assessed using methods indicated in clause 2 and 3 or article 14 shall be applied accordingly.

3. Transfer pricing methods

Art. 11 of the CIT law (similar regulations in article 25 PIT Law)

Clause 2

- 1) a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 2) a resale price method;
- 3) a reasonable margin (“cost plus”) method.

If application of the methods above is impossible, the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shall be applied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and profit split method).

4.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Art. 9a of the CIT Law/ 25a of the PIT Law

1. Taxpayers performing transactions with entities related with these taxpayers -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 clauses 1 and 4 - or transactions in relation to which the payment of sums due as a result of such transactions is made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benefit of an entity having the place of residence, seat or board of management within a territory of or in a country pursuing harmful tax competition shall be obliged to prepare tax documentation of such transaction(s) comprising :
 - 1) identification of the functions to be performed by the entities participating in the transa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assets used and the risk taken);
 - 2) specification of all envisaged costs connected with the transaction and the form and payment term;
 - 3) method and manner of calculating the profits and specification of the price of the subject of the transaction;
 - 4) determination of the economic strategy and other actions within its framework, in the case when the strategy adopted by the entity has influenced the value of the transaction;



- 5) indication of other factors, in the case when the entities participating in the transaction took such factors into account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value of the subject of the transaction;
 - 6) determination of the benefits expected by the entity obliged to prepare the documentation, such benefits being connected with the performances, in the case of contracts relating to intangible performances (including services).
2. The obligation referred to in clause 1 above shall apply to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entities in which the total amount (or its equivalent) resulting from the contract or the total amount, actually paid in a tax year, of performances enforceable in the tax year is higher than the equivalent of :
- 1) EUR 100,000 if the value of transaction does not exceed 20 per cent of the initial capital,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clause 7; or
 - 2) EUR 30,000 in the case of performance of services, sale or making available intangible assets and legal values; or
 - 3) EUR 50,000 in the remaining cases.
3. The obligation to prepare the documentation referred to in clause 1 shall also apply to a transaction in relation to which the payment of sums due as a result of such transaction is made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benefit of an entity having the place of residence, seat or board of management within a territory of or in a country admitting detrimental tax competition if the total amount (or its equivalent) resulting from the contract or the total amount, actually paid in a tax year, of performances enforceable in the tax year is higher than the equivalent of EUR 20,000.

Article 9a Clause 5a

Regulations from clause 1-5 are applied accordingly to taxpayers, which are mentioned in article 3 clause 2 [non residents] which carry on activities through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on the Polish territory.

Latest update - January 2014

Implementation of the Code of Conduct on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for associated enterprises in the European Union (EU TPD) - summary of Member States' responses to the 2013 JTPF questionnair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TPD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resources/documents/taxation/company_tax/transfer_pricing/forum/jtpf/2013/summary-ms.pdf

5. Specific transfer pricing audit procedures and / or specific transfer pricing penalties

Article 19 of the CIT Law

Clause 4

If tax authorities or fiscal control authorities determine, under Article 11, taxpayer's income in an amount higher (loss in an amount lower) than the amount declared by the taxpayer in relation to the transactions referred to in Article 9a and the taxpayer does not produce to such authorities the tax documentation required by these provisions -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come declared by the taxpayer and that assessed by these authorities shall be subject to taxation at a rate of 50 percent.

Remark : should the penal tax rate of 50% be applied, no additional interest on tax due (which would be a normal procedure) are applied specific transfer pricing

폴란드 Tax Code- Section II, 20a~20r

Remark : please keep in mind that this is not an official translation

※ 폴란드 원문 : www.mf.gov.pl/documents/766655/1446440/19970829_ustawa_ordynacjapodatkowa.pdf

Agreement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ransaction prices

Article 20a. The minister responsible for public finances, referred to in this section "competent authority on agreement ", at the request of a domestic entity, recognizes the correctness of the choice and application of methods for determining the price transaction between :

- 1) associated with each national entities or
- 2) The domestic entity associated with a foreign entity and the foreign entity, or
- 3) domestic entity associated with a foreign entity and other entities affiliated with the national the foreign entity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unilaterally"

Article 20b. § 1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agreement, at the request of a domestic entity, after obtaining the consent authority tax appropriate to a foreign entity related to the applicant, considers the correctness of the choice and use methods of determining the transaction price between domestic entity associated with a foreign entity and the entity international (bilateral agreement).

§ 2 In the case where the agreement relates to foreign entities from more than one country, its conclusion requires the approval of the tax authorities of the countries relevant to foreign entities with which it has to be done Trade (Multilateral Agreement).

Art 20c. 30) The agreement includes transactions to be mad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and transactions started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Agreement



does not contain in the range of transaction started before the date of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and that at the time application are concerned tax fiscal control, control treatments carried out by the fiscal control or proceeding before the administrative court.

Article 20d. § 1 In the event that the tax authority responsible for foreign entity does not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or there is a reasonable likelihood of perverse such approval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apply for i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greement shall notify the applicant accordingly.

§ 2 In the case referred to in § 1, the applicant may,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ervice of the notice :

- 1) withdraw the request for an agreement - a refund of half of the fee;
- 2) change the application to conclude a bilateral agreement at the request of the agreement unilaterally - for the return of one-fourth of the fee;
- 3) change the application to conclude a multilateral agreement on a proposal to conclude a bilateral agreement, if the tax authority only one country agrees to an agreement - for the return of one quarter brought charges;
- 4) to accept the conclusion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excluding those foreign entities related subjects obstacles mentioned in § 1 - no change fee.

Article 20e. Before submitting an application for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in the transaction pricing domestic entity interested in an agreement may appl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agreement for an explanation any doubt regarding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in an individual case, in particular the desirability conclusion of the agreement, the scope of the necessary information, mode and probable date for the signing agreement and expected conditions and its duration.

Article 20f. An applicant for an agreement is obliged to submit :

- 1) proposals for the application of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in particular, indicate one of the methods by which provided for in the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or corporate income tax rules on individuals;
- 2) a description of how to apply the proposed method with respect to the transaction which is to be the subject of agreement and in particular to indicate :
 - a) rules for the calculation of the transaction price,

- b) financial projections on which the calculation is based on the transaction price,
 - c) the analysis of comparative data that was us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transaction price;
- 3) circumstances that may affect the correct determination of the transaction price, and in particular :
- a) 31) the nature, content and value of the transaction, which is to be the subject of agreement
 - b) 31) a description of transactions, including analysis of assets, functions and risks of the transaction parties, as well as description of the expected by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costs associated with the transaction and a description of the economic strategy and other parties to the transaction circumstances, if this strategy or circumstances have an impact on the price of the transaction,
 - c) data on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industry in which the applicant operates, including data relating to business transactions concluded by third parties, which were used to prepare calculation of the transaction price,
 - 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capital of the applicant and its related entities that are party to the transaction, and a description of entities related to financial accounting rules;
- 4) document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mount of the transaction price, and in particular the texts of agreements, arrangements and other documents indicating the intentions of parties to the transaction;
- 5) the proposal of the Agreement;
- 6) a list of related parties with whom the transaction is to be determined, along with their consent to submit to authority competent on the agreement of all documents relating to the transaction and deposit the necessary explanations.

Article 20g. § 1 In case of doubt concerning the existence of the applicant selected by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and the principles of its application or concerns to the content of the documents attached to the applica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n agreement asks for clarification of doubt or submission of supporting documents.

§ 2 In order to clarify doubts referred to in § 1,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agreement may hold Consensus meeting.



§ 3 Consensus of the meeting shall be drawn up. The meeting Consensus can be further fixed by the apparatus picture and sound recording or data carriers.

Article 20h. § 1 Pending the decision, the applicant may amend the proposal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methods for determining transaction price, subject to § 2 § 2 If, in the course of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agreement establishes the existence of obstacles that do not allow to accept the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set forth in the application, notify the of these obstacles the applicant and proposes a different method of determining the transaction price. The notification should include the factual and legal reasons. Applicant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the notice may change application or submit additional explanations and documents.

Article 20i. § 1 In the cases of confirmation of the choice and application of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between related party issued a decision,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

§ 2.32)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shall be delivered to related companies (domestic and foreign) with whom transactions to be effected, in the case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 including the tax authorities applicable to foreign entities and the tax office and the Director of Audit Office duty applicable to the applicant, and the relevant national entities affiliated with the applicant being parties to the transaction covered by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 3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includes, in particular :

- 1) the designation of entities covered by the agreement;
- 2) an indication of the value of transactions covered by the agreement;
- 3) the type, the object of transactions covered by the agreement and the period to which it relates;
- 4) an indication of pricing methodology, calculation algorithm as well as other rules of application of the method;
- 5) determination of the essential conditions underlying the application of the method referred to in paragraph 4, taking into account the distribution of risk functions performed by operators and margin realized by the ent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 6) the date of the decision.

§ 4.33) The term of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can not be longer than five years.

§ 5.33) The term of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may be extended for successive periods of five years on request of a related party, made no later than six months before the expiry of that period if the criteria recognized in the decision method of determining the transaction price between related parties have not changed.

§ 6 The prolongation of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by way of a decision.

Article 20j. § 1 The proceedings unilateral agreement should be completed without undue delay, but not later than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initiation.

§ 2 Proceedings of the bilateral agreement should be completed without undue delay, but not later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initiation.

§ 3 proceedings multilateral agreement should be completed without undue delay, but not later than 18 months from the date of initiation.

Article 20k. § 1 In case of change of economic relations resulting in the glaring inadequacy of the selection and application recognized as a valid method of determining the transaction price,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may be amended or repeal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n an agreement by the deadline set its validity. Change or annul the decision at the request of a party or of its own motion.

§ 2 The proceedings instituted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

1) amending Decision should be completed without undue delay, but no later than within two months of its initiation;

2) to repeal the decision should be completed without undue delay, but no later than within one month of its initiation.

Article 20l. § 1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referred to in art. 20i § 3 points 3-5, set out in Decision on the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agreement concluded with the office of its expiry.

§ 2 The decision on the lapse referred to in § 1, produces legal effect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decision, the expiry of the states.

Article 20m. § 1 The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the choice and application of the transfer pricing methodology between related entities and the application referred

to in art. 20i § 5 fee shall be paid into the account of the body applicable in the agreement within 7 days from the date of filing.

§ 2 of the application fee in the agreement is 1 percent of the transaction which is the subject agreement, whereby the agreement :

1) one-sided :

- a) on the only national entities - is not less than 5000 zł and not more than 50 000 zł,
- b) for a foreign entity - is not less than 20 000 zł and not more than 100 000 zł;
- 2) bilateral or multilateral - is not less than 50 000 zł and not more than 200 000 zł.

§ 3 The fee for the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on the agreement amounts to half the fee for the application for an agreement.

Article 20n. § 1 If in the course of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y on the agreement finds that the value of the transaction, which may be the subject of an agreement, the proposal was given in undervalued height, authority shall determine the amount of the supplementary charg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 20m § 2

§ 2 The decision on the supplementary charge can be appealed.

Article 20o. The fees referred to in art. 20m and art. 20n, constitute the income of the state budget.

Article 20p. Costs of the proceedings referred to in art. 265 § 1 point 1 and 3, are charged to the applicant for recognition the accuracy of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methods for determining the transaction price between related parties

Article 20q. In matters not covered in this section, the provisions of Chapter IV.

Art 20r.34)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 entity established or establishment in the territory of one country and its foreign plant within the meaning of the tax law tax on personal income and corporate income tax from legal persons in the field of assignment of income to a domestic entity.



폴란드 - 그리스 APA 신청서



The application for an agreement on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between Greece and Polish

<p>ΕΛΛΗΝΙΚΗ ΔΗΜΟΚΡΑΤΙΑ ΥΠΟΥΡΓΕΙΟ ΟΙΚΟΝΟΜΙΚΩΝ</p> <p>1ο Αντιγραφή για την Ελληνική Φορολογική Αρχή - <i>Exemplariz Nr 1 przeznaczony dla greckich organów podatkowych</i></p> <p>Α.Π.Τ.Σ.Π. ΓΙΑ ΤΗΝ ΕΦΑΡΜΟΓΗ ΤΗΣ ΣΥΜΒΑΣΗΣ ΑΠΟΦΥΓΗΣ ΤΗΣ ΔΙΑΒΑΣΗΣ ΦΟΡΟΛΟΓΙΑΣ ΜΕΤΑΞΥ ΕΛΛΑΔΟΣ ΚΑΙ ΠΟΛΩΝΙΑΣ ENIUSZEK O ZASTOSOWANIE UMOWY O UNIKAJNI PODWÓJNEGO OPODATKOWANIA MIEDZY GRECJA I POLSKA</p> <p>Από τη στιγμή οφείλει να τον υπολογιστεί έως - <i>Niniejszo wniosek jest ważny w czasie jednego roku kalendarzowego</i></p> <p>I ΠΡΑΓΜΑΤΙΚΟΣ ΔΙΚΑΙΟΥΧΟΣ ΤΟΥ ΕΙΣΟΗΜΑΤΟΣ OSOBA UPRAWNIIONA UZYSKIWAC DOCHÓD (drukowanymi literami) Πόλις / όνομα / επωνυμία / τίτλος Ιδιος, Νομικό ή άλλο Νομική μορφή Διακρίσεις / επώνυμα Ζωική/Διαβλητική Πόλις / όνομα / τίτλος, π.χ. κώδικας / μέλος Αдрес zamieszkania/śledzby (ulica, miasto, kod pocztowy, państwo) Όνομα και διεύθυνση αντιπροσώπου στην Ελλάδα Nazwisko i adres przedstawiciela w Grecji (jeśli został ustanowiony) Παραγραφή σχετική συμπρωτοδικού - <i>Data udzielenia pełnomocnictwa</i></p> <p>II Ο ΚΑΤΑΒΛΑΛΩΝ ΤΟ ΕΙΣΟΗΜΑ PODMIOT WYPŁACAJĄCY DOCHÓD Πόλις / όνομα / επωνυμία / τίτλος Ιδιος, Νομικό ή άλλο Νομική μορφή Forma prawna Διακρίσεις / επώνυμα Ζωική/Διαβλητική Πόλις / όνομα / τίτλος, π.χ. κώδικας / μέλος Αдрес zamieszkania/śledzby (ulica, miasto, kod pocztowy)</p> <p>III ΠΕΡΙΓΡΑΦΗ ΕΙΣΟΗΜΑΤΟΣ - ZRODŁO PRZYCHODU (DOCHODU)</p> <p>IV ΕΤΟΣ ΚΤΗΣΗΣ ΤΟΥ ΕΙΣΟΗΜΑΤΟΣ ROK, W KTÓRYM PRZYCHÓD (DOCHÓD) ZOSTAŁ UZYSKANY</p> <p>V ΣΗΜΕΙΩΣΕΙΣ ΠΛΗΡΟΦΟΡΙΕΣ - INFORMACJE DODATKOWE Κατά τη διάρκεια του φορολογικού έτους εντός του οποίου αναφέρεται το εισόδημα: Czy w trakcie jakiegokolwiek roku kalendarzowego, w którym dochód został uzyskany, podatnik: α) υπαγόταν με ταυτόσημο ή άλλες φορολογικές μέθοδοι φορολογίας εισοδήματος που βεβαιώνονται στην Ελλάδα - <input type="checkbox"/> NAI-TAK <input type="checkbox"/> OXI-NIE β) όφισσε επίδομα μιας ανώνυμης εταιρείας που εδρεύει και λειτουργεί στην Ελλάδα; <input type="checkbox"/> NAI-TAK <input type="checkbox"/> OXI-NIE ποσάδα udział w spółce anonimowej zgodnie z prawem greckim? czy posiadał udziały w spółce anonimowej zgodnie z prawem polskim? na terenie Grecji?</p>	<p>α) όφισσε επίδομα μιας ανώνυμης εταιρείας που εδρεύει και λειτουργεί κατά τους ελληνικούς νόμους; <input type="checkbox"/> NAI-TAK <input type="checkbox"/> OXI-NIE ποσάδα udział w spółce anonimowej zgodnie z prawem greckim? czy posiadał udziały w spółce anonimowej zgodnie z prawem polskim? na terenie Grecji?</p> <p>Παρατήρηση: - UWAGI</p> <p>VI ΔΗΛΩΣΗ ΤΟΥ ΔΙΚΑΙΟΥΧΟΥ - OŚWIADCZENIE OSOBY UZYSKUJĄCEJ DOCHÓD Δηλώνω ότι είμαι ο πραγματικός δικαιούχος του εισοδήματος που αναφέρεται στην προηγούμενη σελίδα και ότι τα αναφέρονται ο κατά την αίτηση είναι αληθινά και σωστά. Oświadczam, że jestem osobą uprawnioną do dochodu, o którym mowa we wniosku i że wszystkie dane przedstawione we wniosku są pod kątem wzięciem zgodne z prawdą.</p> <p>Τόπος και ημερομηνία - <i>Miejscowość i data</i> Υπογραφή και σφραγίδα του δικαιούχου Podpis i pieczęć osoby uprawnionej</p> <p>VII ΔΙΣΤΟΙΧΙΟΤΗΤΗΣ ΦΟΡΟΛΟΓΙΚΗΣ ΑΡΧΗΣ ΤΗΣ ΧΡΑΣ ΚΑΤΟΙΚΙΑΣ ΤΟΥ ΔΙΚΑΙΟΥΧΟΥ ΤΟΥ ΕΙΣΟΗΜΑΤΟΣ ZASWIADCZENIE ORGANÓW PODATKOWYCH PAŃSTWA REZYDENCJI OSOBY UPRAWNIIONEJ</p> <p>(I) (OSOBY FIZYCZNE - SPÓŁKI) - ΦΥΣΙΚΑ ΠΡΟΣΩΠΑ - ΕΤΑΙΡΕΙΕΣ (I) Zaswiadczam, że osoba uprawniona wniosła (2) w trakcie roku określonego powyżej, miejsce zamieszkania/śledzby(2) w Polsce w rozumieniu ww. umowy o unikaniu podwójnego opodatkowania Πιστοποιώ ότι ο δικαιούχος είναι ή ήταν, (2) κατά το έτος που αφορά τον εισόδημα, κάτοικος POLAND κατά την έννοια των διατάξεων της προαναφερμένης Σύμβασης.</p> <p>(II) (2) SPÓŁKI OSOBOWE (2) - ΠΡΟΣΩΠΙΚΕΣ ΕΤΑΙΡΕΙΕΣ (2) Zaswiadczam, że całość lub ... procent (2) kapitału podmiotu uzyskującego jest własnością bezpośrednią wspólników/członków (2) mających miejsce zamieszkania/śledzby (2) w Polsce w rozumieniu ww. umowy o unikaniu podwójnego opodatkowania Πιστοποιώ ότι όλα τα κεφάλαια, ή ... τοις εκατό τους κεφάλαια, (2) του δικαιούχου ανήκουν άμεσα σε εταιρείες/έτα (2) (εμπορικές) κατοίκους POLAND, κατά την έννοια των διατάξεων της προαναφερμένης Σύμβασης.</p> <p>Τόπος και ημερομηνία - <i>Miejscowość i data</i> Υπογραφή - <i>Podpis</i> Τίτλος - <i>Stanowisko</i> Σφραγίδα - <i>Pieczęć urzędowa organu podatkowego</i></p> <p>ΣΗΜΕΙΩΣΕΙΣ - UWAGI (1) οραζ κατά την ημερομηνία, której jest podatnikiem podatku dochodowego od osób prawnych - και αποστέλλεται άλλο νομικό πρόσωπο το οποίο δεν είναι φορολογικά επωφελημένο. (2) nieprzetworzone aktywa - (αποστέλλεται κατά μήκος) (3) οραζ κατά την ημερομηνία, której nie jest podatnikiem podatku dochodowego od osób prawnych - και αποστέλλεται άλλο νομικό πρόσωπο το οποίο δεν είναι φορολογικά επωφελημένο.</p>
<p>ΕΛΛΗΝΙΚΗ ΔΗΜΟΚΡΑΤΙΑ ΥΠΟΥΡΓΕΙΟ ΟΙΚΟΝΟΜΙΚΩΝ</p> <p>2ο Αντιγραφή για την Πολωνική Φορολογική Αρχή - <i>Exemplariz Nr 2 przeznaczony dla polskich organów podatkowych</i></p> <p>Α.Π.Τ.Σ.Π. ΓΙΑ ΤΗΝ ΕΦΑΡΜΟΓΗ ΤΗΣ ΣΥΜΒΑΣΗΣ ΑΠΟΦΥΓΗΣ ΤΗΣ ΔΙΑΒΑΣΗΣ ΦΟΡΟΛΟΓΙΑΣ ΜΕΤΑΞΥ ΕΛΛΑΔΟΣ ΚΑΙ ΠΟΛΩΝΙΑΣ ENIUSZEK O ZASTOSOWANIE UMOWY O UNIKAJNI PODWÓJNEGO OPODATKOWANIA MIEDZY GRECJA I POLSKA</p> <p>Από τη στιγμή οφείλει να τον υπολογιστεί έως - <i>Niniejszo wniosek jest ważny w czasie jednego roku kalendarzowego</i></p> <p>I ΠΡΑΓΜΑΤΙΚΟΣ ΔΙΚΑΙΟΥΧΟΣ ΤΟΥ ΕΙΣΟΗΜΑΤΟΣ OSOBA UPRAWNIIONA UZYSKIWAC DOCHÓD (drukowanymi literami) Πόλις / όνομα / επωνυμία / τίτλος Ιδιος, Νομικό ή άλλο Νομική μορφή Forma prawna Διακρίσεις / επώνυμα Ζωική/Διαβλητική Πόλις / όνομα / τίτλος, π.χ. κώδικας / μέλος Αдрес zamieszkania/śledzby (ulica, miasto, kod pocztowy, państwo) Όνομα και διεύθυνση αντιπροσώπου στην Ελλάδα Nazwisko i adres przedstawiciela w Grecji (jeśli został ustanowiony) Παραγραφή σχετική συμπρωτοδικού - <i>Data udzielenia pełnomocnictwa</i></p> <p>II Ο ΚΑΤΑΒΛΑΛΩΝ ΤΟ ΕΙΣΟΗΜΑ PODMIOT WYPŁACAJĄCY DOCHÓD Πόλις / όνομα / επωνυμία / τίτλος Ιδιος, Νομικό ή άλλο Νομική μορφή Forma prawna Διακρίσεις / επώνυμα Ζωική/Διαβλητική Πόλις / όνομα / τίτλος, π.χ. κώδικας / μέλος Αдрес zamieszkania/śledzby (ulica, miasto, kod pocztowy)</p> <p>III ΠΕΡΙΓΡΑΦΗ ΕΙΣΟΗΜΑΤΟΣ - ZRODŁO PRZYCHODU (DOCHODU)</p> <p>IV ΕΤΟΣ ΚΤΗΣΗΣ ΤΟΥ ΕΙΣΟΗΜΑΤΟΣ ROK, W KTÓRYM PRZYCHÓD (DOCHÓD) ZOSTAŁ UZYSKANY</p> <p>V ΣΗΜΕΙΩΣΕΙΣ ΠΛΗΡΟΦΟΡΙΕΣ - INFORMACJE DODATKOWE Κατά τη διάρκεια του φορολογικού έτους εντός του οποίου αναφέρεται το εισόδημα: Czy w trakcie jakiegokolwiek roku kalendarzowego, w którym dochód został uzyskany, podatnik: α) υπαγόταν με ταυτόσημο ή άλλες φορολογικές μέθοδοι φορολογίας εισοδήματος που βεβαιώνονται στην Ελλάδα - <input type="checkbox"/> NAI-TAK <input type="checkbox"/> OXI-NIE β) όφισσε επίδομα μιας ανώνυμης εταιρείας που εδρεύει και λειτουργεί στην Ελλάδα; <input type="checkbox"/> NAI-TAK <input type="checkbox"/> OXI-NIE ποσάδα udział w spółce anonimowej zgodnie z prawem greckim? czy posiadał udziały w spółce anonimowej zgodnie z prawem polskim? na terenie Grecji?</p>	<p>α) όφισσε επίδομα μιας ανώνυμης εταιρείας που εδρεύει και λειτουργεί κατά τους ελληνικούς νόμους; <input type="checkbox"/> NAI-TAK <input type="checkbox"/> OXI-NIE ποσάδα udział w spółce anonimowej zgodnie z prawem greckim? czy posiadał udziały w spółce anonimowej zgodnie z prawem polskim? na terenie Grecji?</p> <p>Παρατήρηση: - UWAGI</p> <p>VI ΔΗΛΩΣΗ ΤΟΥ ΔΙΚΑΙΟΥΧΟΥ - OŚWIADCZENIE OSOBY UZYSKUJĄCEJ DOCHÓD Δηλώνω ότι είμαι ο πραγματικός δικαιούχος του εισοδήματος που αναφέρεται στην προηγούμενη σελίδα και ότι τα αναφέρονται ο κατά την αίτηση είναι αληθινά και σωστά. Oświadczam, że jestem osobą uprawnioną do dochodu, o którym mowa we wniosku i że wszystkie dane przedstawione we wniosku są pod kątem wzięciem zgodne z prawdą.</p> <p>Τόπος και ημερομηνία - <i>Miejscowość i data</i> Υπογραφή και σφραγίδα του δικαιούχου Podpis i pieczęć osoby uprawnionej</p> <p>VII ΔΙΣΤΟΙΧΙΟΤΗΤΗΣ ΦΟΡΟΛΟΓΙΚΗΣ ΑΡΧΗΣ ΤΗΣ ΧΡΑΣ ΚΑΤΟΙΚΙΑΣ ΤΟΥ ΔΙΚΑΙΟΥΧΟΥ ΤΟΥ ΕΙΣΟΗΜΑΤΟΣ ZASWIADCZENIE ORGANÓW PODATKOWYCH PAŃSTWA REZYDENCJI OSOBY UPRAWNIIONEJ</p> <p>(I) (OSOBY FIZYCZNE - SPÓŁKI) - ΦΥΣΙΚΑ ΠΡΟΣΩΠΑ - ΕΤΑΙΡΕΙΕΣ (I) Zaswiadczam, że osoba uprawniona wniosła (2) w trakcie roku określonego powyżej, miejsce zamieszkania/śledzby(2) w Polsce w rozumieniu ww. umowy o unikaniu podwójnego opodatkowania Πιστοποιώ ότι ο δικαιούχος είναι ή ήταν, (2) κατά το έτος που αφορά τον εισόδημα, κάτοικος POLAND κατά την έννοια των διατάξεων της προαναφερμένης Σύμβασης.</p> <p>(II) (2) SPÓŁKI OSOBOWE (2) - ΠΡΟΣΩΠΙΚΕΣ ΕΤΑΙΡΕΙΕΣ (2) Zaswiadczam, że całość lub ... procent (2) kapitału podmiotu uzyskującego jest własnością bezpośrednią wspólników/członków (2) mających miejsce zamieszkania/śledzby (2) w Polsce w rozumieniu ww. umowy o unikaniu podwójnego opodatkowania Πιστοποιώ ότι όλα τα κεφάλαια, ή ... τοις εκατό τους κεφάλαια, (2) του δικαιούχου ανήκουν άμεσα σε εταιρείες/έτα (2) (εμπορικές) κατοίκους POLAND, κατά την έννοια των διατάξεων της προαναφερμένης Σύμβασης.</p> <p>Τόπος και ημερομηνία - <i>Miejscowość i data</i> Υπογραφή - <i>Podpis</i> Τίτλος - <i>Stanowisko</i> Σφραγίδα - <i>Pieczęć urzędowa organu podatkowego</i></p> <p>ΣΗΜΕΙΩΣΕΙΣ - UWAGI (1) οραζ κατά την ημερομηνία, której jest podatnikiem podatku dochodowego od osób prawnych - και αποστέλλεται άλλο νομικό πρόσωπο το οποίο δεν είναι φορολογικά επωφελημένο. (2) nieprzetworzone aktywa - (αποστέλλεται κατά μήκος) (3) οραζ κατά την ημερομηνία, której nie jest podatnikiem podatku dochodowego od osób prawnych - και αποστέλλεται άλλο νομικό πρόσωπο το οποίο δεν είναι φορολογικά επωφελημένο.</p>

6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 참고 문헌

1. KOTRA, 「폴란드 투자실무가이드」
2. KPMG in Poland, 「Amendments to the Tax Ordinance Act concerning APAs-draft legislation guidelines」, 2014
3. 윤현중, 「가보고 싶은 나라, 알수록 재미있는 나라 폴란드」, 2013
4. 유경숙, 「유럽 축제 사전」, 2011

□ 참고 사이트

1. 폴란드 정부 www.poland.pl
2. 폴란드 재무부(세금정보) <http://www.finanse.mf.gov.pl/>
3. 폴란드 의회 isap.sejm.gov.pl
4.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http://pol.mofat.go.kr>
5. 주한폴란드대사관 www.seoul.polemb.net
6. 폴란드투자진흥청(세금정보) http://www.paiz.gov.pl/polish_law/taxation/cit
7. 폴란드 투자컨설팅(한국어지원) <http://www.jpweber.com>
8. 한국 조세제정 연구원 <http://www.kipf.re.kr>
9. 중소기업 수출 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main.jsp>
10. 한국 지식재산 보호협회 <http://www.kipra.or.kr/>
11. 대한무역진흥공사 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12. 폴란드 바르샤바 조사국 www.is.waw.pl/en
13. 폴란드의 모든 법(영어버전 구매가능) <http://www.polishlaw.com.pl>
14. PKF International www.pkf.com
15. WORLD WIDE TAX www.worldwide-tax.com
16. PRICE WATERHOUSE COOPERS www.pwc.com
17. ERNST&YOUNG www.ey.com
18. KPMG www.kpmg.com
19. 딜로이트 www.deloitte.com
20. EU 집행 위원회 <http://ec.europa.eu/>
21. 폴란드 한인회 <http://koreanpl.org/xe/>



본 안내서는 우리기업이 폴란드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폴란드 세법 등 2014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폴란드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 : 044 - 204 - 2838

팩스 : 044 - 216 - 6066

원고 작성 및 편집

행정사무관 이 지 민

국세조사관 이 혜 경

국세조사관 이 선 영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 담당관실(☎044-204-283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